

투자위험등급: 각 하위 펀드별 위험등급 참조						외국집합투자업자는 각 하위펀드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또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등급을 6단계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UCITS II ICAV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UCITS II ICAV 주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피델리티 UCITS II ICAV
(Fidelity UCITS II ICAV)
2. 외국집합투자업자 명칭: FIL Fund Management (Ireland) Limited
3.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명칭: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4. 판매회사: 판매회사는 투자설명서 본문 '제1부.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또는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작성기준일: 2018. 12. 20.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8. 12. 21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개방형/추가형 외국투자회사 주권
모집(매출) 총액: 별도로 정하여 지지 아니함
8.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추가형(개방형) 투자회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9.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국내판매대행회사 홈페이지
서면문서: 각 국내판매대행회사 영업점
10.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일반투자자는 투자판단시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여 투자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국내판매대행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국내판매대행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국내판매대행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으니 실제 투자되는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는 외국에서 적용되는 법규정 등에 따른 규제를 받는 외국집합투자기구로서 국내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집합투자기구가 관련 법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기재하는 내용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기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기재가 생략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대신 기재될 수도 있으므로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특히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시에는 이 서류 및 관련 서류에 기재된 전체 내용을 기초로 하여 투자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10.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정보

각 하위펀드 주식의 모집과 관련하여 이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정보 이외의 정보나 진술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없으며, 그와 같은 정보나 진술을 제공받았을 경우, 그러한 정보나 진술이 본 펀드가 승인한 것으로 신뢰하여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투자설명서 또는 하위펀드 보충본의 교부나 주식의 판매가 이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이 투자설명서 일자 이후의 여하한 날에도 정확할 것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하위펀드에 대한 핵심투자자정보문서(각각 “KIID”)는 하위펀드들과 관련된 종합적 위험, 보상 지표, 수수료 및 해당되는 경우, 과거 실적을 포함하여, 하위펀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투자자는 주식가격이 상승할 뿐만 아니라 하락할 수도 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본 펀드는 주식매입 시 최대 5%의 매입수수료를, 주식환매 시 최대 3%의 환매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주식의 매입가격과 환매가격간의 차이는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를 중장기적인 투자로 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각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2부의 내용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항에서 “*위험에 관한 정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가 인가되었다고 하여 본 펀드를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승인한다거나 보증한다는 것은 아니며,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이 투자설명서의 내용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본 펀드의 인가가 본 펀드의 실적에 관한 보장이 아니며,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본 펀드의 실적이나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주들은 이사가 액티브 운용 하위펀드의 배당 클래스들에 대하여 자본으로부터의 이익 배당을 선언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하는 경우 해당 주식 자본이 잠식되고, 그러한 이익 배당이 미래 자본성장 잠재력을 희생시키며, 해당 주식의 자본 전액이 고갈될 때까지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합니다. 또한, 액티브 운용 하위펀드의 배당 클래스 투자자들은 본 펀드에 의한 자본으로부터의 이익배당이 소득 분배에 관한 세무적 측면에서 투자자마다 상이한 세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하며, 따라서 이와 관련한 세무 자문을 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자본으로부터의 이익배당은 미래 수익가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자본 상환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자설명서이 투자설명서요약 정보

관련 하위펀드의 요약정보는 별도 공시되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2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2
3. 모집예정금액.....	2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2
5. 인수에 관한 사항.....	4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4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5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5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5
4. 집합투자업자.....	5
5. 운용전문인력.....	5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6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7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8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3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9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38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44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48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49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57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58
1. 재무정보.....	58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58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58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59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60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6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61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62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64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5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5
제5부 기타 주주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66
1.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66
2. 집합투자기구, 하위펀드 및 주식클래스의 해지에 관한 사항.....	67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68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69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9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69
[붙임 1] 하위펀드 보충본	71
[붙임 2] 하위펀드 재무정보	82
[붙임 3] 용어풀이	83
[붙임 4] 정규 시장	88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 단축코드	
피델리티 UCITS II ICAV(이하 "본 펀드")		K5FB79100403	10040	
	하위펀드	통화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 단축코드
1	피델리티 UCITS II ICAV - 피델리티 인핸스드 리저브 펀드 (A-ACC-USD)	USD	K5FB79100411	10041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구분	종류	요약 설명
형태별 종류	투자회사형	2011년 유럽공동체(양도성증권 집합투자기구)규정(개정본 포함)에 따라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인가받은 아일랜드 집합자산운용기구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채권형) 집합투자기구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중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주주의 요청에 따라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 전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판매보수, 수수료, 배당방침, 투자자격, 투자금액 등을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전환형 펀드로서 투자자들에게 하나 이상의 하위펀드에 투자함으로써 하나 이상의 투자목적과 투자방침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합니다.

주 1) 위에서 기술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중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및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국내의 각 국내판매대행회사별로 판매하는 클래스와 하위펀드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판매대행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특별히 모집규모나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한 개방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내용을 공시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모집은 국내판매대행회사 영업점에서 이루어지며 국내판매대행회사의 명단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의 매입 및 환매 절차는 이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매입 및 환매 절차와 방법은 제2부의 내용 중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과 [붙임 1]의 하위펀드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하 "글로벌 모집 절차"). 국내에서의 매입 및 환매 절차는 글로벌 모집 절차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나아가 국내외간 시차로 인하여 이하의 국내에서의 매입/환매 절차도 함께 적용될 것입니다. 이하에 기재된 국내에서의 매입/환매 절차 및 방법은 대한민국 표준시간대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뿐 본 펀드의 다른 투자자들보다 더 유리하거나 불리한 매입/환매 절차 또는 조건을 대한민국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하에서 "영업일"이란 대한민국에서 은행 및 금융중개업자들이 영업을 위해 개장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국내에서의 매입 절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내 고객의 매입신청시에는 매입주문 접수일*의 다음 영업일의 해당 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대금결제는 국내 고객이 매입주문을 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동일을 포함한 제2영업일까지 이루어집니다. 다만 국내외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결제일로 합니다.

국내 고객의 매입신청일로부터 대금 송금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내 고객이 납부한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고객의 매입 신청에 대하여 국내판매대행회사가 지체없이 처리한 경우에도 국내외간 시차 및 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내 고객의 매입주문일과 당해 외국에서의 매매성립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이 종료하면 국내판매대행회사는 국내 고객에게 매입거래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는 통장의 발급, 정리 또는 거래명세서의 교부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매입주문 접수일은 국내외의 휴일 등으로 인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환매 절차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내 고객의 환매신청시에는 매도주문 접수일* 다음 영업일의 해당 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적용하여 매도대금을 결정하고 환매대금은 국내 고객이 환매신청을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동일을 포함한 제4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다만 국내외의 공휴일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해당 펀드의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 국내판매대행회사가 국내 고객이 환매신청을 한 날로부터 동일을 포함한 제4영업일 이내에 환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환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연 이자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 고객의 매도 신청에 대하여 국내판매대행회사가 지체없이 처리한 경우에도 국내외간 시차 및 휴일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내 고객의 매도주문일과 당해 외국에서의 매매성립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과정이 종료하면 국내판매대행회사는 국내 고객에게 매도거래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는 통장의 발급, 정리 또는 거래명세서의 교부 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매도주문 접수일은 국내외의 휴일 등으로 인하여 다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거래마감시간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적용되는 국내에서의 매입 및 환매를 위한 거래마감시간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및 최저투자금액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최저투자금액	
매수신청금액	클래스 A (임의식)	없음	현행 최저투자금액 (또는 환전이 자유로운 주요 통화로 표시된 그 상당액)	클래스 A (임의식)
	채권형		최초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D 2,500
USD 100,000 미만	0.5%		추가투자를 위한 최저투자금액	USD 1,500

USD 100,000 이상~ USD 1,000,000 미만	0.4%		최소환매금액	USD 1,500
USD 1,000,000이상	0.3%		최소보유금액	USD 2,500
* 상기 기재된 선취판매수수료 외에, 별도의 판매보수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주 1) 국내에서의 거래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내판매대행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중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3) 국내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펀드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의 영업일에 한하여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시간은 외국간의 시차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증권회사 영업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주 1)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환금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펀드의 명칭과 협회코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부의 내용중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법인 정보. 본 펀드는 2017년 11월 14일에 2015년 아일랜드 집합자산운용기구법(Collective Asset-management Vehicle Act 2015)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등록번호 제C174793호로 등록되었으며,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UCITS(양도성 증권 집합투자기구)로 인가 되었습니다. 본 펀드의 목적은 일반으로부터 조달한 자본금을 양도성 증권 및/또는 기타 유동성 금융자산에 대한 집합투자의 형태로 투자하고, UCITS 규정에 따라 위험분산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본 펀드는 하위펀드들간에 책임이 분리되어 있는 엄브렐라 펀드(umbrella fund) 구조로 설정되었습니다. 즉, 이사들은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요건에 따라 별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표시하는 각기 다른 시리즈의 주식을 수시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각 시리즈가 하나의 하위펀드를 구성합니다. 각 하위펀드마다 고유 부채를 스스로 부담하며,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본 펀드, 본 펀드가 선임한 업무위탁자들, 이사들, 관재인, 심사인, 청산인 또는 기타 어느 누구도 특정 하위펀드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다른 하위펀드의 자산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펀드는 아일랜드에서 설립되므로, 아일랜드 법 적용 대상이 되며 UCITS 규정의 법인지배구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높은 수준의 법인 지배구조 기준을 유지하고 아일랜드 법, UCITS 규정 및 UCITS에 관한 아일랜드 중앙은행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

본 펀드의 존속기간은 무한합니다.

- 주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존속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저축만기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2)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중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외국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	FIL 펀드 매니지먼트 (아일랜드) 리미티드 (FIL Fund Management (Ireland) Limited)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하위집합투자업자)	FIL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홍콩) 리미티드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중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및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피델리티 인헨스드 리저브 펀드

책임운영전문 인력/팀 이름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기준일자: 2018년 9월)		주요 경력 및 이력
			펀드 수	규모 (USD, 백만)	
Bryan Collins	1978	채권 (Fixed Income)/ 포트폴리오 매니저	10	6,258.52	경력: 2009 - 포트폴리오 매니저- 채권 Fidelity Investments, 홍콩 2006 - 2009 Trader - 채권 Fidelity Investments, 홍콩 2003 - 2006 Senior Trader - 채권 & FX, Credit Suisse Asset Management (Australia) Limited, 시드니 2002 - 2003 애널리스트/Junior Trader - 채권 CSAMAL, 시드니 2000 - 2002 Client Consultant - 채권 CSAMAL, 시드니 학력 및 자격: - Commerce, 석사,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시드니 - 문학 학사,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시드니 - CFA -Level 3 합격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위펀드. 각 시리즈 주식에 대해 유지되고 어느 한 하위펀드를 구성하는 자산 포트폴리오는 하위펀드 보충 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하위펀드에 적용되는 투자목적과 방침에 따라 투자됩니다. 주식은 특히 다양한 배당 정책, 수수료, 보수 약정(다양한 총보수·비용 비율 포함), 통화들을 제공하거나 중앙은행 방침과 요건에 따라 환헤지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클래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의거, 이사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의 기록을 갖춘 별개의 하위펀드를 설정해야 합니다:

- (a) 본 펀드는 각 하위펀드 별로 장부와 기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 하위펀드의 주식발행 대금은 동 하위펀드에 적용되고, 동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 또한 그 하위펀드에 적용됩니다.
- (b) 하위펀드의 또 다른 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자산은 해당 자산이 파생된 하위펀드와 동일한 하위펀드로 적용되고, 동 자산의 가치 증감 역시 관련 하위펀드에 적용됩니다.
- (c) 이사들의 판단으로 특정 하위펀드나 하위펀드들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자산이 있을 경우, 이사들은 보관회사의 동의 하에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에 따라 자신들의 재량으로 그러한 자산을 하위펀드들 사이에 배분할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수시로 그러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d) 이사들의 의견으로 특정 하위펀드(들)에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채는 그 하위펀드(들)에 배분되며, 어떠한 하위펀드에도 귀속되지 않는 부채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보관회사의 동의 하에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에 따라 자신들의 재량으로 그러한 부채를 하위펀드들 사이에 배분할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보관회사의 동의 하에 그러한 기준을 언제든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e) 특정 하위펀드 귀속 자산이 당해 하위펀드에 귀속되지 않는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고 그러한 자산 또는 그에 대한 보상이 해당 하위펀드로 반환되거나 지급될 수 없는 경우, 이사들은 보관회사의 동의 하에 해당 하위펀드로부터 변제된 동 자산의 가치를 증명하거나 증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채무가 귀속되는 하위펀드(들)의 자산으로부터 하위펀드에 대한 다른 모든 채권보다 우선하여 손실이 발생한 하위펀드로 손실이 발생한 자산이나 금전 가치를 원상 복구시키는데 충분한 자산이나 금전을 양도하거나 지급합니다.
- (f) 발기인 주식에 귀속되는 본 펀드 자산으로부터 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들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특정 하위펀드나 하위펀드들로 순이익에 해당하는 자산을 배분할 수 있습니다.
- (g)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바를 전제로, 각 하위펀드 계산으로 보유하는 자산은 오로지 해당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주식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관련 하위펀드에만 독점적으로 귀속되며, 여하한 다른 하위펀드의 직·간접적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목적을 위한 사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발기인 주식 이외의) 각 주식의 주주는 주주가 되기 이전에 선언된 배당은 제외하고 해당 하위펀드의 배당 및 순자산에 대하여 안분비례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발기인 주식 보유 주주는 본 펀드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은 가지나, 하위펀드의 배당이나 순자산에 참여할 권한은 없습니다.

엠브렐라 현금계좌 운용. 본 펀드는 자신의 명의로 한 개 이상의 엠브렐라 단계의 현금계좌(이하, “**엠브렐라 현금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하지만, 하위펀드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모든 매입대금(주식 발행 이전에 수취한 매입대금 포함) 및 하위펀드가 지급해야 할 모든 환매대금, 배당 또는 현금 배분액은 엠브렐라 현금계좌를 통해 송금되고 관리됩니다.

거래마감시간 이전에 수취한 하위펀드 주식 매입대금을 포함한 엠브렐라 현금계좌 금액은 2013년 아일랜드 중앙은행(감독 및 집행)법(제 48조 제1항) 펀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2015년 투자자 자금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식의 발행 또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해당 투자자는 하위펀드가 지급해야 할 금액 또는 지급 받아야 할 금액과 관련하여 하위펀드의 일반채권자가 됩니다.

엠브렐라 현금계좌로 입금된 매입대금은 계약으로 정한 결제일에 해당 하위펀드를 대신하여 보관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입대금이 투자자 또는 해당 하위펀드를 확인할 충분한 서류 구비 없이 엠브렐라 현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동 매입대금은 관련 자금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엠브렐라 현금계좌 관련 운용절차상 명시된 바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해당 투자자에게 반환됩니다.

지급 중지된(blocked) 환매대금이나 배당금을 포함하여, 환매대금과 배당금은 지급기일(또는 지급 중지된 금액의 지급이 이후 허용되는 경우, 그 허용이 결정된 날)까지 엠브렐라 현금계좌에 유보된 이후 해당 주주나 환매신청 주주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중지된 환매대금 및 배당금의 경우, 지급이 허용되는 날까지 별도의 엠브렐라 현금계좌에 유보된 이후 관련 주주 또는 환매신청 주주에게 지급됩니다.

매입, 환매 또는 배당과 관련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필요 문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투자자 자신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 개 이상의 엠브렐라 현금계좌가 본 펀드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보관회사는 각 엠브렐라 현금계좌 자금을 보호하고 관리감독 하며, 엠브렐라 현금계좌 자금이 해당 하위펀드에 귀속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와 보관회사는 엠브렐라 현금계좌와 관련한 운용절차에 동의하였으며, 동 운용절차는 참여 하위펀드들, 엠브렐라 현금계좌들로부터의 자금 이체를 위한 절차 및 프로토콜, 일일 대조확인(reconciliation) 절차, 매입대금 지급 지연 및/또는 시간적 차이에 따른 특정 하위펀드 귀속 자금의 다른 하위펀드로의 이체에 따른 하위펀드 자금 부족 발생 시 수행해야 할 절차에 대해 규명하고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및 전략. 본 펀드는 UCITS 규정에 따라 양도성 증권에 투자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각 하위펀드의 구체적인 투자목적, 전략 및 방침은 하위펀드 보충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하위펀드의 자산은 제2부의 내용중 '8. 나. 투자제한'에 정리되어 있는 UCITS 규정에 포함된 투자제한 조

항과 (해당되는 경우) 이사들이 채택하여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할 수 있는 추가 투자제한 규정에 따라 투자됩니다. 이사들은 인덱스 추적을 목표로 하는 하위펀드(“인덱스트래킹 하위펀드”) 또는 특정 인덱스를 능가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특정 투자목적의 달성을 위해 하위집합투자업자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하위펀드(“액티브 운용 하위펀드”)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목적 및 관련 하위펀드가 투자할 상품이나 증권 유형에 관한 정보는 하위펀드 보충본에서 제공합니다.

액티브 운용 하위펀드. 액티브 운용 하위펀드의 투자자산은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된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하위집합투자업자나 그 대리인에 의해 적극적으로 운용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적격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중 ‘8. 나. 투자제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각 하위펀드 자산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 UCITS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투자 제한과 이사들이 채택한 추가 투자 제한이 있는 경우 이러한 추가 투자 제한에 따라 투자하게 되며, 이러한 추가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또는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1	허용된 투자자산
1.1	<p>UCITS의 투자는 아래 각호로 제한됩니다:</p> <p>EU 회원국 또는 비-EU 회원국 의 증권거래소에 공식 상장이 허용되었거나 EU 회원국 또는 비-EU 회원국에서 규제되고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공인되고 일반에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p>
1.2	1년 이내에 증권거래소나 (상기 기재된) 기타 시장에서의 공식 상장이 허용될 최근 발행된 양도성 증권.
1.3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닌 단기금융상품.
1.4	UCITS수익권.
1.5	대체투자펀드 수익권.
1.6	신용기관에의 예치.
1.7	파생금융상품.
2	투자제한
2.1	UCITS는 상기 1항에 언급된 바 이외의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하위펀드 순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2.2 (1) 이하 (2)호를 전제로, UCITS는 UCITS 규정의 Regulation 68(1)(d)이 적용되는 유형의 증권에 그 자산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 (2) 위 (1)호는 “Rule 144 A Securities”로 알려진 미국 증권인 증권에 대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 (a) 관련 증권이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을 한다는 약정과 함께 발행된 것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 (b) 비유동적인 증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UCITS가 평가하는 가격이나 그에 근접한 가격으로 UCITS가 현금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3 UCITS는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하위펀드 순자산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발행인의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금액이 5%를 초과하는 경우 그러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 총 합계액은 4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2.4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전제로, (2.3항에 기재된) 10%의 투자한도는 EU 회원국에 등록사무소를 두고 있는 신용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법에 의거 수익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공적 감독을 받는 일부 채권에 대해서는 25%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단일 발행인이 발행한 전술한 채권에 그 자산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할 경우, 그러한 투자의 총 가액은 UCITS의 순자산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5 상기 2.3항에 명시된 10%의 투자 한도는 EU 회원국, 동 EU 회원국의 지방 정부, 비-EU 회원국 또는 EU 회원국 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였거나 보증한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는 35%까지 완화됩니다.
- 2.6 상기 2.4항과 2.5항에 언급된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은 상기 2.3항에 명시된 40%의 한도 산정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 2.7 부수적 유동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한 현금은 다음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a) UCITS 순자산의 10%, 또는
- (b) 보관회사에 개설된 계정에 현금으로 계상된 경우, UCITS 순자산의 20%.
- 2.8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에 대한 UCITS의 위험평가액은 순자산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럽경제지역(EEA)에서 인가받은 신용기관, (EEA 회원국이 아닌) 1988년 7월 바젤자본통합약정(Basel Capital Convergence Agreement)에 서명한 국가에서 인가받은 신용기관, 또는 저지(Jersey), 건지(Guernsey), 맨 섬(Isle of Man),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인가받은 신용기관인 경우 10%로 완화됩니다.
- 2.9 상기 2.3항, 2.7항 및 2.8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이 발행하였거나 동일인에 행하였거나 동일인과 체결한 이하 각 호의 투자를 2개 이상 합산하여 순자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양도성 증권 또는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 예금, 및/또는
 -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 2.10 상기 2.3항, 2.4항, 2.5항, 2.7항, 2.8항 및 2.9항에 기재된 한도는 합산될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일인에 대한 투자 비중은 순자산의 3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p>2.11</p> <p>2.12</p>	<p>2.3항, 2.4항, 2.5항, 2.7항, 2.8항 및 2.9항 목적상 그룹사는 동일 발행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룹 내에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투자시 순자산의 20%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p> <p>UCITS는 EU 회원국, EU 회원국의 지방 정부, 비-EU 회원국 또는 EU 회원국 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였거나 보증한 다른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순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p>단, 개별 발행기관은 이 투자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목록에서 발체될 수 있습니다:</p> <p>OECD 국가(단, 해당 종목은 투자등급이어야 함), 중국 정부, 브라질 정부(단, 해당 종목은 투자등급이어야 함), 인도 정부(단, 해당 종목은 투자등급이어야 함), 싱가포르 정부,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국제금융공사(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아시아개발은행(The Asian Development Bank),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 유럽 철도 및 차량 자금조달 회사(Eurofima), 아프리카 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세계은행), 미주간개발은행(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유럽연합, 연방국민저당협회(패니매(Fannie Mae)),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프레디맥(Freddie Mac)), 국립주택저당고(지니매(Ginnie Mae)), 학생대부협회(샬리매(Sallie Mae)), 연방주택대출은행(Federal Home Loan Bank), 연방농업신용은행(Federal Farm Credit Bank),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ennessee Valley Authority), Straight-A Funding LLC.</p> <p>UCITS는 최소한 6개 이상 종목의 증권을 보유하여야 하며, 어느 한 종목의 증권이 순자산의 3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합니다.</p>
<p>3</p>	<p>집합투자기구(“CIS”) 투자</p>
<p>3.1</p> <p>3.2</p> <p>3.3</p> <p>3.4</p> <p>3.5</p>	<p>UCITS는 어느 한 CIS에 순자산의 2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p> <p>대체투자펀드들에 대한 투자는 합산하여 순자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p> <p>CIS는 다른 개방형 CIS에 그 순자산액의 10% 이상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p> <p>UCITS가 UCITS의 운용사나 공동의 관리나 지배에 의하여 혹은 직간접적으로 상당수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UCITS의 운용사와 연계된 다른 회사가 직접 또는 위탁방식을 통하여 운영하는 다른 CIS의 수익권에 투자하는 경우, 이러한 운용사나 다른 회사는 이러한 다른 CIS 수익권에 UCITS 투자에 대하여 매입, 전환 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p> <p>다른 투자펀드 수익권 투자로 인해 담당자, 투자운용회사나 투자자문회사가 UCITS를 위하여 수수료(리베이트 수수료 포함)를 수령하는 경우, 담당자는 관련 수수료가 UCITS의 재산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p>
<p>4</p>	<p>인덱스 트래킹 UCITS</p>
<p>4.1</p>	<p>UCITS는 UCITS 투자방침상 UCITS Notices에 기재된 기준을 충족하고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인정한 지수를 복제(replicate)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동일인이 발행한 주식 및/또는 채무증권에 순자산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4.2	예외적인 시장 상황상 정당화되는 경우 4.1항 한도는 35%까지 완화될 수 있으며 동일 발행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일반 조항
5.1	투자회사, ICAV 또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든 CIS와 관련하여 행위하는 운용회사는 발행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결권부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5.2	<p>UCITS는 아래 각호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습니다.</p> <p>(i) 동일 발행인 무의결권주의 10%, (ii) 동일 발행인 채무증권의 10% , (iii) 동일 CIS 수익권의 25% , (iv) 동일 발행인 단기금융상품의 10%.</p> <p>주) (ii)호, (iii)호 및 (iv)호에 따른 한도는 만일 취득시에 채무증권의 총계, 단기금융상품의 총계 또는 발행된 증권 순금액 총계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점에 있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5.3	<p>5.1항 및 5.2항에 명시된 최대 투자한도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p> <p>(i) EU 회원국 또는 그 지방정부가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 (ii) 비-EU 회원국 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 (iii) EU 회원국 중 한 국가 이상이 가입해 있는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과 단기금융상품 (iv) 비-EU 회원국에 설립된 회사의 자본 중 UCITS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그 자산을 주로 당해 국가에 소재한 발행인 증권에 투자하며, 당해 국가의 입법에 따라 그러한 지분참여가 UCITS가 당해 국가에 설립된 발행인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경우. 이러한 면제는 만약 투자방침상 비-EU 회원국 회사가 2.3항 내지 2.11항, 3.1항, 3.2항, 5.1항, 5.2항, 5.4항, 5.5항 및 5.6항에서 정한 한도를 준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단, 이러한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 이하의 5.5항 및 5.6항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v) 전적으로 수익자를 대리하여 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른 수익권의 환매수와 관련하여 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에서의 관리, 자문 또는 마케팅 사무만을 오로지 영위하는 자회사들의 자본 중 투자회사나 투자회사들 또는 ICAV나 ICAV들이 보유하는 주식.</p>
5.4	UCITS는 자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부가된 청약권을 행사할 때에는 이 투자설명서의 투자제한을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5.5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최근 인가된 UCITS가 인가일 이후 6개월 동안은 2.3항 내지 2.12항, 3.1항과 3.2항, 4.1항과 4.2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위험 분산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5.6	만약 이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투자한도가 UCITS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또는 청약권의 행사를 이유로 초과되는 경우, 당해 UCITS는 수익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장래 증권 매도 거래에 있어서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5.7	투자회사, ICAV 또는 운용회사나 단위신탁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신탁업자나 계약형 펀드의 운용회사는 다음에 대하여 공매도를 실행할 수 없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성 증권 - 단기금융상품¹ - CIS 수익권, 또는 - 파생금융상품
5.8	UCITS는 부수적으로 유동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파생금융상품 ('FDIs')
6.1	FDI에 대한 UCITS의 총위험평가액(global exposure)은 순자산가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2	양도성 증권이나 단기금융상품에 대해 내재된 FDI를 포함한 FDI의 기초자산의 포지션 비중은 경우에 따라 직접 투자 포지션과 합산하여 아일랜드 UCITS규정에 기재된 투자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지수에 기초한 FDI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 기초 지수가 아일랜드 UCITS규정에 기재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6.3	UCITS는 장외 FDI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장외(OTC)거래시 거래상대방은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으며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승인하는 범주에 속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6.4	FDI 투자는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조건 및 투자한도에 따라야 합니다.

본 펀드는 그 운용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실용 부동산 및 집기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귀금속 및 이를 표창하는 증서를 취득하지 않습니다.

이사들은 투자자들이 소재하는 국가들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와 부합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위한 경우 그 전적인 재량으로 수시로 추가 투자제한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 투자 제한은 투자자산의 매입 당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투자한도 비율이 본 펀드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로 또는 청약권의 행사를 이유로 초과되는 경우, 본 펀드는 주주들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우선 과제로 이러한 상황을 시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등록된 하위펀드에 적용되는 추가 투자제한

본 펀드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특정 하위펀드 주식을 대한민국에서 판매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기재된 투자제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제한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순자산의 60% 이상은 비 원화 표시 자산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 하위펀드는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지 않습니다.
- 하위펀드는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을 대출(콜론은 제외)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 하위펀드는 (i) (EU 또는 OECD 회원국이 아닌) 정부나 이의 지방정부가 발행하였거나 (ii) 위 (i)의 정부가 보증한,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양도성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순자산가치의 3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습니다.
- 하위펀드 주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한국 이외에서 판매되어야 합니다.

¹ UCITS의 단기금융상품의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장외파생상품은 매일 신뢰 가능한 가격으로 평가되고 언제나 공정가치로 청산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각 하위펀드에 대한 개별적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에 관한 정보는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 투자기법. 하위펀드는 자금 관리 목적을 위하여 현금, 기업어음(즉, 신용기관 발행 단기어음) 및 단기 국채(즉, 정부 발행 단기채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펀드는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자신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는 목적을 가진, 집합투자업자, 하위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각자의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펀드(ETF)들과 단기금융상품(MMF)를 포함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보충본에 달리 언급이 없는 한, 그리고 제2부의 내용중 '8. 나. 투자제한'의 제3.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하위펀드의 투자는 순자산 가치의 10%로 제한됩니다.

하위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아일랜드 중앙은행 규정에 따른 적격 집합투자기구로서 이들은 EEA 회원국, 저지, 건지, 맨 섬 또는 미국에서 설립되어 있을 수 있으며, (i) UCITS 또는 (ii) 모든 중요한 측면에서 UCITS 규정을 준수하는 대체투자펀드로서 본국 규제당국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업자, 하위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계열사들이 운용할 수도, 혹은 운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UCITS 규정상 요건을 준수합니다. 하위펀드의 투자대상이 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시 차입금(레버리지)을 이용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기구가 총위험평가액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집합투자기구는 일반적으로 (i) 순자산가치의 100%를 초과하거나, (ii) 1개월 기간에 대한 투자손실한도(value-at-risk) 절대치가 99%의 신뢰수준에서 순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하거나, 또는 (iii) 1개월 기간에 대한 투자손실한도 (value-at-risk) 상대치가 99%의 신뢰수준에서 비교대상 기준 포트폴리오의 최대 손실가능금액의 2배를 초과하여 레버리지 하지 않습니다. 총위험평가액 측정에 투자손실한도(value-at-risk)가 사용되는 경우, 위험 요인들은 반드시 최소 1년(250 영업일)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과거 관측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이러한 모델에 사용되는 매개변수들(parameters)은 최소한 분기마다 갱신 되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 단계에서의 통화 헤지. 하위펀드는 관련 기준통화에 대한 기초증권의 통화 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그러한 헤지 거래를 행하는 경우 통화선물환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헤지 주식 클래스. 하위펀드는 특정 클래스와 관련된 외환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헤지하기 위해 동 클래스를 위하여 선물환계약을 포함한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하위펀드 내에서 각기 다른 통화로 표시된 클래스들이 설정되고, 관련 통화 위험의 헤지를 위해 통화 헤지 거래를 행하는 경우, 그러한 각 거래는 각각의 해당 클래스에 명확히 귀속되고, 관련 비용도 해당 클래스만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비용과 관련 부채 및/또는 이익은 해당 클래스 주당 순자산가치에 반영됩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로 인해 오버헤지 또는 언더헤지 포지션이 의도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헤지 포지션은 (i) 오버헤지 포지션이 해당 클래스 순자산가치의 105%를 초과하지 않으며, (ii) 언더헤지 포지션이 헤지 대상 클래스의 순자산가치의 부분의 95% 미만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러한 검토에는 해당 클래스 순자산가치의 100%를 상당히 초과하는 포지션과 앞서 언급된 수준에 미달하는 언더헤지 포지

선이 매월 이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헤지가 성공적일 경우, 해당 클래스의 성과가 기초 자산의 성과와 연동하여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 헤지 클래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클래스의 통화가 기준통화 및/또는 하위펀드 자산의 표시 통화에 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해당 클래스 보유자들이 이익을 얻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 투자목적 및 방침의 변경. 하위펀드의 투자목표의 변경 및 투자방침의 중대한 변경은 해당 하위펀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따른 사전승인이 요구됩니다. 투자방침의 변경 사항이 중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의 승인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위펀드는 투자목적의 변경 및 투자방침의 중대한 변경을 실시하기 전, 주주들이 주식을 환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증권대여.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경우, 하위펀드는 아일랜드 UCITS 규정에 명시된 조건과 제한사항에 따라 증권대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계약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 거래에서, 하위펀드는 차입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대여한 증권을 하위펀드에 반환하고 대여기간 동안 증권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하위펀드에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자신이 보유한 증권을 차입자에게 대여합니다. 하위펀드는 언제든지 대여된 증권을 회수하거나 자신이 체결한 증권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증권대여 프로그램에 따라, 지정 증권대여 대리인을 통해 거래의 완료나 다른 목적으로 증권을 차입하고자 하는 브로커들, 딜러들과 기타 금융기관들에게 포트폴리오 증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대여계약 조건에 따라, 지정 증권대여 대리인은 대여증권의 인도, 담보물 관리 및 증권대여보상 제공 등 증권대여 활동과 관련된 보수와 비용 총당을 위하여 증권대여 수익의 일부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리인 보수는 정상 요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한편, 집합투자업자는 증권대여 수익으로부터 직간접 운영비용과 보수를 차감한 잔액이 하위펀드에 귀속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정 증권대여 대리인은 보관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매매계약(Repurchase Agreement) 및 역환매조건부매매 계약(Reverse Repurchase Agreement).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경우, 하위펀드는 아일랜드 UCITS 규정에 명시된 조건과 제한사항에 따라 환매조건부매매계약과 역환매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은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으로만 이용될 수 있으며, 동 계약에 사용되는 자산의 유형은 해당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됩니다.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은 하위펀드가 매도 당시 상호 약정한 일자에 상호 약정한 가격으로 증권을 환매수한다는 약정을 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계약으로 그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해당 하위펀드가 수익이 정해집니다. 환매가격은 취득가격에 취득한 증권의 쿠폰금리나 만기와 관련 없는 약정된 시장금리를 더한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하위펀드는 증권을 매각한 후 상호 약정한 일자에 상호 약정한 가격으로 증권을 환매수하기로 하는 역환매조건부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하위펀드는 언제든지 현금 전액을 중도 상환하거나 발생 기준 또는 시가평가 기준에 따라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시가평가 기준으로 현금의 중도 상환이 가능한 경우, 해당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 산정을 위하여 반드시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의 시가평가 기준 가치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한 하위펀드는 언제라도 증권을 중도 상환하거나 환매조건부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고정기간부 환매계약의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간접 운영비용과 보수를 해당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직·간접 운영비용 및 보수를 제한 환매조건부매매계약과 역환매조건부채권매매계약의 수익 전액이 하위펀드에 지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매조건부매매계약과 역환매조건부채권매매계약은 UCITS 규정 취지상 대차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권대여, 환매조건부/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및 스왑의 거래상대방. 하위펀드는 신용평가가 수행된 거래상대방 하고만 증권대여, 환매조건부/역환매조건부매매 및 스왑 거래를 체결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유럽증권시장국(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이하 “ESMA”)에 등록되어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 시 그러한 신용등급이 고려됩니다.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그와 같은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A2 등급 이하(또는 이와 유사한 등급)로 하향 조정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신용 재평가를 수행합니다. 거래상대방들은 건전성 감독 대상이며, 대부분의 경우 OECD 회원국에 소재한,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승인한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으로서 집합투자업자 또는 보관회사의 관계사가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제2부의 내용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항에서 “증권대여” 및 “역환매조건부매매 계약 위험” 부분의 위험에 대한 경고 내용과 “특정 파생상품 관련 위험: 스왑 계약” 부분도 숙지해야 합니다.

파생금융상품 이용.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또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한 파생금융상품 이용에 대해서는 하위펀드 보충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이란 하위펀드의 성과와 관련 하위펀드가 추적하는 인덱스의 성과간 추적오차의 위험을 포함한 위험의 경감, 본 펀드 비용 절감, 본 펀드에 대한 추가 자본 또는 소득의 창출, 그리고 시장변동, 환율 또는 금리 위험에 대한 헤지를 의미하며, 제2부의 내용중 ‘8. 나. 투자제한’에 약속되어 있는 일반 제한사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위펀드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는 한, 하위펀드 순자산가치의 변동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 이용과 관련한 위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항에서 “위험 정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또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을 위해 하위펀드가 이용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 각 유형을 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하위펀드가 이용하는 파생금융상품 유형에 관한 추가 정보는 해당되는 경우 하위펀드 보충본에 제공되어 있습니다.

- **선물.** 선물계약은 장래의 확정된 날에 확정된 금액의 지수, 주식, 채권 또는 통화를 매수하거나 매도할 것을 약정한 계약입니다. 선물계약은 장내거래상품으로, 해당 거래소 규정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 **선물환계약.** 선물환계약은 장래 약정 시점에 약정한 환율로 일정 금액의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할 것을 약정한 당사자들간 계약입니다. 선물환거래는 장내 거래가 아닌 장외 거래되는 상품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통화 선물과 유사합니다. 선물환계약은 하위펀드와 관련한 통화 위험을 관리하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역외선물환계약(non-deliverable forward foreign exchange contracts)도 동일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역외선물환계약은 거래되는 통화 중 최소 한 개 이상은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정산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 선물환계약과 차이가 있습니다.
- **옵션.** 옵션은 옵션 발행인(매도인)이 옵션 매수인에게 특정 만기일 또는 행사일까지 특정가격(행사 가격)으로 특정 지수, 주식, 채권 또는 통화를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의무가 아님)를 보장해주는 계약입니다. 특정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옵션 매수인에게 부여하는 옵션을 콜옵션이라 하며, 매도할 권리의 경우 풋옵션이라 합니다. 하위펀드는 증권, 증권 지수 및 통화에 대하여 콜옵션 및 풋옵션을 매수 및 발행할 수 있으며(스트래들 포함), 선물계약 (스트래들 포함) 옵션과 스왑

계약 및/또는 금리, 환율 또는 증권가격 변동에 대한 헤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펀드는 다른 증권과 펀드 포지션에 대한 대안으로서, 그리고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익스포저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옵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스왑.** 스왑은 당사자 일방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이나 여러 자산의 성과와 같은 이득을 취득하는 대가로 그 거래 상대방에게, 예를 들어 약정 비율에 따른 지급과 같은 반대 급부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하위펀드는 통화, 금리, 증권, 집합투자 기구 및 지수를 포함한 다양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스왑계약(토탈리턴스왑, 차액계약(contract for difference) 및 신용디폴트스왑(CDS))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금리 및 환율 변동에 대한 대처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기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펀드는 이와 같은 기법을 증권 지수와 특정 증권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거나, 가격 변동에 대처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토탈리턴스왑을 체결하는 경우(또는 동일한 성격의 기타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간접 운영비용과 수수료는 관련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될 수 있으며, 이를 제외한 환매조건부/역환매조건부 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하위펀드에 지급됩니다.

CDS는 기초자산 증권에 대한 부도 위험을 증권보유자로부터 스왑 매도인에게 전가하는데 이용되는 스왑입니다. 예를 들면, 하위펀드가 CDS를 매수하는 경우(증권 발행인의 신용에 대해 매도포지션을 취하거나 관련 증권 투자를 헤지할 수 있음), 만일 증권 발행인이 증권에 대한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하위펀드는 CDS 매도인으로부터 증권 가치에 해당하는 금전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CDS를 매도하는 경우(증권 발행인 신용에 대해 매수포지션을 취하는 것), 하위펀드는 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고, 증권 발행인이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수수료 이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 **워런트.**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증권 취득 권리를 제3자가 부여하는 옵션과는 달리) 워런트는 발행인으로부터 일정 가격으로 기초자산 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하위펀드는 기초자산 증권에 대한 포지션을 취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리고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한도 내에서의 익스포저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워런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비(非)완전 자금 공여형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하위펀드는 (i) 파생금융상품의 명목금액에서 (해당되는 경우) 증거금을 차감한 한도 내의 현금 및 (ii) 해당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수취한 변동증거금 담보 현금(“파생금융상품 현금자산”으로 통칭)을 한 개 이상의 일일 거래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 “담보” 및 “담보의 재투자” 장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된 경우, 하위펀드는 전환사채,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과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모기지 관련 증권과 같은 자산유동화 상품 및 대출채권담보부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각 유형의 상품은 위에 설명된 종류의 파생금융상품이 내재되어 있음으로써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레버리지 비용은 총위험평가액 산정에 포함됩니다.

하위펀드는 완전자금공여형 파생금융상품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담보. 장외 파생금융상품이나 증권대여, 환매조건부/역환매조건부 매매 거래에서 하위펀드와 관련하여 수취하는 모든 자산은 아일랜드 UCITS 규정상 담보물로 간주되며 아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펀드는 펀드가 도입한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운영 위험과 법률 위험을 포함하여 담보 관리와 관련된 위험을 파악하여 경감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수취한 모든 담보물은 항상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유동성.** (현금 이외의) 담보물은 유동성이 높아야 하며, 매각 전 평가가치에 근접한 가격으로 신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정규 시장이나 투명한 가격이 보장되는 다자간거래시설에서 거래되어야 합니다. 담보물은 UCITS 규정의 제74조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글로벌 투자설명서와 UCITS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이용되어야 합니다.
- **가치평가.** 담보물은 매일 평가되어야 하며, 가격 변동성이 높은 자산은 충분히 보수적인 담보인정비율(haircut)이 마련되지 않는 한 담보로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 **발행인 신용도.** 담보물은 신용도가 높은 자산이어야 합니다. 하위펀드는 ESMA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는 한 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들이 발행인에 대한 신용등급을 제공하였을 경우, 하위펀드를 위하여 채택한 발행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러한 등급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외부기관이 제공하는 등급에 기계적으로 의존할 필요는 없지만, ESMA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는 기관이 정한 신용평가기관이 부여한 단기신용등급 중 가장 높은 두 단계의 신용등급보다 낮을 경우, 담보자산이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인에 대한 신용평가가 새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 **상관 관계.** 담보물은 거래상대방과 독립적 관계에 있는 법인이 제공하는 자산이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실적과 높은 상관관계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다양성.** 담보물은 국가, 시장 및 발행인 측면에서 충분히 다양해야 합니다. 해당 하위펀드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공 받은 담보물 중 동일 발행인 비중이 하위펀드 순자산 가치의 20%를 상회하지 않는 한 비현금성 담보물은 충분히 다양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위펀드가 다양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경우, 다양한 담보물을 합산하여 동일 발행인 비중이 하위펀드 순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별론으로, 하위펀드는 EU 회원국, EU 회원국 내 한 개 이상의 현지 당국, 제3국, 또는 한 개 이상의 EU 회원국이 소속된 국제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다양한 양도성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하여 완전한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위펀드는 최소 여섯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을 수취하고, 동일 발행인이 발행한 증권이 하위펀드 순자산 가치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U 회원국이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증권에 대해 완전한 담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하위펀드는 이러한 사실을 하위펀드 보충본에 공개하고, 자신의 순자산가치의 20%를 초과하는 담보로서 인수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하거나 보증하는 해당 EU 회원국, 현지 당국, 제3국, 또는 국제공공기관을 명시해야 합니다.

각 하위펀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담보물만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 현금,
- 국채 또는 기타 공공 증권,
- 관련 신용기관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
- 관련 신용기관 발행의 잔여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무조건적이며 취소 불가능한 신용장,
- EEA, 스위스, 캐나다, 일본, 미국, 저지 섬, 건지 섬, 맨 섬, 호주, 뉴질랜드, 대만, 싱가포르 또는 홍콩 소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 관련 신용기관 또는 비은행 발행인이 발행한 채권/기업어음.

본 펀드는 담보로 수취할 각 자산 종류에 대하여 담보인정비율(haircut) 방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보물에 적용되는 방침은 해당 자산 종류의 특성, 담보 제공자의 신용도, 담보물의 가격 변동성, 및 스트레스 테스트 방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별로 협상되며, 본 펀드가 수취하는 자산 종류에 따라 다양합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취득한 담보물은 (a) 매일 시가평가 되어야 하며, (b)

UCITS 규정에 따른 관련 거래상대방의 익스포저 한도를 고려하여, 동 거래상대방의 위험도(exposure) 가치와 항상 동일하거나 이를 상회해야 합니다.

담보물(증권대여, 환매조건부/역환매조건부 매매 계약 및 스왑 대상 자산 포함)은 (소유권 이전이 있는 경우) 보관회사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유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유권 이전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경우 담보물은 건전성 독을 받으며 담보제공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 보관인에 의해 유치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산 최소 30%에 대하여 담보를 수취하는 하위펀드는 수취한 담보물과 관련한 유동성 위험의 평가를 위해 본 펀드의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방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담보의 재투자. 수취한 비현금성 담보물은 본 펀드에 의해 매각, 질권 설정 또는 재투자될 수 없습니다. 현금 담보물은 아래 명시된 용도 이외에는 투자 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예금, 또는 관련 신용기관 발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 우량 국채에 대한 투자, 또는
- 유럽 MMF의 일반정의(참조규정: CESR/10-049)에 관한 ESMA 지침 규정(ESMA Guidelines on Common Definition of European Money Market Funds)의 단기 MMF에 대한 투자.

재투자된 현금담보물은 비현금성 담보물에 적용되는 다양화 요건에 따라 다양화됩니다. 현금 담보물이 재투자되는 경우, 본 펀드는 투자 대상 증권 발행인의 불이행 또는 부도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재투자의 결과 (투자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 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은 본 펀드가 반환되는 증권 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본 펀드에 손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본 펀드는 위에 명시된 제한 요건에 따라 현금담보물을 재투자합니다. 또한, 투자한 현금담보물은 거래상대방이나 관계사에 예치되거나, 이들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될 수 없습니다.

위험 관리. 위에 언급된 것 이외에 하위펀드가 사용하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기법은 하위펀드의 투자정책에 공개됩니다. 하위펀드가 사용하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기법은 하위펀드 투자목적을 변경시키거나 하위펀드의 위험 프로파일(risk profile)을 상당히 증가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하위펀드 보충본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하위펀드의 총위험평가액과 레버리지는 약정금 방식(commitment approach)을 사용하여 산정되며, 하위펀드의 총위험평가액은 순자산가치의 10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약정금 방식(commitment approach)은 각 하위펀드의 파생금융상품 포지션을 기초자산의 동등한 포지션으로 전환시키고, 파생금융상품 위험이 하위펀드가 의무를 가지는 (혹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미래의 "명목계약금액(commitment)"측면에서 모니터링 되도록 합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각 하위펀드에 대하여, 파생금융상품,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기법의 사용 및 담보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위험을 정확히 측정,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절차를 이용합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위험관리절차로 관리가 가능한 파생금융상품만을 이용합니다. 위험관리절차는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제출되어 승인되었습니다. 하위펀드가 추가적인 파생금융상품의 이용을 제안할 경우, 위험관리절차와 하위펀드 보충본은 이러한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되며, 개정된 위험관리절차가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제출되어 승인될 때까지 하위펀드는 그러한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 펀드는 요청이 있을 시, 적용된 정량적 한도와 주요 투자대상 범주의 위험 및 수익률 특징에 관한 최신 정보를 포함하여, 채택한 위험관리방법과 관련한 보충 정보를 주주들에게 제공합니다.

※ 본 펀드는 집합투자업자인 FIL Fund Management (Ireland) Limited가 운영하는 특정 UCITS에 적용되는 위험관리절차를 따릅니다.

차입. 각 하위펀드는 순자산가치의 10% 한도 내에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나, 자금 차입은 일시적이어야 합니다. 하위펀드는 백투백(back-to-back) 대출계약을 통해 외화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하는 외화는 UCITS 규정 제103(1)조에 따른 차입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계되는 예금이 (a) 하위펀드 기준통화로 표시되고, (b) 미상환 외화 대출의 가치와 동일하거나 이를 상회하여야 합니다. 상계 잔액이 하위펀드 기준통화 표시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통화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외화 차입금이 백투백(back-to-back) 예금 가치를 상회할 경우, 그 초과분이 UCITS 규정 제 103(1)조의 목적상 차입금으로 처리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차 투자. 아일랜드 UCITS 규정 제10조를 전제로, 하위펀드(“투자펀드”)는 다른 하위펀드(“피투자펀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상 (i) 피투자펀드는 투자펀드의 투자에 대한 매입, 환매 또는 전환수수료를 적용할 수 없으며, (ii) 피투자펀드는 다른 하위펀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iii) 피투자펀드에 투자되는 투자펀드 부분에 대하여 투자펀드 투자자들에게 청구되는 연간 운용보수나 투자운용보수 요율(보수가 투자펀드 단계에서 직접 지급되거나, 피투자펀드 단계에서 간접적으로 지급되거나 혹은 이 양자를 조합하여 지급되는 지를 불문)은 투자펀드 자산의 잔액에 대하여 투자펀드 투자자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연간 운용보수나 투자운용보수 요율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피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의 결과로 투자펀드에 대하여 연간 운용보수나 투자운용보수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없습니다.

나. 수익구조

각 펀드의 자세한 수익구조는 제2부의 내용중 '9.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주 1) 이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위험

위험 정보

본 장은 하위펀드 투자에 적용되는 일반 위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 하위펀드에 특별히 해당하는 추가 위험 정보는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장은 모든 위험 요소들을 완전히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다른 위험들 역시 때때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펀드 및 각 하위펀드의 실적은 시장, 경제, 정치적 상황 및 법률, 규제 및 과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비 투자자들은 하위펀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각자의 개인적 상황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설명서와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며, 주식중개업자, 은행 매니저,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또는 금융자문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주식에 대한 투자는 오로지 (단독으로 혹은 적절한 금융 자문인이나 기타 자문인을 통하여) 투자의 장점과 위험을 평가할 수 있으며 투자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이 있는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합니다.

주식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으나 하락할 수도 있으며 그 가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환매나 청산시 투자자들은

펀드 투자 원금이나 아무런 금액도 전혀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트래킹 하위펀드의 경우,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험은 추적 오차입니다. 포트폴리오 최적화 및 거래 활동 모두가 추적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1) 모든 하위펀드에 적용되는 일반 위험

이하에서는 양도성 증권과 기타 금융상품 투자 및 거래에 수반되는 불확실성과 위험들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위험들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하위펀드들과 하위펀드의 주주들이 하위펀드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들을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펀드의 수익률

각 하위펀드와 관련한 펀드 수익률 정보는 핵심투자자정보문서(KIID)에 나타나 있습니다. 과거 수익률이 반드시 하위펀드의 장래 성과를 나타내지는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장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치변동

각 하위펀드의 투자자산은 시장 변동 위험 및 증권/기타 금융상품 투자에 따르는 기타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리라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한 원금의 가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산의 가치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income)은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각 하위펀드의 투자목적이 실제로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위펀드 및 주식 클래스의 해지

하위펀드나 주식 클래스가 해지되는 경우, 해당 하위펀드나 클래스의 자산은 실현되고, 채무는 이행되며, 순 실현대금은 당해 하위펀드나 클래스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따라 주주들에게 분배됩니다. 이러한 자산 실현이나 배분시 해당 하위펀드나 클래스의 일부 투자자산의 가치가 최초 투자원금을 하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모든 정상 운영비용은 해당 하위펀드나 클래스가 부담합니다.

법률위험

일부 관할지의 경우, 법령 및 규제의 해석과 실행, 그에 따른 주주의 권리 행사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회계 감사 기준, 보고 관행 및 공시 요건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외환위험

하위펀드의 총수익과 재무건전성은 하위펀드의 자산과 수익(income)이 하위펀드 기준통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부터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통화 변동이 하위펀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환위험의 주요 3가지 요소는 환율변동이 투자자산 가치, 단기 기간간 차이(timing differences) 또는 수령한 수익(income)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하위펀드는 현물환이나 선물환 계약을 활용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헤지를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된 위험은 이하 금융파생상품 항목에서 설명됩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위안화(RMB)의 경우 복수 통화 바스켓의 시장 수급을 반영한 관리변동환율제가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재 위안화는 중국본토와 중국본토 이외(주로 홍콩) 즉 2개의 시장에서 거래됩니다. 역내 위안화는 자유롭게 환전되지 아니하며 중국본토 정부의 외환관리와 일정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 역외 위안화는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습니다. 위안화가 중국본토 이외 지역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기는 하나, 위안화 현물, 선도환계약 및 관련 상품은 이러한 개발시장에서의 구조적 복잡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위펀드는 더 큰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활발한 유통시장이 없고 매수호가와 매도호가 간 스프레드가 클 경우 특히 위안화 상품과 관련된 유동성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하위집합투자업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시 주식환매의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하위펀드의 자산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식통화지정 위험

주식 클래스는 관련 하위펀드 기준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하위펀드 기준통화와 클래스 통화 간 불리한 환율변동으로 인해 수익률 하락 및/또는 주주의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하위펀드의 기준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정된 클래스의 경우, 매입, 환매, 교환 및 분배시 집합투자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현행 환율로 환전이 이루어지며, 환전 비용은 관련 클래스가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하위펀드 기준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정된 클래스의 가치는 기준통화와 관련된 환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유동성위험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 각 하위펀드의 자산은 매각이 용이한 실현가능 자산으로 주로 구성됩니다. 하위펀드의 주요 책임은 투자자의 환매요청에 응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하위펀드가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각 하위펀드의 투자자산(현금 포함)이 운용됩니다. 환매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할 경우 보유자산의 매각이 필요할 수 있으며, 처분 규모가 크지 않거나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산의 매각이 불가능하거나 매각가격이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본 펀드는 각 하위펀드가 전술한 환매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위펀드가 채택하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거래들을 고려한 적절한 유동성위험 관리 절차를 마련합니다. 다만, 위의 상황에서 하위펀드가 모든 환매요청에 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산을 실현하지 못할 수 있거나 상황상 환매요청의 전부나 일부에 응하는 경우 하위펀드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본 펀드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환매대금의 결제가 지연될 수 있으며 또는 본 펀드가 제2부의 내용중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항의 '환매 제한'에 기재되어 있는 환매비율제한(redemption gate) 조항을 적용하거나 제2부의 내용중 '12.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항의 '거래 일시중단'에 기재된 바 대로 관련 하위펀드 거래를 중단할 것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결정 및 평가위험

펀드 자산은 주로 거래소나 이와 유사한 입증가능한 출처로부터 평가가격을 입수할 수 있는 상장된 투자자산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펀드는 또한 가격착정 오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 투자자산에도 투자합니다. 또한 펀드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일부 시장이 휴일이나 기타 사유로 폐장할 때 순자산가치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경우 및 이와 유사한 경우에 시가의 객관적이고 입증가능한 출처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관련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시가를 결정하기로 집합투자업자와 합의한 바 대로 공정가치(Fair Value) 절차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Fair Value) 절차에는 추정들과 주관성이 반영됩니다.

거래상대방 신용 및 결제 위험

모든 증권 투자는 하위집합투자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서 수락하는 중개인들을 통하여 거래됩니다. 승인 중개인 목록은 정기적으로 검토됩니다. 거래상대방이 예컨대 지급기한 내에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적시에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 불이행 가능성 등 하위펀드에 대하여 재무적 의무나 기타 의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하위펀드에게 발생하는 손실은 원계약상 가격과 대체계약상 가격(만일 계약이 대체되지 않은 경우 해당 계약이 무효화되는 시점의 해당 계약 절대적 가치)간 차액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일부 시장에서 '증권·대금 동시결제(delivery versus payment)'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하위펀드가 결제의무를 충족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해

당 계약의 절대적 가치의 손실 위험이 발생합니다.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 수반되는 위험

역환매조건부매매계약 매도자가 해당 매매계약에 따라 증권 환매수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매도 실현 대금이 환매수 가격보다 낮은 범위 내에서 관련 하위펀드가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만일 매도자가 도산하는 경우, 파산법원은 증권이 하위펀드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고 매도자 채무를 청산하기 위하여 증권매도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하위펀드가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나 그 동안 수익이 정상 수준 이하가 될 수 있고 수익에 대한 접근이 미흡하며 권리 행사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등 기초자산 증권의 현금화가 지연되고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증권 대여

증권대여는 (a) 하위펀드로부터 증권을 대출한 차주가 이의 반환을 불이행할 경우, 잘못된 가격평가, 불리한 시장변화, 담보발행인의 신용등급 하락 또는 거래시장에서의 담보물의 비유동성 등으로 인하여 대여 증권의 가치보다 실현된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위험, 및 (b) 대여 증권의 반환이 지연됨으로써 증권 매도 거래에 따른 하위펀드의 증권 교부 의무 이행 능력이 제한될 수 있는 위험이 수반됩니다.

투자기간(Investment Horizon) 위험

각 하위펀드를 위한 투자자산의 선정은 해당 하위펀드의 투자 목적에 따라 이행되며 투자자의 투자 기간과는 밀접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그의 투자기간과 밀접하게 일치하는 하위펀드를 정확하게 선정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투자기간과 하위펀드 투자기간 사이의 잠재적 불일치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식클래스 교차책임 위험

자산과 부채는 각 클래스에 정확하게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하위펀드 내에서 클래스간 분리는 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클래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클래스의 채권자들은 동일한 하위펀드 내의 다른 클래스에 귀속된 자산에 대해 제한없이 소구권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주들은 특정 클래스의 이익을 위해 특정 거래(예컨대, 환헷징 또는 금리 듀레이션 관리)가 체결될 수 있으나 해당 거래로 인해 동일한 하위펀드 내의 다른 클래스에 부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포지션 위험

하위펀드는 하위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자산의 상당 부분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위펀드가 장기간 상당한 현금포지션을 보유하는 경우 투자수익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하위펀드가 투자목적 달성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해상충위험

이사들, 집합투자업자, 하위집합투자업자와 여하한 하위투자운용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보관회사, 총괄판매회사, 여하한 하위판매회사와 기타 서비스 제공자 또는 본 펀드 자문사 및 그 계열사, 임원, 이사, 주주, 직원 및 대리인(총칭하여, “당사자들”)은 본 펀드나 하위펀드의 운용 및/또는 본 펀드와 관련한 그들 각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상충을 수시로 야기할 수 있는 다른 금융, 투자 및 전문 활동을 영위하거나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에는 다른 펀드들의 운용 또는 자문, 증권매매, 금융 및 투자운용 서비스, 중개 서비스, 비상장 증권의 가치 평가(경우에 따라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해당 증권을 평가하는 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보수가 증가될 수 있음) 및 본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펀드들 또는 회사들을 포함하여 다른 펀드들이나 기업들의 이사들, 임원들, 자문인들이나 대리인들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포함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 하위집합투자업자 및/또는 여하한 하위투자운용회사는 본 펀드나 하위펀드들과 투자목표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들에 자문하거나 이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 및/또는 여하한 하위투자운용회사는 거래소에 상장, 호가되거나 거래되지 않는 투자자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상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 평가 과정에서 하위집합투자업자 또는 하위투자운용회사의 참여와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산정되는 운용보수 또는 성과보수(해당하는 경우)의 일부에 대한 하위집합투자업자 또는 하위투자운용회사가 가지는 권리 사이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집합투자업자, 하위집합투자업자 또는 하위투자운용회사 또는 여하한 그 계열사가 투자자문 및/또는 일임운용 업무를 제공하는 다른 피운용펀드들이나 계약자산들이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사업체들에 투자하거나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그러한 사업체에 대하여 자산을 매입 및 매도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체들의 증권 트랑체(tranches)에 투자하거나 노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나 하위투자운용회사 또는 여하한 그들의 계열사들은 하위펀드의 주주나 혹은 그 주식이나 증권을 본 펀드나 본 펀드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해당 계약이나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회사나 기관과 금융 거래나 기타 거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각각은 각자의 의무 이행이 그들의 거래 참여로 침해되지 않고 이해상충 가능성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다합니다.

펀드는 오로지 보관회사, 집합투자업자, 하위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나 그룹 구성사들과 독립당사자간 협의된 정상적인 상거래 조건으로 이행되고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거래만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허용된 거래들을 다음 조건을 전제로 합니다:

- (a) 보관회사(또는 보관회사가 참여하는 거래의 경우 본 펀드)가 승인한 자가 독립적인 적격자인 자에 의한 공인 가치평가; 또는
- (b) 규정에 따른 조직화된 거래소에서 최선의 거래 조건으로 체결, 또는
- (c) 상기 (a)항과 (b)항의 실행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보관회사(또는 보관회사가 참여하는 거래의 경우 본 펀드)가 그 조건에 만족하는 거래의 체결이 독립당사자간 거래 조건으로 협의되고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

보관회사 또는 보관회사가 참여하는 거래의 경우 본 펀드는 상기 (a), (b) 또는 (c)항에 대한 준수방식, 그리고 거래가 (c)항에 따라 수행된 경우 그 거래가 해당 조항에 기재된 원칙에 준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관계회사는 주식에 투자하여 하위펀드 또는 클래스가 사업 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규모를 갖추게 될 수 있거나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그 관계회사는 하위펀드 또는 클래스의 발행된 주식에 대한 상당한 비중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와 하위집합투자업자가 통상적인 주문 체결에 더하여 약정상 제공되는 혜택이 본 펀드에 대한 투자 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되고 하위펀드의 실적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인 다른 범위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 중개업자를 활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침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래의 집행은 최선 집행 기준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며, 중개 효율은 통상적인 기관 종합서비스 중개 효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약정에 관한 상세 내용은 본 펀드의 정기보고서에 공개됩니다. 상세한 서비스들은 다양하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하위투자업자가 중개인 또는 기타 인을 통하여 본 펀드를 대리하여 주문을 집행하는 경우 해당 보수를 본 펀드에 전가하며, 그 대신 집행 서비스에 추가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수령하는 경우 이러한 부가적인 재화와 서비스가 (i) 고객들을 대신하는 거래의 체결과 관련되어 있거나 리서치 제공을 포함하며, (ii)

집합투자업자 또는 하위집합투자업자가 본 펀드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합리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며, (iii) 집합투자업자 또는 하위집합투자업자가 본 펀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여야 하는 의무의 준수를 저해하지 않으며 저해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을 합리적인 근거로 납득되어야 합니다. 해당 재화 및 서비스는 예컨대 정기 및 일회성 뉴스레터 형식의 리서치, 보고서 및 시장분석 및 특정 시장 또는 거래 장소에 대한 접근성, 실행 소프트웨어, 시장조성, 대량매매 및 주식 대여 시설, 거래 확인 및 결제 서비스 및 실행 관련 정보 및 자문을 포함합니다.

개별 중개인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양하나, 리서치 품질, 금융보안, 실행 서비스의 품질과 범위, 비용 및 신뢰성 및 고객 요구에 대한 대응성 등이 선택의 이유에 포함됩니다. 일부의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치는 중개인 수수료의 하한선 또는 해당 수수료 요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혜택들을 수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하위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비용 및 최종적으로는 펀드를 포함한 고객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특히 총체적으로 거래하고, 고객을 대리하여 거래들을 종합하고 개인투자자로서는 얻을 수 없는 이익을 얻을 수 능력으로 해당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실행과 리서치 각각에 관련된 재화 및 서비스의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약정들에 대하여 본 펀드에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계열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계열사는 인덱스 트래킹 하위펀드의 헤지 통화 클래스나 이들을 대신하여 체결된 현물환, 선물환 및 기타 외환계약과 관련한 특정 계산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에 수반되는 위험

본 펀드를 위한 외환거래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 하에 대리인으로서 행위하는 **FIL Group** 회사들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승인한 그의 적법하게 임명된 대리인이 수행합니다.

규모의 경제 및 펀드,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계열사의 다른 고객들의 이익을 위한 비용절감의 목적상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그러한 외환 거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및 피델리티가 운용하는 개별고객투자 포트폴리오를 대리하여 수행한 외환 거래가 통합될 수 있습니다.

보관위험

보관회사, 하위보관회사 또는 하위펀드의 거래 건들을 보유하거나 결제하는 중개인들과의 거래에도 위험이 수반됩니다. 보관회사, 하위보관회사 및 중개인의 도산 또는 파산시 하위펀드는 해당 보관회사, 하위보관회사 또는 중개인이거나 그 재단으로부터 자산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가 금지될 수 있으며 해당 자산에 대하여 보관회사, 하위보관회사 또는 중개인에 대하여 일반적인 정리채권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보관회사는 관계 법령 및 보관계약에서 합의된 특정 조항들에 준수하여 자산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은 보관회사의 파산으로 인한 부도 상황으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그것이 반드시 보호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본 펀드가 이머징마켓 등 보관 및/또는 결제 시스템 및 규제가 온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장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시장에서 거래되고 (하위보관회사가 필요한 경우) 하위보관회사에 위탁된 본 펀드의 자산은 보관회사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외부 사유로 인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었던 본 펀드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관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에 놓이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보관회사의 책임 관련 조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중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과 관련한 신용 위험

보관회사 또는 보관회사가 선임한 하위보관회사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 펀드는 보관회사 또는 이러한 하위보관회사의 신용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이란 어느 실체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본 펀드와 체결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보관회사 및 하위보관회사가 보유한 현금도 실무상 별도 관리되는 않으며 예금자로서의 본 펀드에 대하여 보관회사 또는 기타 하위보관회사들이 부담하는 부채가 됩니다. 해당 현금은 보관회사 및/또는 하위보관회사들의 다른 고객들의 현금과 함께 보관될 것입니다. 보관회사 또는 하위보관회사들의 도산시 본 펀드는 본 펀드의 현금보유와 관련하여 보관회사 또는 하위보관회사들에 대하여 일반적 무담보부 채권자로서 취급될 것입니다. 본 펀드는 해당 부채 회수에 어려움 또는 지연을 겪을 수 있으며,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 관련 하위펀드(들)의 현금 일부 또는 전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그 현금 보유로 인한 신용위험 노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추가 약정(예컨대, 단기금융펀드에 현금 유치)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보관회사에 대한 본 펀드의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는 보관회사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며 본 펀드가 신용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특정 절차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만일 보관회사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 보관회사는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건전성 감독의 대상이 되는 규제 기관으로 할 것입니다.

투자운용 위험

각 하위펀드는 투자운용에 수반되는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덱싱 표본의 선택 및 적용과 추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즉, 하위펀드 수익률과 관련 인덱스 수익률 간의 차이)에 대한 하위집합투자업자의 판단은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으며,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각 하위펀드는 하위집합투자업자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서비스에 상당 부분 의존합니다. 해당 개인의 사망, 무능력 또는 퇴사시, 해당 하위펀드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 및 자금관리 위험

보관회사에 대한 신용 익스포저를 줄이기 위하여 본 펀드는 (지급전 배당금 포함) 보유현금을 집합투자업자, 하위집합투자업자 또는 그들 각자의 계열사들이 운영하는 다른 펀드들을 포함한 단기금융펀드에 유치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기금융상품에 상당량의 자산을 투자하는 단기금융펀드는 정기에금투자의 대체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금융펀드에 대한 자금 유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에 연계된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금융펀드가 비교적 투자 위험이 낮은 수단일지라도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해당 기구의 투자대상이 만기가 짧고 신용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과 신용도의 악화로 인하여 동 펀드 수익률은 감소할 수 있으며, 동 펀드는 그 투자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투자원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을 위험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 해당 펀드 투자는 영(0) 이하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관련 하위펀드의 수익이 영향을 받고 음(-)의 투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관회사는 또한 보관회사에 대한 본 펀드의 익스포저를 줄이고 다양한 거래상대방에게 위험을 분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승인된 거래상대방에게 초단기 자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자금관리프로그램**”). 그러나, 본 펀드는 자금이 자금관리프로그램상의 거래상대방들에게 예치되어 있는 한 각 거래상대방의 도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급

본 펀드 또는 그 수권대리인은 지급과 관련된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선임된 예탁기관에 배당금 또는 환매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본 펀드는 주식의 실질 소유권 보유자들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지급도 실행할 책임이 없으며 관련 예탁기관에 대한 지급에 의하여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그러한 지급과 관련하여 본 펀드 또는 그 수권대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매회전을(Turnover) 위험

포트폴리오 매매회전은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 딜러 가산 이윤(dealer mark-ups), 매입-매도 스프레드 및 증권 매도와 다른 증권에 대한 재투자 관련 거래비용 등 관련 하위펀드에 대한 다수의 직접 및 간접 비용 및 경비가 포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펀드는 그 투자목적에 추구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에 대한 빈번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매회전을 증가와 관련된 비용은 하위펀드의 투자수익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하위펀드에 의한 증권 매도는 단기양도차익 등 과세대상 자본소득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규제위험

펀드는 UCITS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습니다. 본 펀드가 현재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며 장래 규제 변동으로 하위펀드의 실적 및/또는 그 투자목적 이행능력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 투자 위험

하위펀드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나 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기구가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하위펀드는 그러한 다른 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에 적용되는 모든 위험에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더욱이, 기초 투자기구의 유동성이 낮아 기초 증권 포트폴리오보다 그 가치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으며 하위펀드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시간과 가격으로 해당 투자기구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거나 환매할 능력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부의 내용중 '8. 나. 투자제한' 항목의 제3.1조에서 정하는 투자한도를 전제로, 다른 투자기구의 투자방침과 투자제한이 하위펀드의 투자방침 및 투자제한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하위펀드는 추가적 혹은 다른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나 다른 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투자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하위펀드가 투자하는 투자기구의 비용을 안분 비례하여 부담합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본 항목의 '이해상충'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위펀드가 자신이 다른 투자기구의 자펀드가 되는 (관련 하위펀드와 전반적으로 유사한 투자방침 및 투자제한을 가지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나 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역시 상응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하위펀드는 다른 하위펀드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사 또는 하위집합투자업자가 그 운용사인 다른 투자펀드에 대한 실행한 투자와 관련한 선취판매수수료/매입수수료/환매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또는 하위집합투자업자가 하위펀드의 투자자산을 다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다른 하위펀드에 투자함으로써 수령하는 수수료는 해당 투자 하위펀드 자산으로 귀속되어야 합니다. 하위펀드의 자산으로부터 지급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와 하위집합투자업자는 다른 하위펀드들에 투자되는 하위펀드의 자산에 대하여 운용보수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 매입 청약 및 환매에 수반되는 위험

매입청약이나 환매 신청이 늦게 수리되는 경우 신청 시간과 실제 매입 청약 및 환매일 간에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유예 또는 연기는 지급/수령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매입청약 및 환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중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 위험

제2부의 내용중 '14. 나. 과세' 항에서 제공하는 과세 정보는 이 투자설명서 일자 현재 세법 및 과세 관행과 관련하여 이사들이 제공받은 자문에 기하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 또는 하위펀드가 등록, 상장, 판매 또는 투자 활동을 하는 국가의 세법 변동시 본 펀드와 하위펀드의 과세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당 국가 내 관련 하위펀드의 투자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관련 하위펀드가 그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능력 및 투자자의 세후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파생계약 및/또는 거래상대방의 준거법의 관할권 및/또는 파생계약이 익스포저를 제공하는 시장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의 가능성 및 가치는 각 투자자의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제2부의 내용중 '14. 나. 과세' 항의 정보는 모든 내용을 망라한 것이 아니며 법률 또는 세무에 관한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예비 투자자들은 자신의 과세 상황 및 하위펀드 투자로 인한 과세 영향과 관련하여 세무자문가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하위펀드가 조세제도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거나 확실성이 충분하지 않은 국가에 투자하는 경우 본 펀드, 관련 하위펀드, 집합투자업자, 하위집합투자업자, 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본 펀드나 관련 하위펀드의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위하여 재정당국에 선의로 납부하거나 부담한 납부액이 차후에 납부하거나 부담할 필요가 없었거나 납부나 부담하지 않았어야 하는 점이 이후에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여하한 투자자에게 해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펀드는 아일랜드 이외의 국가에서 투자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납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아일랜드와 다른 국가들과의 이중과세방지협약으로 인한 외국 세율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펀드는 특정 국가들에서 본 펀드가 부담하는 외국 원천징수세에 대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위가 변동하고 본 펀드가 외국세액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 관련 외국세액이 최초로 공제된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는 재작성되지 않으며 환급 당시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에 그 혜택이 반영됩니다.

투자자들은 관련 인덱스 제공자가 해당 지수 산정 방식에서 제공한 세금에 대한 추정이 하위펀드 내 보유된 인덱스의 구성 증권의 실제 과세 취급과 상이한 경우 인덱스트래킹 하위펀드의 성과가 인덱스와 비교했을 때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엠브렐러 현금계정 관련 위험

주식발행 전 하위펀드와 관련하여 수령한 매입대금은 본 펀드 명의의 엠브렐러 현금계정에서 보관합니다. 투자자들은 당해株式이 발행될 때까지는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해당 하위펀드의 무담보 채권자가 되며, 주식발행시까지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 상승이나 기타 주주의 권리(배당금 권리 포함)로부터 혜택을 얻지 못합니다. 본 펀드나 하위펀드 도산시, 본 펀드나 하위펀드가 무담보부 채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위펀드의 환매대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초 매입청약 문서들의 수령과 모든 자금세탁방지절차의 준수를 전제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매 주주는 그 환매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환매일부터 주주로서의 자격이 중단됩니다. 환매 주주와 배당에 대한 권리가 있는 주주는 환매일 또는 경우에 따라 배당일로부터 하위펀드의 무담보부 채권자가 되며, 환매금 또는 분배금과 관련하여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 상승이나 기타 주주의 권리(추가 배당금 권리 포함)로부터 혜택을 얻지 못합니다. 이 기간 중 본 펀드나 하위펀드의 도산시, 본 펀드나 하위펀드가 무담보부 채권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매 주주와 배당에 대한 권리가 있는 주주는 미제출 서류들과 정보가 즉시 제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하지 못한 경우의 결과는 해당 주주가 그 위험을 부담합니다.

본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가 도산하는 경우, 해당 하위펀드가 회수할 권리가 있으나 (투자자로부터 지급되어야 하는 매입청약금 포함) 엠브렐러 현금계정의 운영으로 인하여 다른 하위펀드로 이전될 수 있는 금액은 아일랜드 신탁법 원칙과 엠브렐러 현금계정 운영절차의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금액의 회수는 지연될 수 있고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며, 도산 하위펀드가 관련 하위펀드에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하위펀드 또는 본 펀드가 해당 금액을 회수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경우 해당 하위펀드 또는 본 펀드가 무담보부 채권자에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2) 주식 관련 위험

주식

주식에 투자하는 하위펀드의 경우, 주식의 가치는 각각 개별회사의 활동과 결과에 따라 또는 일반적인 시장 및 경제 상황 등에 따라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산의 표시통화가 당해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하위펀드의 기준통화와 다를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에탁증서

미국주식에탁증서(ADRs)와 글로벌주식에탁증서(GDRs)는 그 기초증권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인덱스를 구성하는 기초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위하여 ADR 및 GDR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기초증권의 직접 보유가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초증권에 대한 직접 접근이 제한되거나 제약이 있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ADR과 GDR이 항상 기초증권과 일치하는 성과를 내지 않기 때문에 하위집합투자업자는 기초 증권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와 유사한 성과가 달성되리라는 보장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이 중단되거나 폐쇄되는 경우 ADR 또는 GDR의 가치가 관련 기초 증권의 가치를 밀접하게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하위집합투자업자가 ADR 또는 GDR에 투자할 수 없거나 투자하는 것이 적절치 못할 수 있거나, ADR이나 GDR의 특성이 기초증권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위에서 기술된 상황에서 ADR이나 GDR에 투자하는 경우, 하위펀드의 인덱스 추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위펀드의 수익이 벤치마크 인덱스 수익과는 상이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3) 채권 관련 위험

채권, 채무증서 및 고정수입(하이일드증권 포함)

채권이나 기타 채무증서에 투자하는 하위펀드의 경우, 그러한 투자자산의 가치는 시장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 및 유동성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증서에 투자하는 펀드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발행자의 신용도, 시장 유동성 및 환율(투자자산의 표시통화가 당해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하위펀드의 기준통화와 다를 경우)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하위펀드들은 수익 실현 가능성은 (투자적격등급 채무증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나 가치하락 위험 및 자본손실의 실현 위험이 (수익률이 낮은 채무증서에 비해) 상당히 높은 고수익 채무증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위험

일부 하위펀드는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성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성 증권은 채권의 신용도 혹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기초하여 신용평가기관(Fitch, Moody's, Standard & Poor's)로부터 최상위 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적격등급의 고정수입증권(fixed income securities)은 Standard & Poor's로부터 BBB-/Baa3 이상 혹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등급(서로 다른 신용등급이 부여된 경우, 가장 높은 두 등급 중 더 낮은 등급)을 부여받은 채권입니다. 다른 유형의 채무성 증권과 마찬가지로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성 증권에는 신용위험이 수반되며, 발생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용평가기관의 등급 하향 조정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등급의 하향조정은 하위펀드가 이러한 증권에 투자하는 기간 동안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한 차례 혹은 수 차례 등급 조정을 거쳐 투자적격등급 이하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증권을 계속하여 보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낮은 등급/무등급 증권

특정 하위펀드는 낮은 등급 및 무등급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채무증서의 신용도는 대개 신용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됩니다. 중간 및 낮은 등급의 증권 및 이와 유사한 신용도를 가지는 무등급 증권에는 더 넓은

수익을 변화, 더 넓은 매입-매도 스프레드, 더 높은 유동성 프리미엄 및 더 집중된 시장기대가 수반되므로 그에 따라 높은 등급 증권에 비해 시장 가치의 변동 폭이 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높은 등급 증권에 비해 더 높은 신용 및 시장 위험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등급의 변화 또는 이러한 변화에의 기대는 수익률과 시장가치의 (때때로 상당한)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하위펀드가 보유한 당해 증권의 가치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으며 하위펀드는 그 투자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자금 예탁기관이 도산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채무불이행)에 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산은 이로부터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이나 기타 채무증서 투자 원리금의 최종 변제가 불확실한 경우 신용위험이 존재합니다. 위 양자의 경우 채무증서의 전체 예탁금이나 매매대금은 만일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에 회복되지 않는 경우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디폴트) 위험은 일반적으로 “투자적격등급이하” 등급으로 분류되는 채권들과 채무증서들에서 가장 큽니다.

유동화/구조화 채무증서

하위펀드들은 유동화 채무증서나 구조화 채무증서(통칭하여 “구조화상품”이라 함)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서에는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및 담보부 채무증서 및 담보부대출채무가 포함됩니다. 구조화 상품은 합성방식 등을 통해 기초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제공하며 이러한 상품의 위험/수익 특성은 해당 자산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부 상품은 복수의 증서들과 현금흐름 프로파일과 관련되어 있어 모든 시장 시나리오들로부터의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투자자산의 가격은 구조화증서들의 기초 요소들의 변동에 따르거나 또는 이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기초 자산은 고객들로부터 정기적인 현금흐름을 가지는 회사나 구조화기구로부터의 신용카드 매출채권, 주택저당 채권, 기업대출금, 조립식주택대출금(manufactured housing loan)이나 여하한 형태의 매출채권(receivables)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구조화상품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았을 경우 보다 증권의 가격이 더 큰 변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화상품에 대한 투자는 다른 증권보다도 유동성이 적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족은 자산의 현재 시가가 기초자산의 가치와 분리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구조화상품에 투자하는 하위펀드들이 유동성 위험에 보다 취약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상품의 유동성이 정규 채권이나 채무증서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이는 포지션 해소 능력이나 매도 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Bonds)에 수반되는 위험

조건부자본증권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거나 미리 정한 사유(“발동 요건”)의 발생시 원금이 상각되도록 하는 조건을 가진 채무증권의 한 유형입니다. 발동 요건은 통상 발행인의 재정상태와 연관되어 있으므로 전환은 기초자산의 상대적인 자본력의 악화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으로의 전환은 채권이 발행 및 매입되었을 때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 상황의 악화시 발행인의 유동성 프로파일은 상당히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준비된 매수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매도시 상당한 할인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영구채(만기일 없는 채권 등)로도 발행될 수 있으며, 조기상환일(call date)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일자에 상환이 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해당 채권이 상환되지 않음으로써 투자원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4) 국가집중 및 스타일 관련 위험

국가집중

기본적으로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하위펀드는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하위펀드보다 그 국가의 시장, 정치, 법률, 경제 및 사회적 위험에 더 노출될 것입니다. 특정 국가의 경우 외환규제를 부과하거나 혹은 당해 국가의 운영 시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및 자산물수와 같은 기타 조

치는 투자자산의 매매 및 환매와 같은 하위펀드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위펀드의 거래가 중지되거나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이나 환매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하위펀드의 보유자산 평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해당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국가에 걸친 투자자산이 환위험과 같은 여타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집중

일부 하위펀드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투자자산에 투자하거나 특정 업종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많은 투자자산이나 업종에 투자를 분산하는 하위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이러한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는 더 큰 변동성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투자

투자가 중소형 회사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 관리를 위한 대안적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소형 회사의 주가는 통상 대형주보다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즉, 중소형 회사가 발행한 증권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하며, 안정된 대기업에 비하여 시가가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통상 더 많은 자본상승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열악한 경제/시장 환경에 의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기업에 투자할 때보다 더 큰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생산라인이나 시장/금융 자원이 제한적이거나, 한정된 경영진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보다 높은 변동성에 추가하여, 중소형주의 가치는 일정 부분 대형주와 상관없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즉, 대형주의 가치가 상승할 때 중소형주의 가치는 하락할 수 있으며 혹은 그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회사 및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하위펀드의 경우 특히 대규모 거래는 중소형주 시장이 가지는 상대적인 비유동성으로 인하여 대형 펀드의 이와 유사한 거래나 이와 유사한 대형주 거래와 비교하여 펀드의 운용비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이머징마켓 위험

이머징마켓 (러시아 포함)

일부 하위펀드는 하위펀드 보충본에서 정하는 이머징마켓 증권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투자합니다. 이러한 증권은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더 변동적이며 따라서 성숙한 시장에 투자하는 하위펀드와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당해 하위펀드의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 양도 및 통화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몇몇 이머징마켓 국가의 경제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세계의 실물가격 및/또는 인플레이션율의 변동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발행인 및 시장에 대한 규제, 회계 및 공시요건이 일반적으로 덜 엄격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특히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 대한 투자에 수반되는 추가적 위험에는 서로 다른 시스템, 절차 및 요건과 원천징수 및 기타 조세 관련 법률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래, 결제, 보관 및 기타 운영위험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비록 각각의 하위펀드가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하지만 결국은 하위펀드의 주주들이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위펀드 보충본에 규정된 특정 하위펀드들은 인도 증권에 직접(physically)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당해 하위펀드는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에 관한 2014년 인도 증권거래위원회 규정(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 (Foreign Portfolio Investors) Regulations 2014)에 따라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자("FPI")로서 등록되어야 합니다. FPI로 등록되기 위하여, 하위펀드는 하위펀드의 투자자수 및 해당 투자자들의 최대 지분보유 비율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FPI에 따라 적용되는 광범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할 경우에 대하여, 이사들은 공동 보관회사의 명의소유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투자자도

하위펀드 주식의 49% 이상(수량 또는 가치 기준)을 보유할 수 없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매입으로 인하여 매입 예정일 현재 하위펀드의 발행주식 소유지분이 49% 이상(수량 또는 가치 기준)이 되는 경우 당해 하위펀드의 주식 매입은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매입대금이 반환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하위펀드는 순자산의 일부를 러시아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정규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증권에 순자산의 10% 이상 투자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러시아 시장의 경우 등록기관이 항상 효율적인 정부 감독이나 기타 감독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의 등재에 따르는 위험뿐 아니라 증권 결제와 보관에 따르는 특수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러시아에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 규정이 없고 주주에 대한 경영진 의무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투자자나 투자자산의 보호와 관련된 일반 규정의 부재 역시 추가적 위험요소입니다. 러시아 증권은 보관회사 또는 보관회사의 러시아 현지 대리인에게 위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관회사나 이의 러시아 현지 대리인은 인정된 해외기준에 따라 실물의 위탁이나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보관회사는 오로지 자신의 과실과 고의 및 보관회사의 러시아 현지 대리인의 과실과 고의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등록기관의 청산, 파산, 과실 및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펀드는 증권의 발행인 및/또는 발행인이 선임한 등록기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하위펀드가 수쿠크(sukuk) 구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당해 하위펀드 투자자들은 수쿠크(sukuk) 구조에 대한 투자가 다른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에 비하여 유동성이 낮고 가격변동성이 클 수 있으며 높은 거래비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의 전부나 일부는 다른 이머징마켓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지수 관련 위험

지수 관련 위험

이 투자설명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투자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인덱스트래킹 하위펀드는 보통 인덱스 제공자가 제공한 관련 인덱스의 보수 및 비용 공제 전 가격 그리고 수익률 성과와 일치하는 수익의 달성을 추구합니다. 인덱스 제공자가 인덱스를 정확하게 취합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그 인덱스가 정확하게 결정, 구성되거나 산정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인덱스 제공자가 인덱스가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그 인덱스와 관련한 데이터의 품질, 정확도 또는 완전성과 관련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인덱스가 설명이 제공된 방법을 따르고 있다는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각 인덱스트래킹 하위펀드와 관련하여 선임된 하위집합투자업자의 임무는 이 투자설명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관련 하위펀드를 하위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된 관련 인덱스에 일치하여 운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인덱스 제공자의 오류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보장도 하지 않습니다. 데이터의 품질, 정확성 및 완전성과 관련한 오류는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자주 활용되지 않는 지수들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발견되거나 시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덱스 제공자 오류와 연계된 이익, 손실이나 비용은 하위펀드 및 그 투자자들이 부담할 것입니다. 예컨대, 인덱스가 부정확한 종목들을 포함하고 있는 기간 중 그러한 공개된 인덱스를 추종하는 하위펀드는 해당 종목들에 대한 시장 익스포저를 가지게 되고 그 인덱스에 포함되었어야 하는 종목들에 대한 익스포저는 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류로 인하여 하위펀드 및 그 투자자들의 성과에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덱스 제공자의 오류로 인한 수익은 관련 하위펀드 및 그 투자자가 보유하며 인덱스 제공자 오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역시 관련 하위펀드 및 그 투자자들이 부담한다는 점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예정된 재조정(리밸런싱)은 예외로 하고, 인덱스 제공자는 예컨대 인덱스 종목 선정에서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인덱스에 대한 추가적인 수시 재조정(리밸런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트래킹 하위펀드의 지수가 재조정(리밸런싱)되고 그에 따라 하위펀드도 그 인덱스에 부합하게 포트폴리오를 재조정(리밸런싱)하는 경우 여하한 거래비용(자본소득세 및/또는 거래세 포함) 및 해당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으로부터 발생한 시장 익스포저는 하위펀드와 그 투자자들이 직접 부담할 것입니다. 인덱스들에 대한 예정되지 않은 재조정(리밸런싱) 역시 하위펀드가 추적 오류 위험(그 수익이 지수의 수익을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류 및 인덱스 제공자가 수행하는 인덱스에 대한 추가 수시 재조정(리밸런싱)은 관련 하위펀드의 비용 및 시장 익스포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덱스트래킹 하위펀드의 인덱스가 미래지향적 요소를 가진 기준을 충족하는 증권(예컨대, 고수익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유동성, 주주에 배분되는 기업수익 배분율, 영업이익 수준, 시가총액 및 기업 지배구조 심사(corporate governance credentials)에 기하여 선택된 증권)의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인덱스가 그 목표를 충족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요소들이 증권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그러한 요소가 가격에 주는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인덱스 인가 위험

인덱스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요구되는 경우) 본 펀드, 집합투자업자나 하위집합투자업자(또는 그 계열사들)로 하여금 인덱스트래킹 하위펀드의 목적상 인덱스를 복제하거나 달리 이용하기 위한 인가가 만료되거나 그러한 인가가 (어떤 이유로) 달리 이의가 제기되거나, 손상되거나 중단되는 경우, 이사들은 해당 인덱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장을 추종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하위펀드에 대하여 추종하기에 적절하다고 여기는 다른 지수로 인덱스를 대체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체 또는 대체의 지연이 하위펀드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들이 관련 지수를 대체할 적합한 지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펀드의 해지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덱스 트래킹에 수반되는 위험

인덱스트래킹 하위펀드의 투자목적이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어떠한 금융상품도 지수의 수익이 재생산되거나 정확하게 추종되도록 할 수 없으며, 하위펀드가 완전복제가 아닌 포트폴리오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추적오차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의 투자 변경 및 관련 지수의 비중재조정(re-weighting)으로 다양한 거래비용(외환거래 결제 관련 포함), 운영비용 또는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하위펀드의 인덱스 추이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펀드 주식 투자로부터의 총 수익은 해당 인덱스 산정시 고려되지 않은 특정 비용 및 경비로 인하여 감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수를 구성하는 투자자산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차질이 있거나 시장 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하위펀드 투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인덱스 수익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적화 전략에 수반되는 위험

특정 하위펀드가 그들 각자의 인덱스들을 복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덱스를 복제하는 것이 하위펀드 투자방침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하위펀드는 그들 각자의 인덱스 성과를 추종하는 데 있어 최적화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 기법에는 인덱스를 구성하는 증권의 (전부가 아닌) 일부의 전략적 선택, 인덱스 비율과 상이한 비율의 증권 보유 그리고/또는 인덱스를 구성하는 특정 증권의 성과 추종을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활용이 포함됩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또한 관련 인덱스를 구성하는 특정 증권과 유사한 성과(및 위험 프로파일 일치)를 제공하는 증권으로 구성되는 관련 인덱스의 구성종목이 아닌 증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를 최적화함으로써 추적오차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위험은 수익이 그들 각각의 인덱스들을 정확하게 추종하지 못할 위험을 의미합니다. 최적화 전략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 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U 벤치마크 규정

2016년 6월 30일 유럽의회 및 유럽위원회는 금융상품 및 금융계약에서 벤치마크로 활용되거나 투자펀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지수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EU 벤치마크 규정**”). EU 벤치마크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벤치마크가 중대하게 변동하거나 제공 중단시 취해야 하는 조치를 명시한 지수비상계획을 유지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본 펀드가 지수비상계획에 기하여 취할 조치들로 인하여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또는 투자방침에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본 펀드의 투자가치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아일랜드 중앙은행 요건 및 글로벌 투자설명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7) 파생상품 관련 위험

금융파생상품

본 펀드는 하위펀드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리스크나 비용을 줄이고 추가 자본이나 수익(income)을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금융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하위펀드들은 투자목적에 보다 상세히 기재된 바와 같이 광범위하게 그리고/또는 보다 복잡한 전략을 위하여 파생상품을 활용(즉, 파생능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본 항목과 파생상품을 언급하는 기타 부분에서 사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나 장외거래 파생상품을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합니다.

투자자들은 파생상품 활용에 대한 권한을 유념하여 특정한 펀드가 자신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독립적인 투자자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생상품은 집합투자업자와 같이 숙련된 투자자문회사가 신중하게 이용할 경우에는 이익이 될 수 있으나 파생상품에는 전통적인 투자방법에 따르는 위험과 상이하거나 일부 경우에는 그보다 큰 위험이 수반됩니다. 파생상품의 활용에는 레버리지 거래가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파생상품에 투자한 금액보다 상당히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며 이러한 하위펀드들의 순자산가치는 레버리지 거래를 활용하지 않을 때보다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레버리지 거래가 각 펀드의 포트폴리오 증권 및 기타 증서의 가치의 증감을 더욱 크게 만드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내용은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파생상품 사용에 따르는 중요한 위험 요소 및 관련 문제를 개괄적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 시장 위험 - 특정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는 모든 투자자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험을 말합니다.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가치(증권이나 기준 벤치마크)가 변동하는 경우 투자상품의 가치는 기초자산의 성과에 따라 양(+의 수가 되거나 음(-)의 수가 될 수 있습니다. 비옵션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가치 변동의 절대적인 규모는 기초증권이나 기준 벤치마크 가치 변동과 매우 유사합니다. 옵션의 경우 이하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가치의 변동이 기타 다양한 변수에 달려 있으므로 옵션 가치의 절대적인 변동이 기초 가치 변동과 반드시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 유동성 위험 - 유동성 위험은 특정 상품의 매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발생합니다. 만약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와 같이) 파생상품거래 규모가 매우 크고 관련 시장이 비유동적일 경우, 거래를 개시하거나 유리한 가격으로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거래상대방 위험 및 신용위험 - 파생상품 거래상대방(통상 “거래상대방”)이 파생상품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하위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말합니다. 장내 파생상품에 따르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은 일반적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따르는 위험보다 낮은데, 이는 각 장내 파생상품의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인 결제기관이 결제이행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보증은 전반적인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 결제기관이 운영하는 일별 지급시스템(즉, 증거금 요건)에 의해서 지원됨

니다. 브로커 및/또는 거래소에 증거금으로 예탁하는 자산은 거래상대방별로 별도 계정으로 보유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 사유 발생시 이러한 거래상대방들의 채권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결제기관의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신용평가와 외부 신용평가기관 등급을 활용하여 현재와 잠재적인 장래 신용 익스포저를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을 측정, 감시하고 관리하는 거래상대방 위험 관리 제도를 채택합니다. 사적으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자들간의 약정이므로 관련 당사자들의 요건에 따라 맞춰집니다. 문서화 위험은 표준 ISDA(국제스왑파생투자상품 협회) 문서를 채택함으로써 감소됩니다.

하위펀드의 개별 거래상대방에 대한 익스포저는 관련 하위펀드 순자산의 1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은 담보약정의 활용을 통하여 추가로 감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약정에는 여전히 발행인들이나 담보물 예탁기관의 도산위험과 신용위험이 수반됩니다. 나아가 그 한도 아래로는 담보가 요구되지 않는 담보 한계금액이 존재하며 담보 요구 결정 시기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담보 수령 시기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모든 현재 익스포저가 담보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결제 위험 - 선물, 선도, 차액계약, 스왑 및 옵션(어떠한 유형인지 여부를 불문)이 적시에 결제되지 않아 결제 이전에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잠재적으로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자금조달 비용을 감수하여야 하는 위험을 말합니다. 결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하위펀드가 입는 손실은 증권과 관련되는 이러한 다른 상황과 마찬가지로 최초 계약 가격과 대체 계약 가격간의 차액이 되며, 혹은 대체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효화된 계약의 절대가치가 됩니다.
- 펀드 운용 위험 - 파생상품은 주식 및 채권 투자와는 상이한 투자기법 및 위험분석을 요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투자자산입니다.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득이 가능한 모든 시장상황 하에서 파생상품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이점 없이 기초자산의 특성뿐 아니라 파생상품 자체의 특성에 대하여 이해할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장외파생상품 가격은 일부 시장 상황에서는 기초 증서의 가격과 연동하여 변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위험 - 파생상품 사용에 따르는 기타 위험에는 파생상품의 가격결정오류 및 부적절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일부 파생상품, 특히 사적으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관측가능한 가격이 없으므로 기초 증권 가격이나 기준 벤치마크를 다른 시가 출처로부터 입수한 공식을 활용합니다. 장외옵션은 전제조건을 가진 모델 활용과 관련되어 있어 평가 오류 위험이 커집니다. 부적절한 평가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현금지급요건의 증가 또는 펀드의 가치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동 상품이 따르고자 하는 자산, 금리 및 지수의 가치와 항상 완벽한 상관관계를 가지거나 혹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항상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펀드의 파생상품 사용이 항상 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파생상품의 활용은 효과를 거두지 못할 수 있으며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정 파생상품과 관련된 위험

이하의 파생상품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는 하위펀드의 경우 아래와 같은 위험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증권선도계약 및 차액계약: 이러한 계약의 매입인 또는 매도인은 기초증권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기초증권의 가치가 변화하면, 계약가치가 정부(正負)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결제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선물계약과 달리 장외선도계약과 차액계약은 당사자 양자간에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준

화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선물계약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 각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며, 이러한 위험 경감을 위해 담보약정이 이루어집니다. 나아가, 이러한 계약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입인으로 하여금 처음 단계에서 거의 모든 자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시가평가에 따른 증거금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가지수, 단일 주식, 금리 및 채권 선물: 장내 선물 계약의 매입인 또는 매도인은 기초 기준지수/증권/계약/채권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합니다. 선물계약은 미래의 특정 일자까지 경제적 가치를 양도하기로 약정하는 선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가치의 교환은 계약에서 정한 일자까지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계약은 현금 결제 조건이며, 실물 교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초증서(**underlying instrument**)의 교환은 실제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선물은 표준화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공식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감독 기관의 감독을 받고, 결제기관의 보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선도계약과 구별됩니다. 또한, 지급 보장을 위해 선물의 경우에는 매일 결제되어야 하는 기초자산의 시가에 연동한 최초 증거금 및 증거금 요건이 적용됩니다.

장내 및 장외 옵션: 옵션은 (옵션의 거래시점 및 거래 이후 시점의 현물가격 대비) 특히 기초자산의 행사가격, 옵션의 잔여만기, 옵션 유형(유럽식, 미국식 등) 및 변동성과 같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복잡한 상품입니다.

옵션거래에 따르는 가장 큰 위험은 옵션이 내재가치(즉, “내가격”)를 가지고 있거나,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근접(“등가격”)할 경우에 발생하는 기초자산의 시장위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은 옵션 가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다른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은 행사가격이 기초자산의 가격에서 멀어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결제기관을 통해 결제되는) 장내옵션거래와 달리, 장외옵션계약은 당사자 양자 간의 사적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표준화된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양 당사자는 각 상대방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며, 이러한 위험 경감을 위해 담보약정이 이루어집니다. 장외옵션의 경우 장내옵션 보다 유동성이 더 적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옵션 포지션의 청산 능력 및 청산가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물환계약: 외환계약은 특정 일자 현재 어느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이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과 교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가치는 환율변동(선물환의 경우 금리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이 하위펀드의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를 기준통화로 헤지할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 헤지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 및 가치 변동이 헤지대상 통화 가치의 변동과 정확하게 상쇄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어느 특정일자 현재 기준으로 총계약금액을 교환하기 때문에 하위펀드의 지급일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금 수령일까지 기간 동안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하위펀드는 대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거래상대방 신용위험에 노출되며 거래 원금 전체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스왑계약: 스왑은 시장위험, 유동성위험, 구조화위험, 과세위험 및 거래당사자의 금융건전성 및 신용도와 관련한 위험을 포함한 거래당사자의 불이행 위험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왑들은 다양한 형태의 투자와 시장요인들에 대한 익스포저를 포함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협상되고 구조화될 수 있습니다. 그 구조에 따라 스왑은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 장기 또는 단기 금리, 외화 가치, 저당담보부증권, 기업차입금리, 증권가격, 증권 바스켓, 또는 인플레이션율과 같은 기타 요소들에 대한 하위펀드의 익스포저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으며, 하위펀드 포트폴리오의 전반적인 변동성을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스왑계약들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다양한 명칭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만일 하위집합투자업자가 다른 형식이 하위펀드의 투자목적 및 투자방침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하위펀드는 특정 형식으로 스왑 계약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스왑의 성과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별 주식 가치, 특정 금리, 통화 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지급금을 결정하는 기타 요인들의 변동입니다. 만일 스왑이 하위펀드의 납입을 요청하는 경우 하위펀드는 지급기일에 해당 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현금가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경우, 스왑 계약의 가치도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하위펀드의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술한 위험요소는 본 펀드 주식 투자에 따르는 모든 위험을 설명한 것은 아니며, 투자자들은 본 펀드에 대한 투자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이 투자설명서 및 하위펀드 보충본(들) 전문을 읽고, 자신의 법률, 조세, 금융 자문인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나. 특수위험

각 하위펀드에 적용되는 특수위험은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 주 1) 환매금지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에도 투자대상 자산이 장외파생상품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중도매각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주 2)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라. 집합투자기구 위험 프로파일

각 하위펀드의 국내에서의 투자위험 등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10.31 현재)

하위펀드		위험등급 산정기준	회계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연환산 표준편차 (%)	투자위험 등급
(1)	피델리티 인핸스드 리저브 펀드 (Fidelity Enhanced Reserve Fund)	투자대상자산	-	4

- 주1)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과 위험등급은 오로지 참고 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서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외 증권에 투자하는 해외투자펀드에 수반될 수 있는 환율 변동 위험은 위험등급 산정시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주2) 상기 투자위험등급은 원칙적으로 하위펀드 단위로 산정합니다. 다만, 하위펀드 전체의 위험등급 수준을 대표하기에 적합한 클래스(이하 '대표클래스')가 있는 경우 동 클래스에 적용되는 투자위험등급 체계와 위험등급(변동성 기준인 경우, 수익률 변동성 및 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하위펀드에 복수의 클래스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하나 이상의 클래스가 설정된 지 3년이 경과한 경우 변동성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위험등급/변동성이 가장 높은 클래스를 대표클래스로 하여 상기 투자위험등급 관련 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채택한 위험등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성 기준 위험등급분류 (설정 후 3년 경과 펀드)

등급	변동성 (연환산 표준편차)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5% 초과
2등급 (높은 위험)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25% 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5% 이하
4등급 (보통 위험)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10% 이하
5등급 (낮은 위험)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5% 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0.5% 이하

- 주1)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측정하여 위험 등급을 점검하고 변경합니다. 단,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특수하거나 복잡한 수익구조의 펀드는 이를 감안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주2)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와 등급 기준표상의 표준편차 상한치를 비교하여 부여합니다.
- 주3) 매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며 투자위험등급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자산 기준 위험등급분류 (설정 후 3년 미경과 펀드)

등급	투자대상 자산 종류 및 위험도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후순위채권, 투기등급 채무증권(BB+등급 이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등급 해외 채무증권(BBB-등급 이상)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신흥국(Emerging Market)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국에서 발행하는 국공채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등급 채무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주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 주2)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채무증권에 적용되는 글로벌 신용등급체계의 경우 국내 채무증권에 적용되는 국내 신용등급체계보다 보수적입니다. 일부 국내 채무증권의 경우, 글로벌 신용등급체계에서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되지만 국내신용등급체계에서는 투자등급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신용등급체계에서 투기등급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의 경우, 신용등급체계뿐 아니라 발행주체 등을 고려하여 국내 신용등급체계에서 투기등급으로 분류되는 채무증권에 비해 투자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주3) 재간접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펀드의 투자대상 및 투자 전략을 고려하여 위험등급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주4)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동시에 2개 이상의 위험등급 분류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위험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주5) 위험등급은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대상시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여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일부 자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이 해당 위험 분류 기준에 단기적으로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도, 집합투자업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을 변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6) 위에 명시된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 자체 내부 위험등급 심의위원회(상품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위험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등급에 대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은 아닙니다.

-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간(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수익률의 변동성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등급이 부여됩니다. 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위험등급이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위험등급분류에 따른 위험등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국내에서의 매입 절차

국내에서의 매입절차는 제1부의 내용중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매입 절차

매입

일반사항

각 하위펀드 주식에 대한 매입 신청은 여하한 거래일에 할 수 있으며, 이사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매입청약계약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주식을 최초로 매입하는 경우, 우편, 팩시밀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인정하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마감시간 전까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매입청약계약을 제출한 후 (팩시밀리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 원본을 즉시 송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추가로 매입 청약하는 경우, 우편, 팩시밀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인정하는 기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거래마감시간까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매입청약계약(또는 이사들이 인정하는 기타 매입 관련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으며, (팩시밀리나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일반사무관리회사에 추가 매입청약계약 원본을 송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입청약계약 및 본 펀드가 요구하는 기타 모든 서류들(자금세탁방지절차와 관련된 서류 포함)이 제공되는 시점까지 환매대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사들이 달리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거래마감시간 이후 매입청약계약(또는 이사들이 인정하는 기타 매입 관련 서류들)을 수령한 경우, 매입 업무의 처리는 다음 거래일까지 보류되며, 그에 대한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위펀드의 평가시점(복수의 평가시점이 존재하는 경우, 최초 평가시점) 이후에는 매입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들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결제마감시간까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매입대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사들이 달리 결정하고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매입대금은 해당 클래스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사들이 단독 재량에 따라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순자산가치 산정 및/또는 매입이 중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의 매입신청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사들은 그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매입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청약대금 또는 그 잔액은 거래일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입신청인에게 반환되며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매입신청이 수락된 경우, 해당 거래일 이후 순자산가치가 산정됨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클래스 주식의 배정 및 발행 통지가 제공됩니다.

주식 매입을 청약하기 전에, 아일랜드 거주자가 아니거나 면제 아일랜드 주주(제2부의 내용중 '14. 나. 과세'항에 설명되어 있음)가 아닌 매입신청인은 매입청약계약에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주 등록 내역의 변경 및 지급 지시는 원본 서류 또는 전자적 지시가 제공되는 경우에만 실행됩니다.

매입가격

주식 발행 이력이 없는 클래스의 주식은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최초모집기간 중 최초모집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발행 이력이 있는 클래스의 주식은 해당 거래일과 관련된 평가일 현재의 주당 순자산가치에 세금 및 수수료(있는 경우)를 가산한 금액으로 최초 모집기간 이후에 매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결제마감시간까지 매입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사들이 해당 금액을 최소 허용금액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은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손실 또는 기타 비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단독 재량에 따라 투자자들로부터 매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수령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령하는 자산이 해당 하위펀드의 투자 목적과 방침에 따른 투자자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해당 자산을 보관회사에 예약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관회사는 기존 주주들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하여 매입대금 지급으로 인정할 해당 증권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며, 발행되는 주식 수는 그에 해당하는 현금에 대하여 발행되었을 수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작성된 매입 관련 자료를 수령함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필요한 수의 주식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배정할 것입니다. 이사들은 매입청약자가 해당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해당 자산을 유효하게 양도할 수 있는 시점까지 예비 투자자의 등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집합투자업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매입청약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관련된 모든 보관비용 및 기타 경비를 부담합니다.

최소매입금액

투자자는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된 최소매입금액(만일 있다면) 이상의 금액으로 최초 매입청약을 해야 합니다. 추가 매입은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된 최소 추가매입금액(만일 있다면) 이상의 금액으로 청약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재량에 따라 최소 최초매입금액 및 최소 추가매입금액(만일 있다면) 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하할 수 있습니다.

중지

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 및/또는 매입이 중지되는 경우 매입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판매 중지

해당 하위펀드의 규모로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시장 여건에 따라, 이사들이 해당 하위펀드에게 이익이 된다고 단독 재량으로 따라 판단하는 경우 본 펀드나 하위펀드의 신규 판매 및/또는 추가 판매를 중지하는 기간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명식 주식

주식은 기명식으로만 발행됩니다. 본 펀드는 1주의 1,000분의 1 한도의 단주나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기타 단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 매입 신청이 거절되지 않는 한, 적절하게 작성된 매입청약계약 체결본 수령시 주주명부 등재를 증명하는 소유권 확인서가 발행됩니다.

매입대금 산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하여 실제 주식 배정은 순자산가치 확정 후 이루어지나, 투자자들은 하위펀드 평가일로부터 해당 하위펀드 및 투자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됩니다.

매입수수료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매입수수료는 최대 5% 내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매입수수료는 이사들(또는 본 펀드가 위임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국내에서의 환매 절차

국내에서의 환매절차는 제1부의 내용중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환매 절차

환매

일반사항

주주는 환매신청서를 작성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여하한 거래일과 관련하여 주식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매신청은 우편 또는 팩시밀리(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인정하는 기타 전자적 수단)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사들이 단독 재량에 따라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순자산가치 산정 및/또는 환매가 중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단 제출된 환매신청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환매신청서는 늦어도 해당 거래마감시간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사들이 그 단독 재량으로 달리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마감시간 이후 환매신청서를 수령한 경우, 환매 업무의 처리는 다음 거래일까지 보류됩니다. 하위펀드의 평가시점(복수의 평가시점이 존재하는 경우, 최초 평가시점) 이후에는 환매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주주들은 환매하고자 하는 주식의 수 또는 금액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환매대금은 통상적으로 환매가 실행된 거래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어떠한 경우라도, 해당 거래마감시간 후 10영업일 내에) 명부상 주주의 은행계좌로 전신환 또는 기타 형식의 은행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환매대금은 제3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사들은 환매 중지 전에 주식을 환매한 자에 대한 지급을 해당 클래스의 환매 재개 시점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가 주주로부터 해당 주주가 아일랜드 거주자가 아니거나 세액 공제가 요구되는 면제 아일랜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하는 내용의 아일랜드 국세청이 정한 양식의 지위/거주성 신고서를 수령하지 않는 한, 본 펀드는 환매대금에 대하여 적용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보다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제2부의 내용중 '14. 나. 과세' 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환매금액 및 최소보유금액

일부 환매신청은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된 최소환매금액(만일 있다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환매 이후 해당 주주가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된 최소보유금액(만일 있다면)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습니다. 이사들은 재량에 따라 최소환매금액 및 최소보유금액(있는 경우) 요건을 적용하지 않거나 인할 수 있습니다. 여하한 주주가 일부 환매 후 해당 주식 클래스에 적용되는 최소보유금액(있는 경우)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환매를 신청한 경우, 이사들은 단독 재량에 따라 (a) 해당 환매신청을 주주가 보유한 해당 클래스 주식 전부에 관한 환매신청으로 처리하거나, (b) 일부 환매 신청을 거부하거나, (c) 일부 환매 신청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이 위 (a)호 또는 (b)호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사항은 (해당 거래일 전후에) 주주들에게 통지됩니다.

어느 주주의 보유분의 가치가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최소보유금액에 미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는 최소보유금액 요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환매가격

주식은 환매가 실행된 거래일과 관련된 평가일 현재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환매되며, 세금 및 수수료(있는 경우)가 부과됩니다.

모든 환매대금은 주주의 비용 부담으로 매입청약계약에 명시된 주주의 계좌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등록된 계좌로 전신환 송금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하위펀드 주식의 최초 매입시 요구되는 원본 서류 또는 기타 필요서류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환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환매대금은 제3자의 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주주들에게 환매신청 완료 확인서를 제공합니다.

이사들이 달리 결정하고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환매대금은 해당 클래스 통화로 지급됩니다.

환매대금은 통상 현금으로 지급되나,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현물(in specie 또는 in kind)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배분시 보관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매 신청이 하위펀드 순자산가치의 5%에 미치지 않는 경우 현물환매는 환매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환매 주주가 요구하는 경우 본 펀드는 환매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자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사들은 재량에 따라 매각비용을 주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순자산가치 결정에 사용된 평가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이용하여 환매 신청 투자자들에게 현물로 양도되거나 이전될 관련 증권에 부여되는 가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환매 신청 투자자들은 그들이 달리

지급받을 수 있었던 환매대금과 동일한 평가일 현재 가치를 가지는 증권을 수령하게 됩니다. 환매 신청 투자자는 해당 증권과 관련된 모든 보관비용 및 소유권 이전비용과 지속적 보관비용을 부담합니다. 지급일 현재, 현물로 환매되는 증권의 가치는 해당 평가일 및 평가일과 지급일 사이 기간 동안의 해당 증권의 가치를 상회하거나 하회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현물로 지급되는 증권에는 일반적으로 하위펀드의 보수와 비용이 부과됩니다. 현물로 환매되는 자산의 배분에 관해서는 보관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매수수료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환매수수료는 최대 3% 내에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는 이사들 또는 집합투자업자는 재량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환매 제한

여하한 거래일에 어느 하위펀드의 환매신청 합계가 해당 하위펀드 주식 총수의 10% 또는 해당 하위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이사들은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주식 환매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일의 환매신청은 안분 비례하여 감소되며, 본래의 환매 신청과 관련된 모든 주식이 환매될 때까지 마치 해당 환매 신청이 각 차기 거래일에 이루어진 것처럼 환매신청들이 처리됩니다. 이사들은 이러한 제한을 부과할 관련 거래일 전후 또는 거래일 중 언제라도 이러한 제한을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지

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 및/또는 환매가 중지되는 경우 환매신청은 처리되지 않습니다.

거래상 남용행위

본 펀드는 마켓타이밍(market timing)이나 이와 관련된 과도한 단기 거래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투자자의 주식 매입 신청이나 전환 신청을 거절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적절하거나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추가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조달 방지 요건

본 펀드의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조달 방지 책임의 일환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청인의 신원 및 매입자금의 출처에 관한 자세한 확인을 요구할 것입니다. 각 신청 건의 상황에 따라, 신청인이 아일랜드의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조달 방지 규정과 유사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거나 공인된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인 경우 상세한 확인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입청약계약의 원본이 집합투자업자에 제공되지 않고 아일랜드 중앙은행 및 관련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서류 및 확인이 해당 매입과 관련하여 완료되지 않는 한, 주주들은 주식 환매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해당 주주에게 환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청인의 신원 및 매입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확인을 위하여 요청된 정보의 제출을 지연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청 및 매입대금의 수취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각 주식 매입 신청인은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한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주식 매입신청을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각 주식 매입신청인은 해당 매입신청인이 제재 대상자 명단에 등재된 금지대상 국가, 지역, 개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는 진술을 포함하여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이사들이 요구하는 진술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식의 강제 환매

하위펀드들은 무기한 존속하며, 제한을 두지 않고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펀드는 어느 시리즈 또는 클래스의 주식을 전량 환매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 (a) 관련 하위펀드나 클래스의 주주들이 해당 하위펀드나 클래스 주식의 주주총회에서 또는 서면으로 이러한 환매에 관한 특별결의를 통과시키거나,
- (b) 이사들이 해당 하위펀드에 여하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또는 규제상의 변화로 인하여 환매가 적절하다고 여기거나,
- (c) 해당 하위펀드나 클래스의 순자산가치가 €50,000,000 또는 해당 하위펀드나 클래스 주식의 표시 통화의 상당 금액 미만이 되는 경우, 또는
- (d) 이사들이 기타 사유로 환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위의 각각의 경우, 주식은 해당 거래일의 주당 순자산가치에서 이사들이 재량에 따라 해당 하위펀드나 클래스 자산의 예상실현비용 총당금으로 수시로 결정하는 금원을 뺀 가격으로 환매됩니다.

보관회사가 사임 의사를 통지하고 이러한 통지일로부터 90일 내에 본 펀드 및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인정하는 후임 보관회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본 펀드는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인가 취소를 신청하고 모든 발행주식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주주들이 아일랜드 거주자 또는 미국인이 되거나, 해당 주주들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비거주자 지위를 확인하는 매입청약계약상 신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주들은 본 펀드에 이러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들이 아일랜드 거주자 또는 부적격자의 계산으로 또는 이들의 이익을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본 펀드에 이러한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주들이 매입청약계약에서 제공한 정보가 더 이상 정확하지 않게 된 경우, 주주들은 본 펀드에 해당 사실을 즉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 주주는 본 펀드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펀드가 어느 주주가 부적격자임을 알게 되는 경우, 본 펀드는 그 전적인 재량으로,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선의로 그리고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i) 해당 주주에게 본 펀드가 정한 기간 내에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하도록 지시하거나, (ii) 주주에 대한 통지일 또는 위 (i)호에 따른 처분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 현재 주당 순자산가치로 해당 주식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의거, 상기 내용에 위배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본 펀드에 이를 적절하게 신고하지 않은 자는 각 이사, 본 펀드, 집합투자업자, 하위집합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보관회사 및 다른 주주들(각각 “면책대상자”)에게 이러한 주식의 보유나 통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면책대상자에게 발생한 여하한 청구, 요구, 절차, 책임, 손해, 손실, 경비 및 비용을 보상하고 이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보상을 제공받는 면책대상자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비용은 상당액이 될 수 있으며, 면책대상자의 본 펀드 투자금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국내에서의 전환 절차

이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피델리티 인핸스드 리저브 펀드(Fidelity Enhanced Reserve Fund)

의 주주들은 동 하위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에 속한 다른 하위펀드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전환절차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전환 절차

전환. 어느 하위펀드 주식을 환매하고 다른 하위펀드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다른 하위펀드로 어느 하위펀드에서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거하여, 그리고 하위펀드 보충분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해당 주식의 거래가 글로벌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상황 하에서 일시적으로 중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들은 하위펀드에 대한 매입 청약에 적용되는 통상의 기준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어느 거래일에 어느 하위펀드에 속한 어느 클래스의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하위펀드에 속한 클래스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에 관해서는 하위펀드 보충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시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적정 총당금이 적용됩니다.

양도. 주식 양도는 일반적인 양식 또는 이사들이 수시로 승인하는 기타 양식을 이용하여 서면 양도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각 양도 신청서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의 명칭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하며, 양도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이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양도인이 해당 양도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수인의 신원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기타 증거가 첨부된 양도신청서가 본 펀드의 등록사무소 또는 이사들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기타 장소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이사들 또는 그 대리인은 주식 양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양도 신청 주주는 양수인의 명칭이 주주명부에 등재되는 때까지 해당 주식의 보유자로 간주됩니다. 기존 주주가 아닌 양수인이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이사들이 만족하는 정도로 매입청약계약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는 등록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최소매입금액 미만의 순자산가치를 갖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이사들은 전적인 재량에 따라 양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주식 보유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단체에 양도되는 주식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그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을 포함하여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의 양도 등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a) 양수희망자가 미국인이 아니라거나 해당 양도가 달리 미국 증권법률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만족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b) 해당 양도가 위법이 되거나, 본 펀드 또는 주주들에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규제·법률·금전적·세무상의 결과 또는 중대한 행정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사들이 판단하는 경우, (c) 양수인의 신원에 대한 만족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d) 해당 양도에 대한 주주의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수의 주식을 본 펀드가 환매하거나 소각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양수희망자는 상기와 관련하여 이사들이 요구하는 진술, 보장 또는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가 양수인과 관련하여 해당 양수인의 비거주자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매입청약계약상의 신고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본 펀드는 양수인에게 지급되는 금액, 또는 주식의 매도, 양도, 소각, 상환, 환매수 또는 기타 지급과 관련하여 제2부의 내용중 '14. 나. 과세' 항에 명시된 관련 세금을 공제하도록 요구됩니다.

양도 등록은 이사들이 수시로 결정하는 시기에 이사들이 수시로 결정하는 기간 동안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 등록은 1년 중 30일 이상 중지될 수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본 펀드는 각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 및 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하는 업무를 집합투자업자에 위탁하였으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재위탁하였습니다.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는 해당 하위펀드의 자산 가치를 확인하고 해당 금액에서 하위펀드의 부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 하위펀드의 부채에는 하위펀드 자산에서 지급되어야 하고/하거나 발생하고/하거나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보수와 비용이 포함됩니다.

하위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를 해당 평가일을 기준으로 해당 하위펀드와 관련하여 발행되었거나 발행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의 총 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각 하위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아래 기술하는 평가 조항과 같이 매 평가일에 대하여 해당 하위펀드의 기준통화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됩니다.

어느 하위펀드의 주식이 여러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클래스에 귀속되는 하위펀드 순자산가치는 해당 평가시점에 해당 클래스로 발행된 주식 수를 확정하고 해당 클래스에 대한 보수와 클래스 비용을 배분하고 해당 클래스의 배당, 매입, 환매, 이익 및 비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정하고 그에 따라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결정합니다. 각 클래스와 관련된 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클래스의 순자산가치를 해당 클래스의 발행 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각 클래스에 귀속되는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 및 각 클래스와 관련된 주당 순자산가치의 클래스 통화가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인 경우 해당 클래스의 통화로 표시됩니다.

하위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는 각 평가일의 평가시점에 산정됩니다.

인덱스트래킹 하위펀드의 경우, 정규시장에서 또는 정규시장 규정에 따라 호가, 상장 또는 거래되는 각 자산은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관련 인덱스의 평가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인덱스의 조건에 따라, 해당 자산은 (a) 매수 호가 증가(closing bid price), (b) 최종 매수 호가(last bid price), (c) 최종 거래가(last traded price), (d) 매수도 중간 호가 증가(closing mid-market price), (e) 최근 매수도 중간 호가 (latest mid-market price), 또는 (f) 매 평가일의 해당 정규시장 영업 종료 시점의 해당 정규시장의 공식 증가(official closing price)로 평가됩니다.

액티브 운용 하위펀드의 경우, 정규시장에서 또는 정규시장의 규정에 따라 호가, 상장 또는 거래되는 각 자산은 (a) 매수 호가 증가(closing bid price), (b) 최종 매수 호가(last bid price), (c) 최종 거래가(last traded price), (d) 매수도 중간 호가 증가(closing mid-market price), (e) 최근 매수도 중간 호가(latest mid-market price), 또는 (f) 매 평가일의 정규시장 영업 종료 시점의 정규시장의 공식 증가(official closing price)로 평가되며, 해당 평가 방식을 하위펀드 보충본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이러한 시장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된 가격평가서비스나 브로커들과 같은 외부업체들로부터 가격 정보를 입수합니다.

투자자산이 한 개 이상의 정규시장에서 또는 그러한 정규시장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호가, 상장 또는 거래되는 경우, 해당 정규시장은 (a) 투자자산의 주요 시장, 또는 (b) 해당 증권의 가치에 대하여 가장 공정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시장 중 하나가 됩니다. 정규시장에서 호가, 상장 또는 거래되는 어느 투자자산의 가격을 해당 시점에 이용할 수 없거나 대표성이 없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산은 집합투자업자가 선임하고 보관회사가 평가 목적으로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추정된 실현가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정규시장에서 호가, 상장 또는 거래되고 있으나 할증 또는 할인되어 장외 취득 또는 거래되는 투자자산은 평가일 현재의 할증 또는 할인 수준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만일 이사들이나 그 대리인들 또는 보관회사가 (a) 매수 호가 증가(closing bid price), (b) 최종 매수 호가(last bid price), (c) 최종 거래가(last traded price), (d) 매수도 중간 호가 증

가(closing mid-market price), (e) 최근 매수도 중간 호가(latest mid-market price), 또는 (f) 공식 종가(official closing price)로 합리적으로 판단한 가격이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사들이나 그 대리인들 또는 보관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정규시장에서 또는 정규시장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호가, 상장 또는 거래되지 않는 투자자산의 가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협의 하에 집합투자업자가,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선임하고 보관회사가 평가 목적으로 승인한 역량있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추정된 실현가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보관회사와 협의하여)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현금 보유액이나 예금은 경우에 따라 발생이자와 함께 액면가로 평가됩니다.

정규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장내거래선물, 인덱스선물 및 기타 금융선물계약 포함)은 정규시장에서 평가시점에 정규시장에 의해 결정된 결제가격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결제가격을 제시(quote)하는 것이 정규시장 관행에 부합하지 않거나 여하한 사유로 결제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파생상품은 집합투자업자나 집합투자업자가 선임하고 보관회사가 평가 목적으로 승인한 역량있는 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추정된 실현가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장외파생상품은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협의 하에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선임하고 보관회사가 평가 목적으로 승인한 역량있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추정된 실현가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선물환계약은 제약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장호가를 참고하여 평가하거나, 이러한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장외파생상품 관련 조항에 따라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증서는 매 평가일에 유사한 만기, 금액 및 신용위험을 가진 양도성예금증서의 최신 매도가격을 참조하여 평가하거나, 최신 매도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최신 매수호가를 참조하여 평가하거나, 혹은 매수호가를 이용할 수 없거나 해당 양도성예금증서의 가치로 대표성이 없다고 집합투자업자가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선임하고 보관회사가 평가 목적으로 승인한 역량 있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추정된 실현가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채무부증권과 환어음은 평가일의 해당 시장 영업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유사한 만기, 금액 및 신용위험을 가진 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여 평가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나 주식은 집합투자기구가 공시한 최신 주당/좌당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이나 주식이 정규시장에서 또는 정규시장의 규정에 따라 호가, 상장 또는 거래되는 경우, 이러한 수익권이나 주식은 정규시장에서 또는 정규시장의 규정에 따라 호가, 상장 또는 거래되는 자산의 평가에 관한 위와 같은 시장 규칙에 따라 평가됩니다. 이러한 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수익권이나 주식은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협의 하에 집합투자업자가,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선임하고 보관회사가 평가 목적으로 승인한 역량있는 개인, 회사 또는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추정된 실현가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와 합의된 공정가치 프로세스 방침(fair value process policy)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를 대신하여 행위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보관회사의 승인을 받아 (a) 통화, 시장성, 거래비용 및 /또는 관련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기타 고려사항 측면에서 공정가치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상장 투자자산의 가치를 조정하거나, (b) 특정 자산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고 평가 방법을 명확하게 문서화할 수 있는 경우, 보관회사가 승인한 다른 가치평가 방법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모든 외화 표시 자산과 부채는 시장환율을 적용하여 하위펀드의 기준통화로 변환됩니다. 이러한 환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추정한 실현가능가치로 환율이 정해집니다.

각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 및 각 하위펀드에 속한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자신이 정한 자동 가격결정 서비스(automatic pricing service)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기, 과실 또는 고의적 불이행이 없는 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가격서비스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순자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하여 본 펀드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하위집합투자업자 또는 기타 브로커, 시장조성자 또는 기타 중개기관인 관계인을 포함한 관계인이 제공한 가격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당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거나 실행 가능하지 않는 경우, (사기, 과실 또는 고의적 불이행이 없는 한)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하위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대리인들이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순자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하여 본 펀드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상 해당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본 펀드나 그 대리인들에 의하여 특정 가격 서비스, 브로커, 시장조성자 또는 기타 중개기관을 이용하도록 지시받은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러한 가격 서비스, 브로커, 시장조성자 또는 기타 중개기관에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 또는 각 하위펀드에 속한 주식의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인해 본 펀드나 투자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하한 하위펀드와 관련된 주당 순자산가치의 결정이 이하 “일시적 거래 중지” 항목에 기재된 상황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중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당 순자산가치는 웹사이트에 공시되어야 합니다.

일시적 거래 중지. 집합투자업자는 보관회사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하위펀드 주식의 발행, 평가, 매도, 매수, 환매 또는 전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a) 당시 본 펀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의 상당 부분이 호가, 상장 또는 거래되고 있는 정규시장이 일반 공휴일 이외의 날에 휴장하거나, 해당 정규시장에서의 거래가 제한 또는 중지되는 기간,
- (b) 정치, 군사, 경제 또는 자금 관련 사유나 이사들의 통제, 책임 및 능력을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하여 본 펀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의 처분 또는 평가가 정상적으로 또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서는 이행이나 완료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사들이 판단한 기간,
- (c) 당시 본 펀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통신수단의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당시 본 펀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의 가치를 신속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이사들이 판단한 기간,
- (d) 본 펀드가 환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송금할 수 없거나 당시 본 펀드를 구성하는 투자자산의 처분 또는 이와 관련한 자금 송금이나 지급이 정상 가격 또는 정상 환율로 실행될 수 없다고 이사들이 판단한 기간,
- (e) 불리한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본 펀드 또는 잔존 주주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사들이 판단한 기간, 및
- (f) 이사들이 거래를 중지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간.

본 펀드는 거래 중지 통지를 등록사무소에 게시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수시로 결정하는 기타 매체를 통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아일랜드 중앙은행과 주주들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매입신청이나

환매신청이 거래중지가 해제되기 전에 철회되지 않는 한 거래중지 이후 수령한 매입, 전환 및 환매 신청은 거래중지가 해제된 이후의 첫 번째 거래일에 처리됩니다. 거래중지 기간이 가능한 한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합리적인 모든 조치가 취해집니다.

가격 조정 정책(Swing Pricing). 하위펀드로 유입되거나 하위펀드에서 유출되는 대량 거래들은 대량 자금 유·출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하위집합투자업자가 기초 투자자산을 거래하여야 하는 경우 거래 비용과 기타 비용을 투자자의 하위펀드 주식에 대한 매수 가격이나 매도 가격에 완전하게 반영할 수 없어 하위펀드의 자산의 “희석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기존 주주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래비용과 기타 비용의 영향이 중대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정규 가치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하위펀드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거래일에,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는 해당 하위펀드의 일일 순거래를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자산을 처분이나 매입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간주되는 비용을 반영하도록 상황 조정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사들은 예상희석비용(기초 거래 스프레드, 수수료 및 기타 거래 비용 등) 및 해당 하위펀드 규모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이사들은 하위펀드의 기존 주주들과 예비 주주들의 이익을 고려할 것입니다. 순 거래 합계로 주식 수의 증가를 초래할 경우 상황 조정이 이루어지며, 순 거래 합계가 주식 수의 감소를 초래할 경우 하향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정후 순자산가치는 해당 일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순자산가치의 조정 여부에 관한 결정은 거래일의 순거래 활동을 토대로 결정되므로, 하위펀드의 순거래 활동과 역방향으로 거래하는 주주들은 하위펀드 다른 주주들의 비용으로 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 및 단기 실적은 이러한 조정 방법으로 인하여 더 큰 변동성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 1)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날(예 : 공휴일)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 2) 국내의 경우 각 하위펀드 주식의 순자산가치는 국내판매대행회사의 영업장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됩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대한 정보는 상기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주 1) 투자자께서는 법 제76조제4항에서 정한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국내판매대행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국내판매대행회사로부터 교부받아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 주주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주 1) 국내에서 부과되는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제1부 내용 중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각 하위펀드에 적용되는 글로벌 판매 수수료와 관련하여서는 하위펀드 보충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매수수료 및/또는 매입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이사들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주 1)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1] 하위펀드 보충본 및 [붙임 2]

하위펀드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위펀드 보충본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하위펀드와 관련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보수와 비용은 일시불(one single fee)로 지급합니다. 이를 총보수·비용 비율(“TER”)이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사, 감사, 법률 자문인, 일반사무관리회사, 보관회사 및 기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수 및 비용과 클래스 헷지 비용을 포함하여, 관련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본 펀드의 모든 운영비용을 TER에 따라 지급되도록 할 책임을 집니다. 집합투자업자는 관련 하위펀드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연간 보수를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는 기타 모든 운영비용들이 지급된 이후 TER에 따른 잔여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른 당사자가 관련 하위펀드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주시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TER에는 하위집합투자업자, 보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비서역 및 모든 하위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관계법규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또는 하위집합투자업자는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에 투자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보수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TER에는 임시 비용, 거래비용과 관련 비용들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용들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관련 부과금 및 수수료, 원천징수세, 본 펀드의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차입이자 및 해당 조건의 협상, 이행 또는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은행 수수료, 하위펀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중개기관들이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및 (하위펀드 또는 본 펀드와 관련한 중요 소송과 같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하위펀드 자산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임시적이거나 예외적인 비용을 포함하여, 본 펀드의 투자에 대한 거래비용, 인지세 또는 기타 조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TER은 각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로부터 매일 산정되고 발생되며, 최소한 매 분기마다 후급 조건으로 지급됩니다. (TER을 적용하지 않는 하위펀드를 제외하고) 각 하위펀드의 TER은 하위펀드 보충본에서 제공됩니다. 펀드 운영과 관련하여 하위펀드의 비용이 상기 TER을 초과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자산으로 부족분을 보상합니다.

TER을 사용하지 않는 하위펀드가 지급해야 할 보수 및 비용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은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됩니다.

세금 및 수수료

매입 신청이나 환매 신청과 관련한 하위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에 있어서, 이사들은 순매입이나 순환매가 있는 거래일에 거래 비용을 총당하고 관련 하위펀드 기초자산들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희석방지 부과금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마련되도록 세금 및 수수료를 가감하여 주당 순자산가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및 수수료는 포트폴리오의 자산의 매입이나 매각과 관련한 실제 경비를 구성하며, 하위펀드를 위해 유보됩니다. 이사들은 이러한 비용을 언제든지 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립 비용

본 펀드와 최초 하위펀드의 설립 및 구성에 관련된 모든 비용(중요한 계약의 협상 및 작성과 관련한 비용, 글로벌 투자설명서 및 관련 마케팅 자료의 작성 및 인쇄 비용, 및 전문가 자문료 및 비용을 포함)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하였습니다.

이 후, 신규 하위펀드 설립 비용(중요한 계약의 협상 및 작성과 관련한 비용, 하위펀드 보충본 및 관련 마케팅 자료의 작성 및 인쇄 비용, 및 전문가 자문료 및 비용을 포함)을 부담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하위펀드 보충본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정관에 의거, 이사들은 해당 클래스 주식에 대해 최소 허용기준(*de minimis*)을 전제로 배당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트래킹 하위펀드는 해당 하위펀드의 투자자산과 관련한 순이익(배당소득, 증권대여소득 및 이자소득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 포함)(통칭하여 “순이익”)으로부터 배당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운용 하위펀드는 (i) 순이익 및 자본, 또는 (ii) 순이익으로부터 배당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특정 하위펀드의 배당정책은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 하위펀드는 배당금누적 클래스와 배당 클래스 중 하나, 또는 이 둘 모두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하위펀드의 배당금누적 클래스의 경우 이사들은 그에 귀속되는 모든 순이익을 누적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클래스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배당 클래스의 경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사들은 매년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일자(“기준일”)에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해 연도에 대한 순이익 또는 자본으로부터 배당을 선언합니다. 자본으로부터 배당금이 지급되는 경우,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하위펀드가 수취한 총소득 금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비용이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금 지급에 자본금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사들이 그 재량으로 배당 클래스 주식에 대해 이러한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그 단독 재량으로 본 펀드가 한 개 이상의 하위펀드를 위하여 배당 클래스 주식에 대해 균등화(*equalisation*) 방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발행일이 다르더라도 각 배당 클래스의 모든 주식에 대해 동일한 금액이 배당되도록 본 펀드에 대한 균등화 계좌가 유지됩니다. 발행일 현재까지 (만일 발생한 경우) 발생하였으나 미분배된 이익을 반영하는 배당 클래스 주식의 매입 발행 가격 일부에 해당하는 합계액은 균등화 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주식이 발행된 기간과 동일한 관련 기간에 주주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초 배당금과 함께 관련 하위펀드 주주들에게 상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각 배당 클래스 주식의 환매가격도 해당 배당 클래스 주식이 환매되는 거래일까지 관련 하위펀드의 발생 이익과 관련한 균등화 지급을 포함합니다.

주주가 배당이 선언된 본 펀드에 배당금을 재투자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배당금은 주주에게 현금으로 자동 지급됩니다. 배당금은 해당 클래스의 주주들의 기록상 계좌로 지급됩니다. 배당 선언일로부터 6년 이내에 지급 청구되지 않는 주식 배당금은 몰수되어 해당 하위펀드에 귀속됩니다. 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여하한 하위펀드나 클래스의 배당 방침은 경우에 따라 당해 하위펀드나 클래스 주주들에 대한 합리적인 통지로 이사들이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당 방침은 최신 글로벌 투자설명서 및/또는 하위펀드 보충본에 공개됩니다.

나. 과세

(1) 아일랜드에서의 과세

아래 내용은 주식의 매입, 소유 및 처분에 관한 아일랜드 과세 결과를 간단히 요약한 것입니다. 아래 기술한

내용이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아일랜드 세무 고려사항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오로지 (증권 딜러들이 아닌) 주식을 전적으로 실질 소유하는 자들의 상황하고만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 내용은 이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유효한 아일랜드 세법과 아일랜드 국세청의 관행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따라서 장래 변경되거나 변경 사항이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펀드의 주식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은 주식 매입, 소유 및 처분에 관한 아일랜드나 다른 과세 결과에 대하여 각자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에 대한 과세

본 펀드는 본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가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라는 것에 기하여 본 펀드는 아일랜드 세무 처리 목적상 “투자기구(investment undertaking)”이므로 그 소득과 이득에 대하여 아일랜드 세금이 면제됩니다.

이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비면제 아일랜드 거주 수익자들이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그리고 기타 특정 상황에서), 본 펀드는 아일랜드 국세청에 아일랜드 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및 “통상적인 거주자” 용어에 대한 설명은 본 요약 내용의 말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아일랜드 주주들에 대한 과세

아일랜드 세무 처리 목적상 주주가 아일랜드에서 거주(혹은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본 펀드가 매입 청약계약 서에서 정하는 해당 주주의 비거주 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본 펀드는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아일랜드 세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는 아일랜드에서 거주(또는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투자자들을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중개업자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최대로 아는 한 투자자들이 아일랜드에서 거주(또는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개업자”에 대한 설명은 아래 기술 내용의 끝 부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펀드가 신고서를 제출받지 않은 경우 본 펀드는 해당 주주가 비면제 아일랜드 거주 수익자(이하 참고)인 것으로 보고 당해 주주 주식에 대하여 아일랜드 세금을 공제하게 됩니다. 만일 본 펀드가 주주의 신고서가 정확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본 펀드가 아일랜드 세금을 차감하게 됩니다. 주주가 회사이고 아일랜드 지점을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한 그리고 다른 특정의 제한된 상황이 아니라면 주주는 일반적으로 아일랜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주주가 아일랜드 거주자가 되면 본 펀드에 반드시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일랜드 거주자가 아닌 주주들은 주식에 대하여 다른 아일랜드 조세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주주가 아일랜드 지점이나 대리점을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회사인 경우 주주에게 주식에 대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득에 대하여 아일랜드 법인세가 부과됩니다(자진 신고 납세 제도).

면제 아일랜드 주주들에 대한 과세

아일랜드 세무 목적상 주주가 아일랜드 거주자(또는 통상적 거주자)이고 아일랜드 조세통합법(“TCA”) 제 739(D)(6)항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의 면제 지위를 확인하는 매입청약계약서에 명시된 신고서가 본 펀드에 제출되는 경우 본 펀드는 당해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아일랜드 세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TCA 제739(D)(6)항 항목들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연기금 (TCA 제774조, 제784조 또는 제785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2. 생명보험업 영위 회사 (TCA 제706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3. 투자기구(investment undertakings) (TCA 제739B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4. 투자유한파트너십(TCA 제739J조 의미)
5. 특별투자기구(special investment scheme) (TCA 제737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6. 비인가 단위신탁기구(unauthorized unit trust schemes) (TCA 제731(5)(a)항 적용)
7. 자선단체(TCA 제739D(6)(f)(i)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8. 적격 관리회사들(qualifying managing companies(TCA 제704(1)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9. 특정 회사들(specified companies) (TCA 제734(1)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10. 적격 펀드 및 저축 관리회사들 (TCA 제739D(6)(h)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11. 퇴직연금계좌(Personal Retirement Savings Account, PRSA) 관리회사들 (TCA 제739D(6)(i)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12. 아일랜드 신용조합 (1997년 신용조합법(Credit Union Act 1997) 제2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13. 국가자산관리청(The National Asset Management Agency)
14. 국가재정관리청(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 또는 재무장관(Minister for Finance)이 유일한 실질소유자로 있거나 국가재정관리청을 통하여 행하는 아일랜드의 (2014년 국가재정관리청법(개정본)(National Treasury Management Agency (Amendment) Act 2014) 제37조 의미 내에서의) 펀드투자기구(Fund Investment Vehicle),
15. 적격 회사들 (TCA 제110조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
16. 본 펀드로 하여금 아일랜드 세금을 차감하거나 신고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건 또는 아일랜드 국세청의 명시적인 양해에 따른 것이건 간에) 본 펀드 주식 보유를 허용받은 아일랜드 기타 면세 지위를 주장하는 다른 아일랜드 거주자

면세 지위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거주 주주들은 자진 신고 납부 제도에 따라 주식에 대하여 납부되어야 하는 아일랜드 세금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주주에 대한 신고서가 본 펀드에 제출되지 않으면 본 펀드는 주주를 비면제 아일랜드 거주 주주(이하 참고)로 보고 동 주주 주식에 대하여 아일랜드 세금을 차감합니다. 주주가 아일랜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회사이고 특정의 제한된 상황에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주주는 이러한 아일랜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아일랜드 주주들에 대한 과세

주주가 아일랜드 세무 목적상 아일랜드 거주자 또는 통상적 거주자이고 “면제” 주주(위 내용 참고)가 아닌 경우 본 펀드는 이익배당, 환매와 양도시 그리고 나아가 “8년” 사유 해당시 아일랜드 세금을 차감합니다.

본 펀드에 의한 이익분배

본 펀드가 비면제 아일랜드 거주 주주에게 이익분배를 실행하는 경우 본 펀드는 분배금에 대하여 아일랜드 세금을 차감합니다. 차감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가 회사이고 25% 세율 적용을 위한 적절한 신고를 한 경우, 이익분배금의 25%,
2. 기타의 경우, 이익분배금의 41%.

본 펀드는 차감한 세액을 아일랜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환매나 양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아일랜드 조세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주주가 이익분배금을 사업 수입(trading receipt)으로 하는 회사인 경우 총분배금(차감되는 아일랜드 세금 포함)에서 주식 취득 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자진 신고 납부 제도상 과세 소득을 구성하며 주주는 차감되는 세금을 자신의 법인세 납세 의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주식의 환매 및 양도

본 펀드가 비면제 아일랜드 거주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본 펀드는 동 주주에 대한 환매대금으로부터 아일랜드 세금을 차감합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이러한 아일랜드 거주 주주가 (매각 등의 방식으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본 펀드는 양도에 대하여 아일랜드 세금을 신고합니다. 차감 또는 신고 대상 아일랜드 세액은 환매 또는 양도 대상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발생한 이득(만일 존재하는 경우)을 참고하여 산정되며,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가 25% 세율 적용을 위한 적절한 신고를 한 회사인 경우 이득의 25% 세율,
2. 기타의 경우, 이득의 41%.

본 펀드는 이와 같이 차감한 세금을 아일랜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주식 양도시에는 아일랜드 조세 채무 납부에 총당하기 위하여 본 펀드는 주주가 보유한 다른 주식을 처분하거나(appropriate) 소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납기 도래한 추가 아일랜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주는 환매나 양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아일랜드 조세 채무를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주주가 이익분배금을 사업 수입(trading receipt)으로 하는 회사인 경우 총분배금(차감되는 아일랜드 세금 포함)에서 주식 취득 비용을 차감한 금액은 자진 신고 납부 제도상 과세 소득을 구성하며 주주는 차감되는 세금을 자신의 법인세 납세 의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식이 유로화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주주는 (자진 신고 납세 제도에 따라) 주식의 환매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에 대하여 아일랜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8년 사유

비면제 아일랜드 거주 주주가 주식 취득일로부터 8년 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아일랜드 세무 목적상 주주는 취득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때에 (그리고 이후 8년 경과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와 같은 의제 처분과 관련하여 8년 기간 동안에 주식 가치가 증가하였다면 본 펀드는 이를 아일랜드 과세관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아일랜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주가 25% 세율 적용을 위한 적절한 신고를 한 회사인 경우 가치 증가분의 25%
2. 기타의 경우, 가치 증가분의 41%.

본 펀드는 위 세금을 아일랜드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아일랜드 조세 채무 납부에 총당하기 위하여 본 펀드는 주주가 보유한 다른 주식을 처분하거나(appropriate) 소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면제 아일랜드 거주 주주가 해당 하위펀드 주식의 (가치 기준) 1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 본 펀드는 의제 처분에 대하여 아일랜드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택을 하기 위

해서는 본 펀드는 반드시:

1. 매년 아일랜드 국세청에 위 10% 요건이 충족됨을 확인하고 아일랜드 국세청에 비면제 아일랜드 거주 주주들에 대한 상세 정보(주식 가치와 아일랜드 세금 납부 번호)를 제공하여야 하고,
2. 본 펀드가 이러한 면제를 주장하기로 선택하였음을 비면제 아일랜드 거주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본 펀드가 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비면제 아일랜드 거주 주주들은 반드시 자진 신고 납세 제도에 따라 아일랜드 국세청에 8년(그리고 추후 8년)에 대하여 본 펀드가 달리 지급하였어야 하는 아일랜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년 기간에 걸친 주식 가치 증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아일랜드 세금은 해당 주식에 대하여 달리 납부 될 수 있는 향후 아일랜드 조세에서 비례하여 상계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주식의 최종 처분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지분 교환

주주가 본 펀드의 다른 주식에 대하여 혹은 본 펀드의 다른 하위펀드 주식에 대하여 독립당사자간 거래 기준으로 주식을 교환하고 주주가 아무런 지급도 받지 않는 경우 본 펀드는 이러한 교환에 대하여 아일랜드 세금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아일랜드 인지세

주식 발행, 양도나 환매에 대하여 아일랜드 인지세(또는 다른 아일랜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주주가 본 펀드로부터 자산을 현물로 분배받는 경우 아일랜드 인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증여세 및 상속세

아일랜드 소재 자산의 증여나 상속에 대하여 혹은 증여나 상속을 하는 자가 아일랜드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또는 거주 또는 통상 거주하고 있거나 증여나 상속을 받는 자가 아일랜드 거주자이거나 통상 거주자인 경우 아일랜드 자본취득세(세율 33%)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아일랜드 기업이 발행한 것이므로 주식은 아일랜드 소재 자산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각호의 경우 주식의 증여나 상속시 아일랜드 상속세나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a) 주식이 상속일이나 증여일 그리고 '평가일'(아일랜드 자본취득세 목적상 정의됨) 양쪽 일자에 증여나 상속 대상이고,
- (b) 증여나 상속을 하는 자가 처분일 현재 아일랜드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통상 거주자가 아니며,
- (c) 증여나 상속을 받는 자가 증여나 상속일 현재 아일랜드에서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거 통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은 미국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으로 알려진 조항들을 포함합니다. FATCA 목적은 비미국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미국 세금 회피에 대한 안전장치로서 미국 납세자들이 보유한 미국 외 해외 소재 자산들을 파악하고 적절히 신고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일랜드는 FATCA와 관

련하여 미합중국과 보통 '모델1'협약으로 알려진 유형인 정부간 협약("IGA")를 체결하였습니다. 아일랜드는 또한 IGA 조항을 아일랜드에서 법제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본 펀드는 IGA 조항에 따라 FATCA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면제를 받지 않는 한, 본 펀드는 FATCA 목적상 '신고대상 금융기관'으로 미국 국세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FATCA 목적상 미국인, 비참여금융기관들 또는 특정 미국인이 지배하는 수동적 비금융외국기업인 주주들과 관련하여 아일랜드 국세청에 정보를 신고하도록 요구됩니다. FATCA 목적상 등록 의무나 FATCA 목적상 정보 신고 의무에 대한 면제는 오로지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본 펀드가 아일랜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정보는 IGA에 따라 미국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약, 정부간협정이나 정보교환제도에 의거 아일랜드 국세청이 이 정보를 다른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 펀드는 FATCA 의무를 준수하는 한 미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FATCA 원천징수세 부과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펀드가 FATCA 등록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미국 국세청이 본 펀드를 FATCA 목적상 '비참여금융기관'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만 본 펀드가 지급받는 미국 원천지급에 대하여만 FATCA 원천징수세가 적용됩니다.

OECD 공통보고기준(OECD Common Reporting Standard)

OECD가 개발한 "공통보고기준"으로 알려진 자동 정보 공유 제도가 아일랜드에 적용됩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본 펀드는 주주들의 신원, 거주지 및 납세식별번호, 주식에 대하여 주주들이 수령한 소득 금액, 판매대금이나 환매대금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주주들과 관련된 정보를 아일랜드 국세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정보는 아일랜드 국세청이 다른 EU 회원국이나 OECD 공통보고기준을 실행하는 국가의 과세관청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OECD 공통보고기준은 지침 2003/48/EC에 따른 저축소득에 대한 기존의 유럽 정보 보고 제도(통상 EU 예금 지침(EU Savings Directive) 으로 알려져 있음)를 대체합니다.

용어의 의미

회사의 경우 "거주(Residence)"의 의미

아일랜드에서 중앙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는 그 설립지와 상관없이 아일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아일랜드와 다른 국가 간의 이중조세방지협약상 아일랜드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회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일랜드에서 중앙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회사는 아일랜드의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아일랜드에서 중앙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2015년 1월 1일 전에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회사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일랜드 거주자입니다.

1. 회사(또는 그 관계사)가 아일랜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회사를 EU 회원국이나 아일랜드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한 국가 거주자들이 최종 지배하거나 회사(또는 그 관계사)가 EU나 조세협약 체결국의 공인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인 경우, 또는
2. 회사가 아일랜드와 다른 국가 간의 이중과세방지협약상 아일랜드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끝으로, 아일랜드에서 2015년 1월 1일 전에 설립된 회사가 만일 (i) 아일랜드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유효한 국가(“관련 국가”)에서 관리, 통제되고 이러한 관리와 통제가 만일 아일랜드에서 수행되었더라면 회사를 아일랜드 거주자로 보기에 충분한 경우, (ii) 회사가 관련 국가에서 설립되었다면 그 국가 법률에 따라 관련 국가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을 경우, 그리고 (iii) 회사가 어느 국가 법률에 의하여 과세 목적상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아일랜드 거주자로 보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 ‘거주(Residence)’의 의미

만일 개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역년에 아일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1. 어느 역년 중 아일랜드에서 183일 이상 체재한 경우, 혹은
2. 해당 연도 아일랜드 체재일수와 전년도 아일랜드 체재일수를 합산하여 아일랜드에서 280일을 체재한 경우. 어느 역년도에 개인이 아일랜드에서 체재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이는 “2년” 기준 적용시 감안하지 않습니다.

만일 개인이 하루 동안 언제라도 아일랜드에서 직접 체류한 경우 해당 하루 동안 아일랜드에서 체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의 경우 “통상 거주(Ordinarily Residence)”의 의미

‘통상 거주’(‘거주’과 구별)라는 용어는 어느 인의 정상적인 생활 패턴과 관련되며 일정한 정도의 연속성을 가지고 어느 장소에서 거주하는 것을 뜻합니다. 연속하여 3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거주한 개인은 4과세연도 개시 당시로부터 통상 거주자가 됩니다. 아일랜드에서 통상 거주한 개인은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3년째 연속 과세연도 말에 통상 거주 지위가 중지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아일랜드에서 거주하고 통상 거주한 개인이 2018년에 아일랜드를 떠나는 경우 2021년도 과세연도 말까지 아일랜드에서 통상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중개업자(Intermediary)의 의미

중개업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의미합니다:

1. 그 사업이 다른 자를 대신하여 아일랜드에서 거주하는 규제를 받은 투자기구로부터의 지급금 수령으로 구성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2. 다른 자들을 위하여 투자기구에 대한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

자신의 과세 상황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예비 투자자께서는 본 펀드 주식의 매입, 소유 및 처분에 관한 아일랜드와 기타 국가의 과세 결과에 대하여 각자의 독립적인 세무자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법과 관련 세무당국의 적용이나 해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시기에 적용되는 과세 취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 국내에서의 과세

국내의 경우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주식의 환매 및 하위 집합투자기구 주식간의 전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의 관련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소득의 15.4%)가 과세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내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경우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나 평가로 인한 손익을 투자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제외하는 반면 외국집합투자기구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외국집합투자기구의 경

우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투자분에 한하여 국내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집합투자기구보다 투자자에게 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주 1) 참고로,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펀드의 Promoter는 자본시장법상 발기인과 유사한 역할을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발기인은 아니므로 투자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감독이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주 1) 본 펀드의 경우 국내 투자회사가 선임하는 감독이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없어 본 항목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므로 투자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본 펀드의 이사들은 아래에 열거된 바와 같습니다.

Catherine Fitzsimons
David Greco
Nick King
Denise Kinsella
Éimhín Ní Mhuircheartaigh

이사들은 본 펀드의 업무를 운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들은 (a) 본 펀드의 기록과 계정자료 및 펀드 회계자료의 작성과 유지, 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 등록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한 본 펀드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와 (b) 본 펀드 자산의 취득 및 처분과 본 펀드의 판매 및 마케팅을 포함한 투자운용 업무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또한, 이사들은 본 펀드 자산의 안전보관업무를 담당할 보관회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정관은 이사들의 정년과 순서에 따른 퇴직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관은 본 펀드와의 거래나 계약 또는 본 펀드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래나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해관계의 성격과 범위를 다른 이사들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본 펀드는 이사들의 과실, 불이행, 직무태만 또는 배임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펀드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면책권을 이사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이사들의 주소는 본 펀드의 등록 사무소입니다.

다. 감독이사의 보수지급기준

해당사항 없음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본 펀드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주 1)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유럽연합에서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 및 UCITS 규정과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UCITS 규정 중에 재무보고서에 적용되는 특정 요건에 따라 작성될 것이며, 이사들은 본 펀드의 독립 감사인으로 PricewaterhouseCoopers를 선임하였습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매매회전율에 대하여는 ‘[붙임 2] 하위펀드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 요약재무정보에서 요구되는 계정과목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아일랜드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정보를 나타내기 부적절하여 매매회전율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기재를 생략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는 이하 ‘나. 대차대조표’ 및 ‘다. 손익계산서’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에 관한 사항은 ‘[붙임 2] 하위펀드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은 ‘[붙임 2] 하위펀드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에 관한 사항은 ‘[붙임 2] 하위펀드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회사의 출자금에 관한 사항

가.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할 출자지분의 총수	발행한 출자지분의 총수	미발행 출자지분의 총수
해당사항 없음	추가형 투자회사이므로 계속 변동	해당사항 없음

나. 발행한 출자지분의 내용

본 펀드의 수권주식수는 무액면 주식 500,000,000,002주로 무액면 발기인 주식 2주와 무액면 주식 500,000,000,000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으로 본 펀드의 수권주식 전부를 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사항은 '[붙임 2] 하위펀드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사항은 '[붙임 2] 하위펀드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현황에 관한 사항은 '[붙임 2] 하위펀드 재무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합리적인 분류기준(예 : 업종, 국가, 신용도, 만기 등)에 따른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구성현황을 나타낸 것이므로 투자가는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외국집합투자업자

회사명	FIL Fund Management (Ireland) Limited (“집합투자업자”)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George’s Quay House, 43 Townsend Street, Dublin 2, Ireland 전화 : 353 1 614 1200웹사이트: www.fidelityinternational.com

집합투자업자는 2000년 10월 11일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유한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수권주식은 주당 1유로의 보통주식 10,000,00주이며 기납입 주식은 주당 1유로의 보통주식 701,000주입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일반사무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융서비스업자로 설립되었으며, UCITS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중앙은행으로부터 운용회사(management company)로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FIL Limited의 100% 자회사입니다. FIL Limited는 버뮤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상장 투자회사로서, FIL Limited의 임직원을 포함한 다수의 외국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으며,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승인을 전제로 다른 집합투자기구들의 운용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이사들은 Catherine Fitzsimons, David Greco, Nick King, Denise Kinsella, Éimhín Ní Mhuircheartaigh 및 Bronwyn Wright 입니다.

집합투자업자의 비서역은 FIL Administration Limited 입니다.

나. 주요 업무

운용계약에 의거 집합투자업자는 운용계약에 따라 본 펀드의 투자 운용 및 일반사무관리를 담당하며, 이사들의 총괄 감독과 통제를 전제로 이러한 기능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본 펀드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i) 정직하게 행하고, 적절한 주의와 숙련을 갖추고 공정하게 활동을 수행해야 하고, (ii) 본 펀드, 하위펀드 및 주주들의 최대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며, (iii) 적절한 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원과 절차를 효과적으로 갖추고 활용해야 하며, (iv) 활동 수행에 적용되는 모든 규제 요건들을 준수하고, (v) 모든 주주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합니다.

운용계약은 90일 사전 서면 통지(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더 짧은 기한의 통지)로써 당사자 일방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위반 행위가 있거나 도산의 경우 (혹은 이와 유사한 사안 발생시)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운용계약은 본 펀드가 집합투자업자, 그 직원, 피위임인 및 대리인에게 운용계약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들의 사기, 과실 또는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들 자신들에게 제기되거나 부담해야 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송, 절차, 청구, 손해, 비용, 요구 및 경비에 대해 배상하고, 이들이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UCITS 규정을 준수하는 보수방침, 절차 및 관행(통칭하여 “보수방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수방침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위험관리와 부합하여 이를 활성화하며, 하위펀드의 위험 프로파일에서 벗어난 위험을 감수하지 않도록 방지해줍니다. 보수방침은 집합투자업자와 본 펀드의 사업 전략, 목적, 가치 및 이익과 부합하며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수방침은 집합투자업자나 본 펀드의 위험 프로파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직원들에게 적용되며, 어떠한 개인도 자신의 보수를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수방침에 관한 상세 내용(보수와 혜택 산정방식, 보수와 혜택 지급 담당자, 그리고 존재하는 경우 보수위원회의 구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아니함)은 <https://www.fil.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요청 시 사본을 무료로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EUR)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17.6.30.	2018.6.30.	계정과목	2017.6.30.	2018.6.30.
유동자산	10,577,187	16,508,981	영업이익	12,030,379	24,698,110
부채	(2,587,128)	(3,819,690)	영업비용	(11,990,917)	(23,853,123)
순자산	7,990,059	12,689,291	당기 이익	1,431	699,232

라. 운용자산 규모

운용자산	EUR11,958,000,000 (2018.9.30일 현재)
------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외국하위집합투자업자

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하위집합투자업자”)
주소 및 연락처	Level 2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Admiralty, Hong Kong
회사 연혁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홍콩증권선물위원회(SFC)로부터 자산운용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다양한 범주의 집합투자기구들의 투자운용회사 또는 투자자문회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용자산	HKD377,000,000,000 (2018.9.30일 현재)

주 1) (본 펀드가 아닌) 집합투자업자는 하위집합투자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보수를 지불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하위집합투자업자에게 당사자 간에 수시로 상호 합의로 결정되는 비용을 지불합니다.

주 2) 본 펀드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책임은 특정 업무를 하위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였다는 사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는 판매계약에 따라 FIL Distributors (주소: Pembroke Hall, 42 Crow Lane, Pembroke HM19, Bermuda)를 총괄판매회사로 선임하였습니다. FIL Distributors는 버뮤다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총괄 판매회사는 주식 판매를 위해 하위 판매회사들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판매계약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에서 당사자 일방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의 90일전 서면통지에 의해 해지되지 않는 한 그리고 그 때까지 총괄판매회사의 선임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판매계약에 의거, 총괄판매회사는 판매계약과 관련하여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에게 발생하거나 부담하는 소송, 절차, 청구, 비용, 요구, 청구, 고발, 손해, 손실 또는 비용에 대하여 이러한 손실이 총괄판매회사 또는 그 이사, 임원, 직원, 피위임인, 고용인 또는 대리인 측의 악의, 과실, 사기, 고의적 불이행 또는 부주의한 의무 준수의 경시나 지정한 자의 약정에 따른 의무나 직무에 대한 부주의한 의무 준수의 경시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집합투자업자나 여하한 주주들에 대해 또는 달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급대리인. 일부 EEA 회원국 현지 법령에 따라 (i) 집합투자업자는 대리금융기관(facilities agents)/지급대행대리인/대리인/하위 판매회사/주결제은행(correspondent bank)(이하 "지급대리인"으로 통칭, 이러한 선임은 법적 혹은 규제적 요건이 아님에도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선임하고, (ii) 지급대리인이 매입대금과 환매대금 또는 배당금의 지급 계좌를 유지하도록 요구됩니다. 지급대리인을 통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거나 환매대금 및 배당금을 수취할 것을 선택하거나 현지 규정에 따라 그러할 의무가 있는 주주는 (a) 해당 하위펀드 계산으로 보관회사로 이체되기 전 지급대리인이 보유하는 하위펀드 투자를 위한 매입대금과 (b) (본 펀드의 이체 후) 해당 주주에게 지급되기 전 지급대리인이 보유하는 환매대금 및 배당금에 대해 지급대리인의 신용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본 펀드가 선임한 지급대리인에 대한 보수와 비용은 정상적인 상거래 요율에 따라 지급되며 지급대리인을 선임한 본 펀드가 부담합니다. 지급대리인이 선임된 해당 하위펀드의 모든 주주들은 본 펀드 또는 본 펀드를 위하여 선임된 지급대리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서역. 본 펀드의 비서역은 FIL Fund Management (Ireland) Limited입니다.

감사. 본 펀드의 감사인 역할은 PricewaterhouseCoopers(주소: One Spencer Dock, North Wall Quay, Dublin 1, Ireland)가 수행합니다.

법률자문인. 본 펀드에 대한 법률자문은 Matheson(주소: 70 Sir John Rogerson's Quay, Dublin 2, Ireland)이 제공합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회사명	Brown Brothers Harriman Trustee Services (Ireland) Limited
주소 및 연락처	30 Herbert Street, Dublin 2, Ireland

본 펀드는 본 펀드의 모든 투자자산, 현금 및 기타 자산의 안전보관을 위한 보관회사로 행하고 하위펀드 주식의 발행 및 환매 그리고 순자산가치와 주당 순자산가치의 산정을 하며 수령하는 모든 수익과 투자가 정관 및 UCITS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Brown Brothers Harriman Trustee Services (Ireland) Limited를 본 펀드의 보관회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보관회사는 매 사업연도마다 본 펀드의 운영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여 주주들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관회사는 아일랜드 소재 집합투자기구들과 국제기관들 및 아일랜드 기관들에 대한 보관 및 예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일랜드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공개 유한회사입니다.

보관계약에 의거, 보관회사는 UCITS 규정에 따라 본 펀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본 펀드를 대신하여 그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회수합니다. 또한, 보관회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업무들을 수행하며

이 업무들은 위탁할 수 없습니다:

- (i) UCITS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주식의 매각, 발행, 환매수, 환매 및 소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ii) UCITS 규정 및 정관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산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iii)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사항이 UCITS 규정, 정관 또는 보관계약 조건과 상충되지 않는 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v) 본 펀드 자산이나 하위펀드의 자산이 관련된 거래에서 통상적인 기한 내에 해당 하위펀드로의 지급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v) UCITS 규정 및 정관에 따라 본 펀드 또는 하위펀드의 수익이 총당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vi) 매 회계연도마다 본 펀드의 운용실태를 조사하여 주주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 (vii) 본 펀드의 현금흐름이 UCITS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감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보관계약에 따라 보관회사는 (i) 자신의 보관(또는 UCITS 규정에 따라 보관회사의 안전보관 업무가 위탁된 제3자의 보관)하에 있는 금융상품의 손실이 자신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외부 사건의 결과로 발생함으로써 모든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그리고 (ii) 보관회사가 UCITS 규정에 따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무에 대한 태만이나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기타 모든 손실에 대하여 본 펀드와 주주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보관계약에서는 전술한 내용을 전제로 또한 전술한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보관회사가 보관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의무에 대한 태만이나 고의적 불이행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펀드는 보관계약 조건 또는 관계법률에 따라 보관회사가 본 펀드 및/또는 주주들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보관계약이나 관계법률에 정의되어 있는) 손실이 아닌 본 펀드의 보관회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손실에 대하여 보관회사에게 보상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보관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90 일전 서면통지를 통해 해지되거나 또는 다음 사유 발생시 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즉시 해지되기 전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i) 타방 당사자에 대하여 관재인 또는 심사관이 선임되거나 또는 규제당국이나 관할법원의 지시 등에 따라 혹은 기타에 의한 것인지 불문하고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ii) 타방 당사자가 보관계약 조항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비위반 당사자가 위반당사자에 대하여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송부한 이후 30일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iii) 보관회사가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집합투자기구의 보관회사로서의 역할을 중단하는 경우. 본 펀드는 추가적으로 보관계약에 규정된 추가 사유들을 이유로 보관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보관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회사에 대한 해지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펀드와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수락할 대체 보관회사가 선임되지 않을 경우, 본 펀드는 모든 주주에게 정관에 따라 참여주식의 환매 승인을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주식 환매 직후 본 펀드의 해산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절차의 완료 시, 본 펀드는 UCITS 규정에 따라 본 펀드의 인가 취소를 아일랜드 중앙은행에 신청합니다.

보관회사는 오로지 UCITS 규정에 의거해서만 보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i) UCITS 규정의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업무 위탁을 하지 않으며, (ii) 보관회사가 업무위탁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iii) 보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받은 제3자의 선정 및 선임을 하는데 있어 모든 적절한 주의의무(due, skill, care and diligence)를 다하고,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제3 자 업무수탁자와 업무수탁자의 업무 수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있어서 계속 모든 적절한 주의의무(due, skill, care and diligence)를 다하여야 합니다. UCITS 규정에 따라 보관회사로부터 보관 업무를 위탁 받은 제3자는 보관회사가 직접 위탁한 것과 같은 동일한 요건에 따라 위탁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UCITS

규정에 따른 보관회사의 책임은 보관 업무 위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관회사는 UCITS 규정에 따른 자신의 안전보관 업무를 글로벌 하위 보관회사인 **Brown Brothers Harriman & Co.**에 위임하였으며, 이를 통해 **BBH&Co.**의 글로벌 하위보관회사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관회사는 이와 같은 위탁에 따른 이해상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UCITS 규정에 의거, 보관회사는, UCITS 규정에 따라 보관업무를 잠재적 이해상충 위험이 있는 다른 업무와 분리시키고, 잠재적 이해상충 위험을 식별, 관리, 감시하고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본 펀드와 본 펀드를 대리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자신과 (i) 본 펀드, (ii) 주주들, 및/또는 (iii) 집합투자업자간에 이해상충을 유발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됩니다. 보관회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상충 위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항에서 "이해상충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주는 보관회사, 보관회사의 의무사항, 보관회사가 위탁한 보관 업무, 보관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수탁자와 하위업무수탁자 명단, 및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 위험에 관한 최신 정보는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요청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회사명	Brown Brothers Harriman Fund Administration Services (Ireland) Limited
주소 및 연락처	30 Herbert Street, Dublin 2, Ireland

집합투자업자는 **Brown Brothers Harriman Fund Administration Services (Ireland) Limited**를 본 펀드의 일상적인 일반사무관리 업무의 수행과 각 하위펀드 및 주식 순자산가치의 산정을 포함하여 본 펀드에 대한 펀드회계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본 펀드에 대한 명의개서, 등록 및 관련 지원 서비스의 제공을 담당할 본 펀드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아일랜드에서 1995년 3월 29일 등록번호 제231236 호로 아일랜드 유한책임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일반사무관리계약은 집합투자업자나 일반사무관리회사 중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90 일전 서면통지를 통해 해지되거나 또는 일반사무관리계약 조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해지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일반사무관리계약은 다음 사유 발생시 언제든지 당사자 일방이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즉시 해지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 당사자 일방이 청산을 개시하거나(불이행 당사자가 아닌 당사자가 이전에 서면으로 승인한 조건에 따라 구조조정이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 청산은 제외), 관재인 또는 심사관이 선임되거나 또는 규제당국이나 관할법원의 지시 등 어떤 것에 의한 것이든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ii) 타방 당사자가 계약 조항을 위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가 송부된 이후 연속하여 30일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iii) 당사자 일방이 해당 법률에 따라 현재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 또는 (iv) 보관회사가 본 펀드의 보관회사로서의 역할을 중단하는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직무수행에 있어 고의적 부정행위, 악의, 사기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손실 또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법률적 판단 오류나 착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직무수행에 있어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그 의무나 직무 이행에 있어서의 작위, 부작위, 착오 또는 지연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본 펀드 또는 여하한 주주나 이전 주주 또는 기타 자에게 발생한 손실,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와 직무 수행에 있어 고의적 부정행위, 불성실, 사기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사무관리계약상 의무와 직무 이행으로부터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되는 여하한 작위, 부작위, 착오나 지연 또는 여하한 청구, 요구, 소송으로부터 발생하는 여하한 모든 손실, 청구, 손해, 채무나 또는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포함)에 대해 본 펀드 자산으로부터 일반사무관리회사에게 배상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5부 기타 주주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주주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주주총회의 구성

연례 주주총회. 아일랜드 법에 따라, 이사들은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합산하여 본 펀드의 의결권부 주식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1인 이상의 주주, 또는 본 펀드 감사인들은 직전 연도에 또는 늦어도 직전 연도 말 1개월 이전까지 본 펀드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펀드로 하여금 특정 연도에 연례 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본 펀드는 요청 받은 대로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발기인 주식 보유 주주는 본 펀드의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지나, 본 펀드의 해산 시 자본금 원본을 반환 받는 것을 제외하고 본 펀드의 이익이나 자산에 참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최소 최초 자본금 요건 준수를 위하여, 본 펀드는 주당 1유로의 무액면 발기인 주식 2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주는 본 펀드의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당 클래스별로 적용되는 다양한 보수, 수수료 및 비용 조건을 전제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발기인 주식 이외의 주식)과 관련된 하위 펀드의 이익과 자산에 대하여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본 펀드는 수시로 보통결의를 통해 증자하고, 주식 전체나 일부를 더 적은 수로 병합하거나 더 많은 수의 주식으로 분할하거나 혹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인수되거나 인수 약정이 되지 않은 주식을 소각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는 수시로 특별결의를 통해 법에서 허용하는 방식으로 감자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각 주주는 거수표결에서 의결권 1표를, 그리고 투표에서 보유 주식 1주당 1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3) 주주총회 결의사항

상기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반대매수청구권

해당사항 없음

나. 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중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추가 정보. 아래 문서 사본들은 거래일 정상 영업시간 중 하위집합투자업자의 등록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a) 정관, 및
- (b) UCITS 규정 및 아일랜드 UCITS 규정.

또한, 정관 및 연차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는 일반사무관리회사로부터 무료로 입수할 수 있으며, 거래일의 정상 영업시간 중 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 1) 국내의 경우 장부, 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청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외국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회계감사인 및 기타 관련회사는 그들의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본 펀드의 정관에 따라, 투자자에게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마. 재판관할

투자자와 국내판매대행회사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투자자와 국내판매대행회사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바. 기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배포 및 판매 제한. 일부 국가에서는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배포와 주식의 모집이나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설명서는 주식의 모집이나 매입 권유가 적법하지 않거나 모집이나 매입 권유를 하는 자가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청약권유자를 상대로 이러한 모집이나 매입 권유를 하는 것이 위법한 국가에서의 모집이나 매입 권유 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이러한 모집이나 매입 권유로 간주될 수도 없습니다. 글로벌 투자설명서를 입수하였거나 글로벌 투자설명서에 따라 주식을 청약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국가에서의 모든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식은 글로벌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정보에 근거하여서만 제공됩니다. 딜러, 중개인 또는 기타 다른 자가 제공하는 추가 정보나 진술은 무시되어야 하며 이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글로벌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정보 이외에 주식 모집과 관련한 정보 또는 진술을 제공하도록 수권된 자는 아무도 없으며, 그와 같은 정보 또는 진술을 제공 받았을 경우, 본 펀드, 이사들 또는 하위집합투자업자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글로벌 투자설명서상의 기술된 내용은 글로벌 투자설명서 작성일 현재 아일랜드에서 유효한 법률과 관행에 따르며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교부나 주식의 발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글로벌 투자설명서 작성일 이후 본 펀드와 관련한 사안에 변동 사항이 없음을 의미하거나 이러한 진술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글로벌 투자설명서는 다른 언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번역본은 영문본과 동일한 의미의 동일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영문본과 번역본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본 글로벌 투자설명서가 우선합니다. 다만 주식이 판매되고,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내용을 근거로 소송이 진행되는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다른 언어로 작성된 글로벌 투자설명서가 요구되는 경우, 그러한 소송의 진행에 근거가 되는 언어의 글로벌 투자설명서가 우선합니다. 글로벌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아일랜드 법률에 따라 규율 됩니다.

2. 집합투자기구, 하위펀드 및 주식클래스의 해지에 관한 사항

해산. 아일랜드 법에 의거, 본 펀드가 해산할 경우, 미지급 채권의 상환과 본 펀드의 잔여 자산 분배를 처리

할 청산인이 선임됩니다. 청산인은 본 펀드의 자산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충만족시킨 후 잔여 자산을 주주들에게 분배합니다. 정관에는 먼저 각 하위펀드의 채무 변제 이후 각 하위펀드 주주들에 대한 자산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발기인 주식 보유자들에 대하여 당초 지급받은 명목금액을 분배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산 시 잔여자산의 현물분배가 이행되는 경우, 주주는 자신의 지분 귀속분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분배 받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보고서 및 재무제표. 하위펀드 보충본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하위펀드의 회계연도는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각 하위펀드는 연차보고서와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본 펀드의 최초 연차보고서와 재무제표는 2019년 1월 31일자까지 작성됩니다. 하위펀드 보충본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각 하위펀드의 미(未)감사 반기보고서는 7월 31일까지 작성됩니다. 각 하위펀드의 미감사 반기보고서는 해당 반기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시됩니다. 연차보고서와 반기보고서는 웹사이트상에서 게시되며 이메일 또는 기타 전자통신 수단을 통해 주주에게 발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과 예비 투자자들은 인쇄물 형태로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운용보고서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회사의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판매대행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국내판매대행회사 및 협회의 홈페이지 또는 국내판매대행회사의 영업장을 통해 공시하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제공합니다.

주 1) 국내의 경우 자산운용보고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해당사항 없음

(4) 기타장부 및 서류

기타장부 및 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중 '1.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정관. 주주들은 정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정관의 구속을 받으며, 정관 조항들에 대하여 통보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관 사본은 제5부의 내용중 '1.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항목에서 아래 '추가 정보' 부분에 설명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국내의 경우 투자자에 수시공시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집합투자업자, 각 하위집합투자업자 및 그 관계회사, 동 회사의 임원, 주요 주주(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발행주식수의 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말함) 또는 그러한 임원 및 주요 주주의 배우자(통칭, "이해관계인")는 펀드와 이해가 상충되지 않고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증권거래소에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정한 시가로) 이행되는 거래인 경우에만 자신을 위하여 펀드의 자산에 대하여 본 펀드와 거래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2부의 내용중 '8. 나. 투자제한' 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본 펀드는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자문을 받거나 운영되는 다른 UCI와 함께 본 펀드가 집합투자업자의 관계회사 및 관계인과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증권의 매매를 위한 주문을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본 펀드는 해당 거래를 행할 자격이 있는 다른 브로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과 그러한 다른 브로커가 청구하였을 수수료율로 거래를 행하도록 합리적으로 기대될 수 있습니다. 최적의 체결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본 펀드는 거래체결을 담당할 브로커와 딜러의 선정시 당해 브로커와 딜러가 판매한 주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고유재산 투자 관련 해당 국 규제를 준수합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가. 변호사의 법률검토의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의 일괄신고서 본문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외국집합투자기구 관련 법제도에 관한 사항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중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펀드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독립감사인인 PricewaterhouseCoopers가 본 펀드 및 전체 하위펀드들의 재무제표를 연간으로 검토합니다.

라. 과세처리와 환 관리에 관한 사항

(1) 과세처리

과세처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중 '14. 나. 과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의 관리

해외에서의 환의 관리: 투자자들은 자신들의 국적지, 거주지 또는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따라 본 펀드의 주식을 청약, 매입, 전환, 환매 또는 기타 처분하는 것과 관련한 가능한 과세 결과, 외환규제 또는 외환 요건에 대하여 스스로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국내에서의 환의 관리: 외국집합투자증권의 매입, 환매 및 전환과 관련된 환의 관리는 관련 법령 및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붙임 1] 하위펀드 보충본

피델리티 UCITS II ICAV

피델리티 인핸스드 리저브 펀드(Fidelity Enhanced Reserve Fund)

하위펀드는 액티브 운용 하위펀드입니다.

예비 투자자들은 본 하위펀드에 투자하기 전에 하위펀드 보충본 및 이 투자설명서 전체 내용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기재된 위험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하위펀드 보충본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투자자의 주식중개인, 은행담당자(bank manager), 변호사, 회계사 및/또는 금융자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펀드에 대한 투자가 투자 포트폴리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서는 안되며, 본 펀드에 대한 투자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부의 내용중 '15. 발기인·감독이사에 관한 사항'에 기재된 이사들은 하위펀드 보충본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이사들이 알고 있으며 또한 믿고 있는 한, 하위펀드 보충본에 포함된 정보는 사실과 부합하며 정보 반입(impor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들은 상기 내용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하위펀드 보충본에 달리 정의되지 않거나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하위펀드 보충본에 정의된 용어들은 이 투자설명서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집니다

주요 정보

기준통화 (Base Currency)	미국 달러화(USD)
영업일 (Business Day)	토요일, 일요일, 1월 1일, 성탄절, 성금요일 및/또는 이사들이 사전에 정하여 주주들에게 통지한 기타 날(들)을 제외한 날.
거래일 (Dealing Day)	각 영업일이 거래일.
거래마감시간 (Dealing Deadline)	해당 거래일 정오 12시(아일랜드 시간).
최초모집기간 (Initial Offer Period)	아래 "클래스"란 표에 기재된 각 주식 클래스의 모집 기간 또는 이사들이 정하는 해당 기간 이전 또는 이후 일자.
하위집합투자업자 (Investment Manager)	Level 2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Admiralty, Hong Kong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보수 (Fees)	각 클래스의 최대 TER은 아래 "클래스"란 표에 기재. 하위펀드의 설립 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부담. 이와 관련된 추가 정보는 "제2부의 내용중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아래에 기재.
최소매입금액 (Minimum subscription amount) 최소추가매입금액 (Minimum additional subscription amount) 최소보유금액 (Minimum holding amount) 최소환매금액 (Minimum redemption amount)	주식 클래스 (싱가포르 달러로 표시된 주식 클래스 제외) 클래스 A 최소매입금액: USD 2,500 최소추가매입금액: USD 1,500 최소보유금액: USD 2,500 최소환매금액: USD 1,500

결제마감시간 (Settlement Deadline)	해당 거래일의 익영업일.
평가 (Valuation)	주당 순자산가치는 정규시장에서 혹은 정규시장 규정에 따라 호가, 상장 또는 거래되는 자산에 대하여 매 평가일의 해당 정규시장에서 최근 매수도 중간 호가(mid-market price)을 이용하여 제2부의 내용중 '12. 가. 기준 가격의 산정 및 공시'에 따라 산정.
평가일 (Valuation Day)	각 영업일이 평가일이 됨. 거래일은 해당 평가일과 동일한 날짜라야 함.
평가시점 (Valuation Point)	각 평가일의 정오 12시(아일랜드 시간).

클래스

하위펀드의 주식들은 배당 방침과 통화 헷징 익스포저가 각기 다른 다양한 주식 클래스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및 비용 역시 각 클래스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식 클래스들이 국내에서 설정됩니다.

클래스 명칭	주식 클래스 통화	통화 헷징 클래스	배당방침	최대 TER %	최초 모집기간	최초 모집가격
A-ACC USD	USD	무	배당금 누적	0.60	해당 없음*	10.00 USD

* 본 주식 클래스의 최초모집기간은 종료되었으며, 본 주식 클래스의 주식들은 각 거래일에 주당 순자산가치로 발행됩니다.

투자 목적 및 투자방침

투자 목적

하위펀드는 전세계에서 발행된 채무증권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매력적인 수준의 위험이 조정된 총수익(이자수익(income) + 자본가치 상승)을 제공하는 것을 투자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방침

하위펀드의 투자 방침은 주로 전세계의 정부, 정부기관 또는 기업들이 발행하는 다양하고 폭넓은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 및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위펀드는 선진국 및 이머징마켓 국가에서 발행된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시장 부문이나 산업에만 주력하지 않으며, 투자는 금융서비스, 산업 및 기술 부문들을 포함한 각종 섹터들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채무증권의 정기 쿠폰 지급뿐만 아니라 자본가치 상승을 통해 얻는 총 수익의 관점에서 투자 기회들에 접근합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단위 위험당 최고 수준의 수익을 가져오거나 각 단위 수익별 위험을 최소화하여 매력적인 위험조정 수익률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위험 수준에 대하여, 하위집합투자업자는 가장 매력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채무증권을 발굴하고, 각 수준의 수익률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 채무증권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하여 단위 위험당 매력적인 총 수익을 가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투자 대상의 선택은 펀더멘탈 및 상대가치 신용 분석을 토대로 상향식(bottom-up) 증권 선정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위펀드의 투자자산은 주로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 및 단기금융상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증권과 상품들에는 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조건부자본증권(이하에 언급하는 기업합성증권 포함), 후순위 채권, 담성 채권(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되었으나 중국 위안화로 표시된 채권), 회사채 및 채권(notes)(자유로이 양도가능한 채권(notes) 및 자유로이 양도가능한 약속어음 포함)를 포함합니

다. 또한, 확정금리부증권 및 변동금리부증권과 투자적격등급, 하이일드 및 무등급 채무증권도 이에 포함될 것입니다.

또한, 하위펀드는 특화된 자산으로부터 원리금이 발생하는 자산유동화 증권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에는 저당(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 및 기타 종류의 채권 풀(예를 들면, 신용카드채무, 소비자 대출 상환액, 로열티와 같이 채무자(기업 또는 소비자)가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정부기관이 발행하거나 사모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패스-스루형(**pass-through**)(기초자산의 차주가 지급하는 금전이 증권 보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유형의 증권) 증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은 차주(들)이 지급하는 이자 또는 원금만을 담보로 하거나 이자와 원금의 조합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자산 또는 자산풀(**asset pool**)에 대한 비례적 실질 소유권을 표창하는 이슬람 채무증권인 수쿠크(**Sukuk**) 거래구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산에서 창출된 현금흐름과 관련한 수익은 수쿠크(**Sukuk**) 보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수쿠크가 일반적으로 자산에 기반(**asset-based**)하거나 자산을 담보(**asset-backed**)로 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나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이 수쿠크(**Sukuk**) 보유자에게 이전된다는 차이점 외에는 일반적인 채무증권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위펀드는 주식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 모두를 결합한, 고도로 구조화된 상품인 기업합성증권(예를 들면, 일반 채권의 특징을 가지나 전환되는 주식의 동향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업합성증권은 일반적으로 발행인들이 이자를 지급하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기업 발행인들은 자본 수준 개선, 가중평균자본비용 절감, 자금 조달처 다변화, 신용 등급 관리 등 각종 이유로 합성채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행 조건이 점차 표준화되고 있으나, 각 상품의 구체적인 특징(지급조건,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유사성 정도, 기간(**time frame**) 및 적용 이율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적격등급증권은 일반적으로 **Standard & Poor's**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Baa3** 등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받은 신용등급이 높은 증권이며(등급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가장 우수한 2개 신용 등급 중 낮은 등급 적용), 고수익(하이일드) 증권은 일반적으로 투자적격등급으로 평가되지 않는 투자등급이 중간 이하인 증권입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평균 신용등급을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나, 이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위투자업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의 평균 듀레이션(즉, 만기까지 잔여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유지하고자 하지만,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의 듀레이션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단기금융상품은 확정금리상품이나 변동금리상품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위펀드는 투자적격등급, 투자적격등급이하 또는 무등급으로 평가되는 변동금리채권, 사채 및 단기 국채·회사채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양도가능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허용된 투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위펀드는 전세계 정규시장에서 상장, 거래 또는 매매되는 증권에 투자할 것입니다.

덧붙여, 하위펀드는 하위펀드의 기타 투자자산들과 유사한 투자자산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에 순자산가치의 최대 **10%**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투자기구는 하위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계열사들이 운용하는 **UCITS**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 또는 투자 목적을 위해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부과하는 조건과 한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스왑
- 신용디폴트스왑(**CDS**)

- 선물계약(채권선물 및 금리선물), 및
- 선물환 계약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운용 목적 또는 투자 목적을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중 ‘9.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의 “파생금융상품 이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파생금융상품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하위펀드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익스포저의 듀레이션을 관리하거나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경우 간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활용합니다.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함으로써 하위펀드가 레버리지 될 수 있으나,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는 주요 목적은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함이며, 약정금 방식 (commitment approach)을 이용하여 산정되는 레버리지는 하위펀드 순자산가치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위펀드는 예금으로 현금을 보관할 수 있으며 또한 하위펀드는 수시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산에는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 재무성증권 및 단기국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권들은 정규시장에서 상장, 거래 또는 매매되는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받은 증권이어야 합니다. 수시로, 하위펀드는 일시적인 방어 목적으로 순자산가치의 100% 한도 내에서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 단기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 및/또는 단기금융상품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는 토탈리턴스왑, 환매계약 또는 증권대여에 대해서는 익스포저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제한

이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제한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투자 제한이 적용됩니다:

- 하위펀드 순자산가치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투자적격등급이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하위펀드 순자산가치의 50% 한도 내에서 담성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상기 설명 참조).
- 하위펀드 순자산가치의 20% 한도 내에서 (이 하위펀드 보충본의 부록에 기재된 방식으로)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 또는 QFII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역내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에 직접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위펀드 순자산가치의 최대 10%는 QFII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 합니다.

중국 투자

하위펀드는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및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에 상장된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국 투자에 관한 추가 정보는 이하 부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위험

하위펀드 투자에는 “낮은 등급/무등급 증권” 위험 및 “이머징마켓 위험” 등 제2부의 내용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기재된 위험을 포함한 상당한 위험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위험 정보가 모든 위험들을 모두 담고있지는 않으며, 예비 투자자들은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 및 하위펀드 보충본을 주의깊게 검토하고 전문 자문인들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파생금융상품 이용으로 인하여 하위펀드가 평균 이상의 위험 프로파일을 갖게 되거나 높은 변동성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생금융상품 이용에 수반되는 위험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제2부의 내용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서 “파생상품 위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성 채권 시장

하위펀드는 “담성” 채권(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행된 중국 위안화 표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담성” 채권시장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습니다. 일부 글로벌 채권(fixed income securities) 시장과 마찬가지로, “담성” 채권시장은 변동성 및 비유동성에 더욱 취약할 수 있으며, 채권 발행을 통하여 중국 위안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발행인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제약하는 규정이 신설되거나 관련 규제당국(들)이 중국 시장의 자유화

정책을 파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딤섬” 채권 시장의 운영 및 신규 발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하위펀드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특성

하위펀드의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투자 가치 증가를 달성하는 것을 투자 목적으로 설정하고,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하여 투자 운용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변동성과 위험이 수반하는 투자 전략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며 투자기간이 단기인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로 예상됩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는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를 동 하위펀드의 하위집합투자업자로 선임하였습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에 등록된 자산운용사입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운용계약은 일방 당사자에 의한 6개월 사전 서면 통지으로써 해지되지 않는 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투자운용계약은 일방 당사자의 도산시(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의 발생시) 또는 여하한 위반의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 등을 포함한 특정한 상황에서 사전 통지없이 즉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하위펀드의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하위집합투자업자의 선임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투자운용계약에는 하위집합투자업자 법적 책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하위집합투자업자의 과실, 고의적 불이행, 약의 또는 사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위펀드에 발생한 손실, 책임,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하위집합투자업자와 업무수탁자가 수시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계약상의 하위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직무 및 재량을 위탁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러한 선임은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요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입

최초모집기간 동안, 주식은 상기 표에 기재된 최초모집가격으로 모집 가능합니다. 최초모집기간 이후에는, 어느 거래일의 해당 평가일 현재의 주당 순자산가치에 세금 및 부과금(있는 경우)을 더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매 거래일에 ”제2부의 내용중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기재된 요건에 따라 거래마감시간까지 청약서를 작성하여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매입대금은 인출제한 없는 자금의 형태로 결제마감시간까지 해당 클래스의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환매

주주들은 세금 및 부과금에 대한 적절한 준비금 적립을 전제로, 거래일에 주당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는 거래마감시간까지 하위펀드 보충본 및 제2부의 내용중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따라 유효한 환매신청서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제는 일반적으로 거래일로부터 1 영업일 내에 이루어지나, 시장의 결제 일정에 따라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거래마감시간으로부터 10 영업일 이후에는 결제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사들이 달리 결정하여 일반사무관리회사와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매대금은 해당 클래스의 통화로 지급됩니다.

전환

이 투자설명서에 포함된 조건에도 불구하고, 주주들은 동 하위펀드의 주식을 본 펀드에 속한 다른 하위펀드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배당금 지급

배당 클래스와 관련하여, 이사들은 최소 허용금액(*de minimis threshold*)을 전제로 각 배당 클래스에 귀속되는 총소득으로부터의 배당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총소득으로부터의 분배는 순이익과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사들은 (a) 월 배당 클래스의 경우, 매월 첫째 영업일에 배당을 선언하여 매월 다섯째 영업일 또는 이사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영업일에 지급하고, (b) 분기 배당 클래스의 경우, 2월, 5월, 8월 및 11월 첫째 영업일에 배당을 선언하여 2월, 5월, 8월 및 11월 다섯째 영업일 또는 이사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타 영업일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주들은 이사들이 그들의 재량에 따라 어느 배당 클래스와 관련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록>
중국 투자

다음과 같은 용어의 정의가 적용됩니다.

추가 QFII 쿼터 (Additional QFII Quota)	적격외국기관투자자(QFII)인 하위집합투자업자에 부여될 수 있는 추가적인 피델리티 QFII 쿼터.
중국 증권예탁결제기관(CSDCC)	The China Securities Depository & Clearing Corporation Limited을 의미하며 그의 상하이지점, 선전지점 및/또는 향후 설립될 수 있는 기타 지점을 포함.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증권 규제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증권규제 당국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CIBM)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
중국거래소(Exchange)	SSE, SZSE 및 중국에서 운영되는 기타 증권거래소.
피델리티 QFII 쿼터 (Fidelity QFII Quota)	적격외국기관투자자인 하위집합투자업자에 부여된 중국 외국인투자쿼터 (추가 QFII 쿼터 포함)를 의미하며, 이는 수시로 변경, 수정 또는 갱신될 수 있음.
중국 투자규정 (Investment Regulations)	문맥상 요구되는 경우, QFII 프로그램,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 및 이에 따라 외국기관투자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관련 투자를 규율하는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의미하며, 수시로 변경되는 법률, 규정 및 규칙을 포함.
중국 중앙은행(PBOC)	각 경우에 따라, 중국의 중앙은행인 The People's Bank of China 및/또는 상하이 본점을 의미.
중화인민공화국 또는 중국 (PRC 또는 China)	중국(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대만 제외)을 의미하며, "중국의"란 이에 부합하는 의미로 해석됨.
적격외국기관투자자 또는 QFII (QFII)	중국 투자규정상의 적격외국기관투자자.
QFII 쿼터(QFII Quota)	중국 투자규정에 따라 적격외국기관투자자에 부여된 중국 외국인투자쿼터(추가 쿼터 포함)를 의미하며, 이는 수시로 변경, 수정 또는 갱신될 수 있음.
RMB 또는 위안화 (RMB 또는 Renminbi)	중국의 법정통화.
국가외환관리국(SAFE)	외환관리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는 중국 정부기관인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PRC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change).
중국증권체계(Securities System)	중국 증권예탁결제기관, 중국 중앙예탁결제기관(China Central Depository & Clearing Co., Ltd.), 상하이 결제소(Shanghai Clearing House) 및/또는 중국 내의 기타 정규 결제 및 예탁기관을 의미함.

**중국 하위예탁회사
(Sub-Depository)**

각 경우 및 문맥에 따라 (i) The Hong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Limited(QFII 관련)와 (ii) Standard Chartered Bank (China) Limited(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 관련).

상하이증권거래소(SSE)

상하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

선전증권거래소(SZSE)

선전증권거래소(Shenzhen Stock Exchange).

중국 투자규정

상기 “투자 방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위펀드는 QFII 프로그램과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을 직접 이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외국인 투자 채널을 통해 중국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채널을 규율하는 중국 투자규정이 적용되며, 반드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QFII 프로그램 관련 중국 투자규정

현행 중국 투자규정상, 해외 펀드매니저, 증권회사, 보험회사 및 기타 기관들은 특정 적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QFII 인가 신청을 하여 QFII 쿼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QFII 라이선스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로부터 승인받으며, QFII 쿼터는 각 경우에 따라 국가외환관리국(SAFE)에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FII 프로그램과 관련된 중국 투자규정에 따라, 상하이증권거래소 또는 선전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양도되고 있는 채권, 증권투자펀드 및 워런트와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의 고정수익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가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투자 범위가 몇 가지 제한사항에 의해 축소되었습니다. 첫째,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에 대한 적격외국기관투자자의 투자를 위해서는 중국 중앙은행에 대한 사전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와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수시로 자산배분에 대한 비공식적인 요건들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산업 투자 제한과 관련된 중국의 규칙이나 지침이 QFII들에게 수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QFII들은 외국인 투자에 개방된 시장 부문에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QFII는 보유자산과 관련하여 인가받은 중국의 보관은행을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위펀드의 피델리티 QFII 쿼터 이용과 관련하여, 중국 하위예탁회사를 선임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국 투자규정에 따라, 중국 하위예탁회사는 각 적격외국기관투자자 고객을 위하여 중국증권체계에 증권거래계좌, 증권결제계좌, 위안화계좌 및 외환계좌를 개설할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국가외환관리국(SAFE) 규정상, QFII 쿼터 신청 또는 승인된 날로부터 1년 내에 QFII가 QFII 쿼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미사용 QFII 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환매에 관한 중국 투자규정의 효력

하위펀드 보충본 작성일 현재, 국가외환관리국(SAFE) 규정에 따라 본국 송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QFII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금지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즉, QFII 쿼터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된 자본금은 본국으로 송금될 수 있으며, 어떠한 시간상의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규정 및/또는 QFII 프로그램 하의 본국 송금과 관련하여 국가외환관리국(SAFE)이 채택하는 접근 방식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FII 관련 위험

QFII 지위 및 QFII 쿼터

현재, 하위집합투자업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승인한 QFII 지위 및 피델리티 QFII 쿼터를 취득하였습니다. QFII 제도 하에서 이루어지는 하위펀드의 중국 내 투자는 우선적으로 피델리티 QFII 쿼터를 통하여 실행되고 보유됩니다. 다만, 중국 투자규정상, QFII 지위 및/또는 피델리티 QFII 쿼터는 중국 규제당국의 재량에 따라 특정 상황 하에서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의 QFII 지위 및/또는 피델리티 QFII 쿼터가 중지 또는 취소되는 경우, 하위펀드는 피델리티 QFII 쿼터상의 보유증권을 처분하여야 할 수 있고, 하위펀드 보충본에 따른 피델리티 QFII 쿼터를 통하여 중국 증권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는 하위펀드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덧붙여, 하위펀드는 피델리티 QFII 쿼터의 전속적인 이용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위집합투자업자의 결정에 따라 피델리티 QFII 쿼터가 하위펀드와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 할당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하위펀드가 하위펀드의 투자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피델리티 QFII 쿼터를 하위집합투자업자로부터 할당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아가, 중국 투자규정은 일반적으로 QFII 단계에서 적용되며, 단순히 하위펀드를 위해 수행된 투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하위펀드에 의해 이용되는 피델리티 QFII 쿼터 외에 다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피델리티 QFII 쿼터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한 중국 투자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하위펀드가 이용하는 피델리티 QFII 쿼터의 일부를 포함한 전체 피델리티 QFII 쿼터가 취소되거나 전체 피델리티 QFII 쿼터에 대하여 규제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A 주식에 대한 투자 제한과 관련된 규제는 일반적으로 QFII 단계에서 적용되며(아래에 상세히 설명됨), 이는 또한 피델리티 QFII 쿼터를 이용하는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펀드의 투자 실행 및/또는 피델리티 QFII 쿼터 자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델리티 QFII 쿼터를 이용하는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실적 및/또는 본국으로의 송금 상황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 QFII 쿼터는 중국 규제당국에 의하여 수시로 심사를 받게 되며, 특정 중국 투자규정을 위반한 경우 축소되거나 전부 소멸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투자규정상, QFII 쿼터가 부여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적격외국기관투자자가 QFII 쿼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국가외환관리국(SAFE)은 미사용 QFII 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펀드 및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피델리티 QFII 쿼터가 축소 또는 소멸된 경우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지 예측할 수 없으나, 이러한 상황은 하위펀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관

하위펀드를 위하여 피델리티 QFII 쿼터를 통해 매수하는 상장지수증권들은 QFII인 하위집합투자업자와 하위펀드의 공동 명의(또는 중국 투자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하위펀드를 칭하는 기타 계좌 명칭)로 개설된 증권거래계좌로 가산되는 것으로 중국 증권예탁결제기관(CSDCC)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본 펀드/하위집합투자업자는 중국법상 QFII인 하위집합투자업자가 증권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으며 하위펀드가 해당 증권에 대한 최종적인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자격이 있는 중국 법률사무소의 법률 의견서를 제공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국 투자규정상 계좌소유주인 QFII가 증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되므로, (비록 이러한 권리가 소유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QFII가 하위펀드를 위하여 증권을 매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 하위펀드(또는 본 펀드)의 자산이 하위펀드(또는 본 펀드) 명의로만 등록 및 보유되었을 경우만큼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델리티 QFII 퀴터가 피델리티 소속 회사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고려할 때, 피델리티의 채권자들이 상기 법률의견서 내용과 달리 하위펀드나 본 펀드의 자산이 피델리티에 귀속되는 것으로 잘못 상정할 수 있고 채권자들이 채무 상환 대신 하위펀드 또는 본 펀드 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 들 수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상장지수증권의 소유권은 예탁기관의 전자적인 장부상의 대체 기재 및/또는 관련 중국거래소와 관련된 등록부만 입증됩니다. 이러한 예탁기관들과 등록부 이용은 새롭게 시행되는 것으로 그 효율성, 정확성 및 보안 면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거래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증권예탁결제기관(CSDCC)은 하위펀드와 QFII인 하위집합투자업자의 공동 명의로 된 증권거래계좌와 관련하여 중국 증권회사들이 체결한 거래를 자동 결제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계좌와 관련된 중국 증권회사들이 내리는 모든 지시는 중국 하위예탁회사의 동의나 지시없이 수행됩니다.

중국 거래소별 중개인 이용

중국 투자규정상, QFII는 중국거래소 별로 최대 3개 까지 중국 증권회사나 중개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하위펀드를 대신하는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하위펀드 및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어느 한 거래소에서 복수의 중개인을 이용할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법률상 허용되는 한, 하위집합투자업자는 그 단독 재량으로 계열사를 통하여 일부 또는 모든 증권 거래를 체결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하위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요소들에 더하여 감지되는 집행의 우수성과 중개인들의 평판을 특히 중요하게 여길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중개인이 중국 시장에서 최선의 관행이 될 것으로 하위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집행 기준을 하위펀드에 제안하는 경우, 비록 최선의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해당 중개인(계열사가 있는 경우 포함)과 변함없이 거래들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위펀드가 거래를 체결한 가격과 해당 시기에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었던 다른 가격 간의 차이에 대하여 하위펀드에 설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중국거래소에 대한 정보 공개

관련 중국 투자규정에 따라, 중국거래소가 정상적인 거래 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발견한 경우, 거래소는 관련 QFII에게 신속하게 해당 증권거래 내역과 QFII의 관련 투자자들의 지분 보유 정보(하위펀드에 관한 정보 포함)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준비금

중국 투자규정상, 중국 하위예탁회사는 해당 회사가 보관 중인 모든 QFII들의 QFII 퀴터 합계의 일정 비율로 중국 증권예탁결제기관 상하이지점과 선전지점이 수시로 정하는 비율 금액으로 최소 청산준비금을 예탁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 증권예탁결제기관 상하이지점 및 선전지점이 정한 최소 청산준비금율은 각각 0.08%와 0.06%입니다.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 직접 진입시의 관련 위험

규제 위험

하위펀드의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 투자에도 규제 위험이 따릅니다.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 투자에 관한 규칙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소급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당국이 계좌

개설 또는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에서의 거래를 중지시키는 경우, 하위펀드가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며, 다른 거래 대안이 소진된 후에는 하위펀드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 투자규정상 쿼터 제한은 없으나, 하위펀드의 투자에 관한 정보(투자 기간 등)를 중국 중앙은행에 신고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된 정보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 역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와 관련하여, 중국 중앙은행이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하위펀드는 중국 중앙은행의 지시에 따르고 이에 따라 적절한 변경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가 상거래상 관점에서 하위펀드 및 주주들의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및 변동성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에서의 특정 채무증권의 낮은 거래량으로 인한 시장 변동성 및 잠재적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시장에서 거래되는 특정 채무증권의 가격이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장에 투자하는 하위펀드는 유동성 및 변동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채무증권 가격의 매입-매도 스프레드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해당 투자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하위펀드에 상당한 거래비용 및 실현비용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제 기관 및 절차

하위집합투자업자는 하위펀드를 대신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하위펀드를 위한 거래 및 결제 대리 서비스를 수행할 역내결제기관을 선임해야 합니다. 하위펀드가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위펀드는 결제절차 및 거래상대방의 불이행과 관련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와 거래를 체결한 거래상대방은 관련 증권의 인도나 대금 지급에 의하여 거래를 결제할 의무를 불이행할 수 있습니다.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 투자를 위한 신고 및 계좌개설은 역내결제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 인하여 하위펀드는 역내결제기관의 불이행 또는 오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 중앙은행은 역내결제기관 및 중국 투자규정에 따른 하위펀드의 거래활동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역내결제기관이나 하위펀드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중국 중앙은행은 역내결제기관, 하위펀드 또는 하위집합투자업자를 상대로 거래나 사업의 중단 또는 강제적으로 투자지분의 정리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나 사업의 중단 또는 강제적인 투자지분의 정리 등으로 인하여 하위펀드 및 주주들에게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및 해외 송금

중국 투자규정상, 외국인투자자들은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한 자금을 위안화 또는 외화로 중국 내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위펀드가 중국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한 목적상, 위안화 대 외화 비율은 일반적으로 투자금이 중국으로 송금되었을 당시의 본래의 통화 비율과 일치하여야 하며, 최대 허용 편차는 10%입니다. 상기 요건은 장래에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하위펀드의 중국본토은행간 채권시장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붙임 2] 하위펀드 재무정보

피델리티 UCITS II ICAV - 피델리티 인핸스드 리저브 펀드 (Fidelity UCITS II ICAV – Fidelity Enhanced Reserve Fund)								
(기준통화: USD)								
집합투자기구 종류	증권(채권)형							
집합투자업자	FIL Fund Management (Ireland) Limited							
하위집합투자업자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18.10.31 현재)	클래스	연간 운용보수 ^{††}			총보수·비용 비율 (TER) [†]			
	A-ACC USD	0.50%			0.60%			
투자자가 본 펀드에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투자자 부담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 (단위: 원)	클래스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A-ACC USD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1,500	343,879	489,826	923,54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매매회전율*	2018.10.31		2018.1.31		2017.1.31			
	11.48%		-		-			
대차대조표*			2018.7.31	2018.1.31	2017.1.31			
	총 자산		10,130,461	-	-			
	총 부채		220,811	-	-			
	순 자산		9,909,650	-	-			
손익계산서*			2017.12.22 - 2018.7.31	2018.1.31	2017.1.31			
	총 영업수익		(77,382)	-	-			
	총 영업비용		16,512	-	-			
	운영으로 인한 순자산의 순증가/감소		(106,331)	-	-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017.12.22 ~ 2018.7.31)	클래스	기초 발행 주식수	매입 주식 수	환매 주식 수	기말 발행주식 수			
	A-ACC USD**	0	49,980,420	0	49,980,420			
집합투자기구 자산구성현황 (2018.7.31 현재)		주식	채권	집합투자기구	파생상품	단기투자자산	기타	합계
	시가(USD)	-	8,394,894	-	(6,311)	1,494,740	26,327	9,909,650
	순자산의 %	-	84.71%	-	(0.06%)	15.09%	0.26%	100.00%
연평균 수익률 (2018.10.31 현재)	클래스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A-ACC USD**	-	-	-	-	1.38%		
	벤치마크	-	-	-	-	해당없음		
연도별 수익률 (2018.10.31 현재)	클래스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4년	최근 5년		
	A-ACC USD**	-	-	-	-	-		
	벤치마크	-	-	-	-	-		

* 이 하위펀드는 2018년 3월 26일에 판매개시되었습니다.

** 해당 주식클래스는 2018년 3월 26일에 판매개시되었습니다.

† 하위펀드와 관련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보수와 비용은 일시불(one single fee)로 지급합니다. 이를 총보수·비용 비율 ("TER")이라 합니다.

†† 연간 운용보수는 TER에 포함되는 수치입니다.

††† 위 도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부담하게 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판매수수료율과 총 보수·비용비율 등을 이용하여 1년, 3년, 5년, 10년 단위로 제시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선취판매수수료율 1.5%로 가정)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다만,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부과되는 판매수수료율은 국내판매대행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투자판단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용어풀이

배당금누적 클래스 (Accumulating Classes)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들이 해당 클래스에 귀속되는 순 투자소득과 순 실현 자본소득 전액을 누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배당 지급이 선언되지 않는 클래스
아일랜드 법 (Act)	2015년 아일랜드 집합자산운용기구법(Collective Asset-management Vehicle Act, 2015) 및 모든 관련 아일랜드 중앙은행 규정이나 부과되는 조건들
액티브 운용 하위펀드 (Actively Managed Sub-Fund)	인덱스트래킹 하위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하위펀드로서 그 투자 목적 달성을 위해 하위 집합투자업자나 그 대리인들이 적극적으로 운용하는 펀드
일반사무관리계약 (Administration Agreement)	집합투자업자와 일반사무관리회사간에 2017년 12월 22일자로 체결된 계약으로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요건에 따라 수시로 수정, 보충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계약에 의거 본 펀드에 일반 사무관리와 회계 서비스의 제공하도록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선임되었음.
일반사무관리회사 (Administrator)	Brown Brothers Harriman Fund Administration Services (Ireland) Limited, 또는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요건에 따라 본 펀드에 일반사무관리와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시로 선임되는 기타 회사
기준통화 (Base Currency)	각 하위펀드 순자산가치의 산정이나 주식 클래스의 표시 통화.
중개수수료 (Brokerage Commissions)	하위펀드가 제3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로서, (i) 거래집행수수료 및/또는 (ii) 해당 리서치수수료를 포함.
영업일 (Business Day)	해당 하위펀드 관련 보충본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런던 은행 영업일 및/또는 이사들이 사전에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통지하는 기타 일자(들)을 의미함.
아일랜드 중앙은행 (Central Bank)	아일랜드 중앙은행 또는 그 하위 부서나 승계 기관
아일랜드 UCITS규정 (Central Bank UCITS Regulations)	수시로 개정되는 2013년 아일랜드 중앙은행(감독 및 집행)법 (제48조 제(1)항)(양도성 증권 집합투자기구) 2015년 규정, 및 동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수시로 공포하는 고지, 문답서 및 기타 지침
클래스(Class)	하위펀드에 대한 지분을 표창하나 특정 주식들에 개별적으로 상이한 매입, 전환 및 환매 수수료, 배당 방식, 기준통화, 통화헷징 방침 및/또는 수수료 약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하위펀드 순자산가치의 상이한 비율을 해당 주식들에 귀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하위펀드 내에서 주식 클래스로 지정된 특정 하위펀드 주식
거래일(Dealing Day)	해당 하위펀드 관련 보충본에 명시된 일자(들) 및/또는 이사들이 사전에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통지하는 일자(들). 단, 일정한 간격으로 매월 최소 2거래일이 지정되어 있어야 함.
거래마감시간 (Dealing Deadline)	매입신청서나 환매 신청서가 도달하여야 하는 시한으로, 해당 하위펀드 보충본에 각 거래일에 대하여 각 하위펀드의 클래스별로 기재된 시간

보관회사 (Depository)	Brown Brothers Harriman Trustee Services (Ireland) Limited 또는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요건에 따라 따라 본 펀드에 대한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수시로 선임되는 기타 회사
보관계약 (Depository Agreement)	본 펀드의 보관회사 선임을 위하여 본 펀드와 보관회사간에 2017년 12월 22일자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요건에 따라 수시로 개정, 보완되거나 달리 수정되는 계약
이사들 (Directors)	본 펀드 이사들과 그의 적법하게 구성된 위원회
배당 클래스 (Distributing Class)	제2부의 내용중 '14. 가. 이익 배분' 항과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사들이 정관에 따라 배당을 선언하고자 하는 클래스
판매계약 (Distribution Agreement)	집합투자업자와 총괄판매회사간에 2017년 12월 22일자로 체결되어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개정, 보완되거나 달리 수정되는 계약
판매회사 (Distributor)	총괄판매회사 및/또는 해당되는 경우하위판매회사
세금 및 수수료 (Duties and Charges)	하위펀드의 주당 순자산가치 산정 목적상 평가되는 자산의 가격과 해당 하위펀드 가입시 매입하거나 매입이 예상되는, 또는 해당 하위펀드 주식 환매의 경우에 있어서 매도되거나 매도가 예상되는 자산의 추정 또는 실제 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총당금을 포함하여, 모든 인지세와 기타 제세공과금, 정부부과금, 세금, 부담금, 외환비용 및 수수료 (외환 스프레드 포함), 보관회사/하위보관회사 수수료, 양도수수료와 비용, 대리인수수료, 중개수수료, 은행수수료, 등록비, 및 기타 제반 부과금을 의미하며,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본 펀드의 모든 현금과 기타 자산의 구성이나 증감 또는 주식의 설정, 인수, 발행, 전환, 교환, 매입, 보유, 환매수, 환매, 매도나 양도(해당되는 경우, 주권의 발행이나 소각을 포함) 또는 본 펀드에 의한 또는 본 펀드를 대신한 투자에 대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수 있거나 발생되거나 혹은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매입 또는 환매로 인하여 요구되는 파생계약에 대한 조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나 비용을 포함함.
EEA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 또는 “유로”	1999년 1월 1일 도입된 유럽경제통화동맹(European Monetary Union) 참여 회원국들의 단일 통화
FDI	파생금융상품(financial derivative instruments)
Fidelity International	집합투자업자가 소속된 그룹으로, FIL Limited와 자회사들로 구성된 FIL 그룹의 금융서비스 부서에 대하여 사용되는 브랜드 명칭
본 펀드(Fund)	피델리티 UCITS II ICAV (Fidelity UCITS II ICAV)
총괄판매회사 (General Distributor)	FIL Distributors 및/또는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요건에 따라 본 펀드의 총괄판매회사로 정식으로 선임된 추가 또는 승계 판매회사
인덱스(Index)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덱스 트래킹 하위펀드가 투자목적 및/또는 투자방침에 따라 추적 대상으로 삼는 금융지표

인덱스제공자 (Index Provider)	어느 하위펀드와 관련하여,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접 또는 지정 대리인을 통해 인덱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 계산하고, 공표하는 실체나 인(人)
인덱스증권 (Index Securities)	각 인덱스(Index)를 구성하는 증권
인덱스트래킹 하위펀드 (Index Tracking Sub-Fund)	하위펀드의 성과와 그 해당 인덱스 성과간의 추적 오차(tracking error)를 가능한 한 최소화시키면서 인덱스 성과를 추적하는 하위펀드
최초모집기간 (Initial Offer Period)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기간으로 클래스 주식을 최초모집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간
최초모집가격 (Initial Offer Price)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가격으로 최초모집기간 동안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가격
정관 (Instrument of Incorporation)	당시 유효한 본 펀드 설립증서로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승인을 전제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음.
하위집합투자업자 (Investment Manager)	관련 하위펀드에 투자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선임된 투자운용회사로 하위펀드 보충본에 기재된 사업체로서, 문맥에 따라 하위집합투자업자가 수시로 선임하는 하위투자운용회사들이 포함됨.
원화(KRW)	대한민국의 법정 통화인 한국 원화
런던은행영업일 (London Banking Day)	런던 시중은행들이 개정하여 런던에서 지급을 결제하는 날. 동 시중은행들이 반일 동안만 개정하는 날들은 제외.
집합투자업자 (Manager)	FIL Fund Management (Ireland) Limited 또는 본 펀드가 선임할 수 있는 기타 운용사
운용계약 (Management Agreement)	본 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선임을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와 본 펀드간에 2017년 12월 22일자로 체결된 계약으로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정한 요건에 따라 수시로 개정, 보완되거나 수정될 수 있음.
EU 회원국 (Member State)	유럽연합 회원국
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	제2부의 내용중 '14.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산정되는 하위펀드의 순자산가치
주당 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 per Share)	제2부의 내용중 '14.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여하한 클래스 주식을 포함하여 여하한 하위펀드 주식의 순자산가치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글로벌 투자설명서 (Prospectus)	본 펀드의 글로벌 투자설명서 및 하위펀드에 대한 하위펀드 보충본과 기타 보충본이나 부록
정규시장 (Recognised Market)	글로벌 투자설명서 부록 II에 언급된 증권거래소 또는 시장 그리고 이사들이 UCITS 규정에 따라 수시로 결정하여 부록II에 명시하는 기타 시장

환매신청서 (Redemption Application)	환매를 신청하는 주주가 작성하여 서명한 본 펀드가 수시로 정하는 양식의 신청서.
주주명부 (Register)	본 펀드를 위해 유지되는 주주명부
관련 신용기관 (Relevant Institution)	(a) EEA(EU회원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서 인가된 신용기관, (b) (EEA 회원국이 아닌) 1988년 7월 바젤자본통합약정(Basel Capital Convergence Agreement) 서명국(스위스, 캐나다, 일본, 미국)에서 인가받은 신용기관, 또는 (c) 저지(Jersey), 건지(Guernsey), 맨 섬(Isle of Man),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인가받은 신용기관
하위펀드 보충본 (Relevant Supplement)	글로벌 투자설명서에 부속된 보충설명 자료로 각 하위펀드와 관련한 정보를 포함. 이 문서의 목적상 '[붙임 1] 하위펀드 보충본'을 말함.
리서치보수 (Research Fees)	주식 및 지분 관련 증권에 대한 투자 리서치 및 관련 자문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하위펀드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하위펀드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및 회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한 리서치보수 관련 추가 정보는 본 펀드의 등록사무소 또는 집합투자업자 웹사이트에서 제공.
결제마감시간 (Settlement Deadline)	각 거래일에 대하여 하위펀드 보충본에 각 하위펀드의 클래스별로 매입대금 수취 시한으로 기재된 시간
주식(들) (Share or Shares)	본 펀드 자본금에 대한 (발기인 주식 이외의) 여하한 클래스 주식으로서 그 보유자들로 하여금 이 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관련 하위펀드에 귀속되는 본 펀드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주식
주주 (Shareholder)	주주명부에 주식 보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하위판매회사 (Sub-Distributor)	총괄판매회사가 하위펀드(들)와 관련하여 수시로 선임하는 하위판매회사
하위펀드(Sub-Fund)	이사들이 (보관회사와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어) 설정한 자산 포트폴리오로서 일련의 개별 시리즈 주식으로 표시되고 당해 하위펀드에 적용되는 투자목적과 방침에 따라 투자되는 개별 펀드를 구성하는 자산 포트폴리오
발기인 주식 (Subscriber Shares)	하위집합투자업자 및/또는 그 대리인들이 보유하는 주당 1유로로 발행되는 무액면가 발기인 주식
매입청약계약 (Subscription Agreement)	장래 주주(또는 추가 매입의 경우 기존 주주)가 작성하여 서명하는, 본 펀드가 수시로 정하는 양식으로 된 매입청약계약
거래집행보수 (Trade Execution Fees)	거래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 중개인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UCITS	UCITS 규정에서 정하는 의미의 양도성증권 집합투자기구
UCITS 규정 (UCITS Regulations)	2011년 유럽공동체(양도성증권 집합투자기구) 규정(개정본), 2013년 아일랜드 중앙은행(감독 및 집행)법 (제48조 제(1)항) (양도성증권 집합투자기구) 2015년 규정 및 동 규정에 따라 아일랜드 중앙은행이 수시로 공포하는 행정명령, 규칙서, 고지, 문답서 및 기

타 지침, 그리고 수시로 개정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중앙은행 규정, 전제조건 또는 그에 따른 부분적 개폐조항

**부적격자
(Unqualified Person)**

(a) 미국인이거나 미국인의 계산으로 혹은 미국인의 이익을 위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b)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또는, 본 펀드 또는 주주 전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규제, 법률, 금전 또는 세무적 결과 또는 중대한 행정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미국(U.S. 또는 United States)

미합중국, 그 준주 및 속령으로, 미합중국의 주(州)들과 콜롬비아 특별구를 포함.

미국인(U.S. Person)

1933년 증권법 Regulation S의 최신 개정본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미국인*”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Rule 4.7에서 사용되는 의미의 “비(非) 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평가일 (Valuation Day)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하위펀드에 대한 순자산가치가 산정되는 날

**평가시점
(Valuation Point)**

하위펀드 보충본에 명시된 시간 또는 이사들이 수시로 결정하여 주주들에게 통지하는 시간.

의문의 여지를 피하기 위하여 부언하면, 순자산가치 산정 시점은 항상 이사들이 결정하는 거래마감시간 이후로 함.

웹사이트 (Website)

www.fidelityinternational.com. 동 사이트에는 최신 주당 순자산가치 및 기타 하위펀드 관련 정보가 게재되고 글로벌 투자설명서, 그리고 다양한 주주 및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기타 본 펀드 관련 정보가 게재될 수 있음. 여하한 이유로 이 웹사이트의 이용이 불가할 경우, 주당 순자산가치 및 기타 하위펀드 관련 정보가 게재되고 글로벌 투자설명서, 그리고 다양한 주주 및 투자자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기타 본 펀드 관련 정보가 게재될 대체 웹사이트가 주주들에게 통지될 수 있음.

[붙임 4] 정규 시장

(i) EU 회원국, EEA 회원국 또는 다음 국가들의 증권거래소나 시장: 호주, 캐나다, 홍콩,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와 미국.

(ii) 다음 증권거래소: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증권거래소 코르도바 증권거래소 라플라타 증권거래소 멘도사 증권거래소 로사리오 증권거래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증권거래소 수라바야 증권거래소
브라질	바이아 세르지페 알라고아스 증권거래소 브라질리아 증권거래소 엑스트리머 솔 포르투 알레그르 증권거래소 미나스 에스피리투 산토 증권거래소 파라나 쿠리티바 증권거래소 페르남부쿠 이 파라이바 헤시피 증권거래소 포르탈레자(Regional Fortaleza) 증권거래소 리우데자네이루 증권거래소 산투스 증권거래소 상파울로 증권거래소	이스라엘	텔아이브증권거래소 (TASE)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 증권거래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 부미푸트라 증권거래소
		멕시코	메히카나 증권거래소 (Bolsa Mexicana de Valores)
		나미비아	나미비아 증권거래소
		뉴질랜드	뉴질랜드 증권거래소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증권거래소
칠레	산티아고 증권거래소 발파라이소 증권거래소	파키스탄	카라치 증권거래소 라호르 증권거래소
중국	상하이 증권거래소 선전 증권거래소	페루	리마 증권거래소
콜롬비아	콜롬비아 증권거래소	필리핀	필리핀 증권거래소
코스타리카	나시오날 데 발로레스 증권거래소 (Bolsa Nacional de Valores S.A.)	카타르	도하 증권거래소
이집트	카이로 및 알렉산드리아 증권거래소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 증권거래소 모스크바 은행간 통화 거래소 (지분증권)
가나	가나 증권거래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증권거래소
인도	봄베이 증권거래소 마드라스 증권거래소 델리 증권거래소 아마다바드 증권거래소 방갈로르 증권거래소 코치 증권거래소 가우하티 증권거래소 마가드(Magadh) 증권거래소 푸네 증권거래소 하이데라바드 증권거래소 루디아나 증권거래소 우타르프라데시 증권거래소 캘커타 증권거래소	싱가포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SESDAQ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
		대한민국	한국거래소(KRX)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본부 (한국거래소 코스피 시장) 한국거래소 선물시장본부(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스리랑카	콜롬보 증권거래소

대만	대만 증권거래소	우루과이	로스피데 소시에다드 증권거래소 (Rospide Sociedad de Bolsa S.A.)
태국	태국 증권거래소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증권거래소 (Bolsa de Valores de Caracas)
터키	이스탄불 증권거래소	베트남	베트남 증권거래소
아랍 에미레이트	두바이거래소(Dubai Financial Market) 두바이 국제금융거래소	잠비아	루사카증권거래소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증권거래소		

(iii) 이하의 시장

-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에 의해 조직된 시장,
- (i) 금융행위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의 규제를 받으며 FCA의 시장행위규정집 (Market Conduct Sourcebook)의 전문가간 행위(Inter-Professional Conduct)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은행들과 기타 기관들이 활동하며, 그리고 (ii) FCA 및 잉글랜드 은행(Bank of England)을 포함한 런던 시장의 참가인들이 기초한 "Non-Investment Product Code(비은행상품규약)"에 포함된 지침 (이전에 "The Grey Paper"로 알려져 있음)의 적용을 받는 비투자상품이 거래되는 영국 시장
- (a) 미국 나스닥(NASDAQ), (b) 뉴욕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의 규제를 받는 국고채전문딜러(primary dealer)들이 미국 국채를 거래하는 시장, (c)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전국 증권딜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의 규제를 받는 인수딜러(primary dealer)와 유통딜러(secondary dealers) 그리고 미국 통화감독청(US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 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 또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규제를 받는 은행기관들이 활동하는 미국 장외시장
- (a) 일본 NASDAQ, (b) 일본증권업협회(Securities Dealers Association of Japan)의 규제를 받는 장외시장, 및 (c) 마더스(Market of the High-Growth and Emerging Stocks, "MOTHERS")
- 런던 증권거래소의 규제를 받고 운영되는 대체투자시장들
- 홍콩 차스닥("GEM")
- TAISDAQ
- 싱가포르 세스닥(SESDAQ)
- 대만혁신성장기업거래소 ("TIGER")
- 한국 코스닥("KOSDAQ")
- 프랑스 양도성 채권 장외거래시장 (Titres de Créances Négotiables)
- 캐나다 투자딜러협회가 규제하는 캐나다 국채 장외시장,
- 유럽 이스닥(EASDAQ)

북아메리카

- 시카고 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
- 아메리카 증권거래소 (American Stock Exchange)
- 시카고 상품거래소(Chicago Board of Trade)
- 시카고 옵션거래소(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 커피, 설탕 및 코코아 상품 거래소(Coffee, Sugar and Cocoa Exchange)
- 아이오와 전기시장(Iowa Electronic Markets)
- 캔사스시티 상품거래소(Kansas City Board of Trade)
- 중미 상품거래소(Mid-American Commodity Exchange)
- 미니애폴리스 곡물거래소(Minneapolis Grain Exchange)
- 뉴욕면화거래소(New York Cotton Exchange)
- 트윈시티상품거래소(Twin Cities Board of Trade)
- 뉴욕선물거래소(New York Futures Exchange)
- 뉴욕상품거래소(New York Board of Trade)
- 뉴욕상업거래소(New York Mercantile Exchange)

CME Group

아시아	몬트리올 파생상품 거래소(Montreal Derivatives Exchange)
	중국 금융선물거래소(China Financial Futures Exchange)
	다롄상품거래소(Dalian Commodity Exchange)
	상하이선물거래소(Shanghai Futures Exchange)
	정저우상품거래소(Zhengzhou Commodity Exchange)
	중국은행간채권시장(China Interbank Bond Market)
	홍콩선물거래소(Hong Kong Futures Exchange)
	Ace 파생상품 및 상품 거래소(Ace Derivatives & Commodity Exchange)
	인도네시아 상품 및 파생상품거래소(Indonesia Commodity and Derivatives Exchange)
	말레이시아 파생상품거래소(Bursa Malaysia Derivatives Berhad)
	싱가포르 국제통화거래소(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
	싱가포르 상품거래소(Singapore Commodity Exchange)
	도쿄금융거래소(Tokyo Financial Exchange)
	도쿄상품거래소(Tokyo Commodity Exchange)
	대만선물거래소(Taiwan Futures Exchange)
	태국선물거래소(Thailand Futures Exchange)
	태국농산물선물거래소(Agricultural Futures Exchange of Thailand)
	싱가포르 상품거래소(Singapore Commodity Exchange)
	싱가포르상업거래소(Singapore Mercantile Exchange)
	뉴질랜드 거래소(New Zealand Exchange)
오스트랄라시아 유럽	아테네 파생상품 거래소(Athens Derivative Exchange)
	이탈리아 주식시장(Borsa Italiana (IDEM))
	도이칠란드 유렉스 전자 증권 시장(EUREX Deutschland)
	취리히 유렉스 전자 증권 시장(EUREX Zurich)
	EUREX for Bunds, OATs, BTPs
	암스테르담 유러넥스트 증권거래소(Euronext Derivatives Amsterdam)
	브뤼셀 유러넥스트 증권거래소(Euronext Derivatives Brussels)
	파리 유러넥스트 증권거래소(Euronext Derivatives Paris)
	유럽 파생상품거래소(ICE Futures Europe)
	런던 금속 거래소(London Metal Exchange)
	주식선물거래소(마드리드)(Meff Renta Variable (Madrid))
	북유럽 증권 거래소 코펜하겐 (OMX Nordic Exchange Copenhagen)
	북유럽 증권 거래소 스톡홀름(OMX Nordic Exchange Stockholm)
	우크라이나 은행간 화폐 거래소 (Ukrainian Interbank Currency Exchange)
	아프리카

및 상품거래소나 유사한 기관, 자동호가시스템을 포함한 여하한 거래소나 시장으로서 이러한 거래소들과 시장들은 EU 회원국이나 EEA 회원국에서 규제를 받고 정규 운영되며 공인되고 일반에 공개된 거래소들과 시장들임.

비상장 투자자산과 장외 파생상품에 대한 허용된 투자를 예외로 하고, 증권이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는 오로지 규제 요건들(규제 대상이며,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공인되고 일반에 공개)을 충족하는 위에 열거된 정규시장에 상장되거나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에만 투자함. 이러한 거래소들과 시장들은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요건에 따르며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승인된 시장목록을 발표하지 않음.

위 거래소들과 시장은 아일랜드 중앙은행의 UCITS 규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제 요건에 따라 이 문서에 기재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중앙은행은 승인된 시장 목록을 발행하지 않습니다.